

2001년

증권제도동향

2001. 1

수석연구원 정윤모

선임연구원 손영락

한국증권연구원

Korea Securities Research Institute

序 言

지난 97년말의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하여 자본시장 전반에 걸쳐 수많은 개선방안들이 나왔지만, 새로운 밀레니엄을 맞이하여서도 그 개혁의 속도는 늦추어지지 않고 지속되었다. 증권시장, 증권산업, 일반기업, 증권관련기관 등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영역에 걸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것은 그 동안 우리 자본시장에 많은 문제가 잠복되어 있었다는 반증일뿐더러, 이제는 우리 자본시장도 상당히 선진화되고 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한다. 이 모든 변화는 과거의 비효율적이고 비합리적인 제도 및 관행을 고쳐서, 우리 자본시장의 효율성·투명성을 높이고 시장경쟁원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며, 분명 우리 자본시장 발전의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의심하지 않는다.

새로운 밀레니엄에 들어서 개선된 내용들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보호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세계적인 증권시장간 경쟁체제에 대비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장진입·퇴출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시장소속부제도·전자공시제도 등 시장관리 및 공시제도를 정비하였다. 또한, 호가중개시장(OTC BB)을 도입하고, 선물거래소가 코스닥주식 선물거래(2000년 12월) 및 상장주식 선물거래(2004년 1월)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채권딜러간 중개회사 및 채권전문딜러제도를 운영하고, 채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였으며, ABS·MBS의 발행활성화 등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조치들이 있었다.

증권산업에서는 증권회사·증권투자회사의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설립요건을 일부 완화하였으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하였다. 그리고 증권회사에 랩어카운트를 도입하고, 투신사의 고객보호를 강화하고, 자산운용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 또한, 증권행정감독 부문에서는 증권감독권한을 자율규제기관에 일부 위임하였으며, 감사업무를 개선하는 등 증권행정의 투명성을 높였다.

발행기업 측면에서는 감사위원회제도의 도입 등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조치들이 이어졌으며, 자기주식취득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Stock Option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부실감사 및 분식회계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반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를 도입하고, 화의 및 파산절차를 개선하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V)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우리 자본시장제도는 선진화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도입 취지대로 그 기능이 발휘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이들 개선조치들이 실제로 자본시장 현실에서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운영단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제도개선이 단편적이어서 제도 상호간의 유기적인 작동체계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였다면 앞으로는 이들 제도들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작동될 수 있도록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본 보고서는 2000년 한해 동안에 우리 자본시장에서 이루어진 증권제도변경사항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본문에서는 제도변경사항을 증권시장·증권산업·증권행정감독·발행기업·기업구조조정 등 5개 분야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으며, 부록에는 이들 내용을 법령·금감위규정·증권거래소규정·증권업협회규정 등 각 규정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금감위 규정들에 대한 대대적인 통폐합이 있었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통폐합되기 전의 기존 규정을 중심으로 정리하였음을 밝혀둔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정운모 수석연구원의 노고를 통해 작성되었다. 이에 감사의 뜻을 표한다. 그리고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손영락 선임연구원과 김선옥 연구조원에게도 감사드린다. 부디 본 보고서가 자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01년 1월

한국증권연구원

원장 최운열

목 차

| | |
|-----------------------|-----------|
| I. 증권시장 | 1 |
| 1. 주식시장 | 1 |
| 가. 발행시장 | 1 |
| 나. 유통시장 | 5 |
| 2. 채권시장 | 35 |
| 가. 발행시장 | 35 |
| 나. 유통시장 | 40 |
| 3. 선물·옵션시장 | 46 |
| 4. 기업공시 | 49 |
| | |
| II. 증권산업 | 60 |
| 1. 증권회사 | 60 |
| 가. 진입규제 | 60 |
| 나. 영업·상품규제 | 61 |
| 다. 재무건전성규제 | 63 |
| 라. 기업지배구조 등 | 66 |
| 2. 투자신탁회사 | 68 |
| 가. 진입규제 | 68 |
| 나. 영업·상품규제 | 68 |
| 다. 재무건전성규제 | 70 |
| 라. 기업지배구조 등 | 76 |

| | |
|------------------------------|------------|
| 3. 증권투자회사 | 77 |
| 가. 진입규제 | 77 |
| 나. 영업·상품규제 | 78 |
| 다. 재무건전성규제 | 79 |
| 4. 선물회사 | 82 |
| III. 증권 행정감독 | 86 |
| 1. 법적규제기관 | 86 |
| 2. 자율규제기관 | 89 |
| IV.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 92 |
| 1. 기업경영감시 | 92 |
| 2. 지원·관리제도 | 101 |
| V. 기업구조조정 | 106 |
| 1. 일반기업 | 106 |
| 2. 금융기관 | 116 |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 | |
|---------------------------------|------------|
| I. 법령 | 131 |
| 1. 증권거래법 | 131 |
| 2. 증권거래법 시행령 | 136 |
|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140 |
| 4. 증권투자신탁업법 | 141 |
| 5.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143 |
| 6.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145 |
| 7. 증권투자회사법 | 146 |
| 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147 |
| 9.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149 |
| 10. 선물거래법 | 150 |
| 11. 선물거래법 시행령 | 151 |
| 12. 은행법 | 152 |
| 13. 은행법 시행령 | 153 |
| 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154 |
| 1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54 |
| 16. 금융지주회사법 | 156 |
| 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158 |
| 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160 |
| 1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162 |
|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163 |

| | |
|--|-----|
|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4 |
| 2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 165 |
| 2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시행령 | 166 |
| 24. 예금자보호법 | 166 |
| 2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167 |
| 2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 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68 |
| 27. 상 법 | 168 |
|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170 |
|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1 |
|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172 |
|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73 |
| 32. 회사정리법 | 174 |
| 33. 화의법 | 175 |
| 34. 파산법 | 176 |
| 35. 외국환거래법 | 177 |
|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177 |
| 37. 증권거래세법 | 177 |
| 38.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178 |
| 39. 조세특례제한법 | 179 |
|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180 |
| 41. 법인세법 시행령 | 181 |
| 42.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 182 |

| | |
|---|------------|
|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 184 |
| 1.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184 |
| 2.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 186 |
| 3.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 187 |
| 4.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 189 |
| 5.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189 |
| 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190 |
| 7.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192 |
| 8.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 195 |
| 9. 전환증권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규정 등의 적용유예 등에 관한 규정 | 195 |
| 10.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196 |
| 11.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 198 |
| 12. 증권업 감독규정 | 199 |
| 13.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2 |
| 14.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5 |
| 1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절차 | 205 |
| 16.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6 |
| 17. 선물업 감독규정 | 206 |
| 18.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 207 |
| 1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 208 |
| 2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8 |
|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 210 |
| 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11 |

| | |
|--|-----|
| 23. 금융기관 제재규정 시행세칙 | 214 |
| 2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214 |
| 25.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 216 |
| 26. 은행감독규정 | 217 |
| 27. 신탁업 감독규정 | 217 |
| 28.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18 |
| 2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220 |
| 3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 221 |
| 31.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221 |
| 32.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223 |
| 33.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의 선물·옵션거래시 위험내용 사전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 | 224 |
| 34.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 | 224 |
| 35. 금감위 명령 | 225 |

Ⅲ. 증권거래소 규정226

| | |
|--------------------------|-----|
| 1. 업무규정 | 226 |
| 2. 업무규정 시행세칙 | 229 |
| 3. 선물·옵션 업무규정 | 235 |
|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36 |
| 5. 유가증권 상장규정 | 237 |
|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45 |
| 7. 상장법인 공시규정 | 245 |

| | |
|---|------------|
| 8.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 247 |
| 9.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48 |
| IV. 증권업협회 규정 | 250 |
| 1.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50 |
| 2.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262 |
| 3.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 업무규칙 | 263 |
| 4.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63 |
| 5. 광고에 관한 규칙 | 266 |

I. 증권시장

1. 주식시장

가. 발행시장

- 소액공모의 공시 강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9/8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에도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제도의 구체화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9/29 개정)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시 의무를 구체화
 - 발행인은 소액공모 개시일의 3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금감위에 제출·공시
 - *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회사)
 - * 최근월말 기준 감사보고서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

○ 간이사업설명서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마련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9/29 개정)

- 모집·매출을 위한 청약권유시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 가능

○ 신규등록법인에 대한 무상증자 제한기간 확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10/2 부터 적용)

- 협회등록후 1년간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잉여금의 자본전입 허용
- 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0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
 - 단순히 발행주식수만을 늘림으로써 물량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

○ 신상품의 도입 및 공모주식 우선배정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New High Yield Fund 및 Hybrid Fund의 도입 및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2000/5/3 개정, 6/5 시행)

- 투신사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채권시가 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우선배정 대상 : 투신, 은행신탁, 증권투자회사가 2000. 5. 중순부터 발매하는 신상품

- New High Yield Fund D형의 추가 도입 및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2000/5/29 개정, 6/5 시행)

-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투자신탁등 기관투자자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물량을 축소
- 증권투자신탁 및 Mutual Fund에 국한하여 허용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비율>

| 구 분 | | 기 존 | 5/3 개정 | 5/29 개정 |
|-------------------------------|--------|------|--------|---------|
| 기업공개 | 기관투자자 | 45% | 50% | 60% |
| | (하이일드) | (10) | (10) | (10) |
| | (CBO) | (10) | (10) | (10) |
| | (신상품) | (신설) | (10) | (20) |
| | (기타기관) | (25) | (20) | (20) |
| | 일반청약자 | 35 | 30 | 20 |
| | 우리사주조합 | 20 | 20 | 20 |
| 협회등록공모 | 기관투자자 | 50 | 55 | 65 |
| | (하이일드) | (10) | (10) | (10) |
| | (CBO) | (20) | (20) | (20) |
| | (신상품) | (신설) | (20) | (20) |
| | (기타기관) | (20) | (15) | (15) |
| | 일반청약자 | 50 | 45 | 35 |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의 공모증자 | 기관투자자 | 50 | 70 | 80 |
| | (하이일드) | (30) | (10) | (30) |
| | (CBO) | (20) | (10) | (20) |
| | (신상품) | (신설) | (10) | (30) |
| | 일반청약자 | 20 | 30 | 20 |

○ 고수익신상품 등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방식 변경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2000/9/29 개정)

— 비과세 고수익신상품에 대하여 공모주를 배정하고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방식을 변경

- 기존의 상품별 공모주 배정방식을 폐지하고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을 통합하여 공모주 배정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비율>

| 구 분 | | 기 존 | 개 정 |
|---------|-----------------|-----------------|----------------|
| 기업공개 | 기관투자자 (하이일드) | 60 % (10) | 60 % } (40) |
| | (CBO) | (10) | |
| | (뉴하이일드) | (20) | |
| | (신상품) | (신설) | |
| | (기타기관) | (20) | (20) |
| | 일반청약자 | 20 | 20 |
| | 우리사주조합 | 20 | 20 |
| 협회등록공모 | 기관투자자 (하이일드) | 65 (10) | 65 } (50) |
| | (CBO) | (20) | |
| | (뉴하이일드) | (20) | |
| | (신상품) | (신설) | |
| | (기타기관) | (15) | (15) |
| | 일반청약자 | 35 | 35 |
| | 실권주공모 | 기관투자자 (하이일드) | 80 (30) |
| (CBO) | | (20) | |
| (뉴하이일드) | | (30) | |
| (신상품) | | (신설) | |
| 일반청약자 | | 20 | 40 |

나. 유통시장

- 전자장외거래시스템(ATS)의 허용 (증권거래법 : 개정안)
 -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전자장외거래시스템을 증권업의 한 형태로 허용
 - 기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당해 주식을 장종료 이후에 거래

- M&A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절차의 완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공개매수 공고전 금감위에 사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금감위에 사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까지의 대기기간 단축
 - 7일 → 3일
 - 재공개매수 금지기간 단축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 6월

- 외국기업발행 주권의 코스닥시장 등록 허용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9/8 개정·시행)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DR)를 추가

- 증권거래세의 일괄납부 허용 (증권거래세법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별 납부
 - 납세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 가능

- 비상장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단일화 (증권거래세법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가액
 -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

- 상장·협회주권의 장외거래시 양도가액 평가방법 개선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격으로 함.
 - 증권거래소·협회가 공표하는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격으로 함.

- 영세율제도의 폐지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또는 모집·매출가액 이하인 주권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던 영의 탄력세율제도를 2001년 7월 1일 폐지

-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2000/12/29 개정 · 시행)
 - 근로자가 2001. 12. 31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 및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 연장
(조세특례제한법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2000년 12월말 → 2002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

-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확대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한도를 확대
 - 발행주식 총수의 30% → 40%
 - * 현재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한국전력공사 1개사 뿐임.

-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절차 간소화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원주발행회사의 사전동의 필요
 -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유통주식예탁증서 포함)의 원주 전환수량 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

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생략

○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증권업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담보대상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상장주식·채권 → 코스닥등록주식을 추가

○ 외화증권매매거래의 매매증거금을 자유화

(증권업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매매거래금액의 100% → 폐지

○ 증권거래소의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 도입 (업무규정 : 2000/4/28

개정, 7/3 시행)

-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거래수요 충족을 위해 다수 종목을 바스켓으로 구성하여 일괄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시간외시장(15:10~15:40)에서 5종목 이상 and 10억원 이상 일괄매매
 - 가격은 종가대비 $\pm 5\%$ 이내 and 당일의 최고·최저가 이내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는 각각 같은 회원이 호가
 - 시간외 바스켓매매를 하는 경우 15:30까지 거래소에 신청

○ 시간외 대량매매제도 개선 (업무규정 : 2000/4/28 개정, 7/3 시행)

— 증권거래소의 시간외대량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

| 기 존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종가의 ±5호가 이내 and · 당일 최고·최저가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일종가의 ±5% 이내 and · 당일 최고·최저가 이내 |

○ 시간외 대량매매신청서 서식 변경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12

개정, 1/17시행)

— 상장법인이 시간외대량매매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 상대방이 정부·예금보험공사인 때에는 위탁을 받은 회원이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 거래소가 매매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외대량매매신청서에 매도위탁자명을 기재

○ 자기주식 취득시 가격제한폭 확대 (업무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기 존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종가대비 +2호가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일종가대비 +5% 이내 |

○ 증권거래소의 전·후장 구분 폐지 (업무규정 : 2000/5/12 개정, 5/22

시행)

— 전장과 후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규시장을 단일장으로 운영

- 점심시간(12:00~13:00)에도 거래 허용

- 정보의 적시반영으로 가격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매매거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거래기회 확대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시장의 분류를 조정

| | 기 존 | 개 정 |
|--------|---|---|
| 시장의 분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장 (09:00~12:00) • 후장 (13:00~15:00) • 시간외시장 (15:10~15: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시장 (09:00~15:00) • 시간외시장 (15:10~15:40) |

- 연초개장일·연말폐장일의 후장휴장제 폐지
- 후장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매매제 폐지

○ 매매거래정지시간 조정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0/5/12개정, 5/22 시행)

— 상장법인이 주가·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

- 전·후장 구분폐지에 따른 조치

| 기 존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시시점이 전장개시전 또는 전장매매거래 시간중 : 전장종료시까지 • 공시시점이 후장개시전 또는 후장매매거래 시간중 : 후장종료시까지 | <p>공시시점부터 1시간</p> <p>* 다만 공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 1시간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종료시까지</p> |

○ 공매도제도 개선 (업무규정)

— 증권거래소의 회원에게 증권이 예탁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호가를 금지하고,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호가를 허용
(2000/5/26 개정, 6/1 시행)

- 위탁자가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
 - 매수증권을 당해 수량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등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위탁자에 대하여 3개월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결제불이행 사실을 즉시 다른 증권회사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모든 증권회사가 동일하게 3개월간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토록 함.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 연장 (업무규정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거래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고 매수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을 1일 연장 가능
 - 결제대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증권 납부
→ 1일 추가 연장 가능

○ 결제대용증 발행시 지체보상금 상향조정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1일당 지체보상금을 인상
 - 6/10,000 → 10/10,000 (1일 연장시 20/10,000)
 - 1일당 지체보상금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5,000원으로 함.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구체화 (업무규정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증권거래소가 회원이나 그 임직원에게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공정거래
질서 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세의 변동·고정을 초래하는 행위, 특정종목에 대한 과도한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매매행
위 등

○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강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특정종목의 주가·거래량 급변시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을 통하여 투
자위험을 고지

— 거래소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고대량매매종목 및 특
정지점의 집중적 매매거래 종목을 공표

○ 무액면주식 분할시 기준가격 조정근거 마련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12 개정, 1/17시행)

— 기준가격 및 대용가격등 산정시 주식분할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 기준가격 조정시 주식병합비율 적용기준 명시

- 주주별로 병합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적용되는 비율
적용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 결정방법 개선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5/12 개정, 5/22 시행)

— 전장종료시에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을 결정

→ 전·후장 구분 폐지에 따라 정규시장의 장개시시점에 최초가격을 결정

— 최초가격 결정시 시세와 현저히 괴리된 호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가격의 90%와 200% 이내에서 매도·매수호가를 접수

○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기 단축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5/12 개정, 5/22 시행)

— 품문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 공시후 60분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거래를 재개

○ 거래소시스템상 호가수량한도의 규정 등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6/30 개정, 7/1 시행)

— 호가당 호가수량이 1억주 이상 또는 상장주식수(채권의 경우에는 상장잔액)를 초과하는 호가의 입력 불가

— 1억주 이상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1억주 미만으로 분할하여 호가

○ 외국주권 상장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6/30 개정, 7/1 시행)

— 외국주권에 대해, 주가상승률이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으로 한 국내주권의 감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규상장시 호가할 수 있는 최고·최저호가가격 산정시 원칙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외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이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외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감안하여 산정
- 협회등록유가증권의 거래소시장에서의 대용증권 인정
 -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10/2 시행)
 - 증권업협회가 대용증권으로 지정하여 대용가격을 산출하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거래소시장에서의 대용증권으로 인정
- 프로그램매매 보고사항 간소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10/2 시행)
 - 주간프로그램매매현황 중 지수차익거래와 관련된 보고사항은 면제, 비차익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위탁·자기매매의 구분 및 투자전략에 관한 내용만 보고
- 회사분할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0/19 개정·시행)
 - 상장신청일 현재 존속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인 경우에는,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을 전일종가 이하로 함.
 - 신설법인의 평가가격은 상장신청일 현재의 신설회사에 이전된 순자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우선주 상장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0/19 개정·시행)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함.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않고 발행된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평균주가괴리율 대신 보통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격을 산정

- 회사분할시 재상장종목의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2/21 개정·시행)
 - 자본잠식인 회사가 분할하여 재상장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평가가격을 재상장신청일 현재의 주당순자산가치로 함.
 - 당해 종목의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로 함

-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관리종목에 대한 감리종목지정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적용

- 상장법인의 구조조정원활화 도모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2/25 개정, 2/28 시행)
 - 재상장신청기한의 현실화 등
 - 분할 및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재상장신청시기 제한규정을 삭제

* 설립등기후 2주 이내 신청

→ 기업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감안

- 분할 및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재상장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계속보유확약서 및 증권예탁원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보관증명서 제출을 면제

— 재상장심사요건 적용기준의 합리화

- 설립등기일 이후 재상장신청일까지 재무내용변화를 반영하여 부채비율 및 자산가치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제도 보완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2/25 개정, 2/28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

- 상장심사요건중 신주인수권증권의 유통성기준을 변경
 - * 발행총액 → 발행총수 (1만증권 이상, 액면가 5천원 기준)
-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 요건을 추가
 - *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기준 추가
 - * 발행회사의 신청으로 신주인수권 대상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근거 마련

— 수익증권

- 상장수익증권의 범위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수익증권으로 확대
- 신탁기간만료로 인한 수익증권의 상장폐지에고 근거마련

— 증권투자회사

- 증권투자회사의 신고사항 확대
 - * 증권투자회사의 존립기간연장 결의, 주식매수청구, 금전분배
- 주권상장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영업정지사유에 대해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1월간 부여
- 매매거래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명시
 - * 상장폐지유예시,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시장소속부제도 폐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4/14 개정, 5/2 시행)

— 주권에 대한 시장 1·2부 구분폐지

- 증권거래소는 주권에 대한 정보만을 공시하고 주권에 대한 가치 판단은 투자자에게 맡기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므로, 시장소속부 제도를 폐지

— 외국주식에탁증서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에 대한 소속부 지정폐지

○ 신규상장요건의 다양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자기자본, 자본금, 수익성, 자산가치, 수익가치, 매출액 등의 요건에 있어 선택적 요건을 도입하여 기업규모와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 가능

— 자기자본이익율,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증가율요건을 도입

○ 신규상장요건의 현실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설립후 경과연수,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제한, 유무상증자제한 등을 개선

- 현행 공모요건(30%)를 유지하되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유통성기준을 도입하여, 의무공모규모를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화
 - 직상장 가능법인의 범위를 모든 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
- 재상장제도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인적분할법인에 허용되는 재상장을 물적분할법인에 대해서도 허용
-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DR외에 외국기업의 원주상장과 부분상장을 허용
- 상장폐지제도 개선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퇴출기준을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
 - 관리종목지정기준을 강화
 -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주식분산요건미달 등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일반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0/27 개정·시행)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 재무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분을 합산하여 적용

• 분산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만 적용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 규모요건 |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등 | (좌 동) |
| 주식분산 | - 기본산 30%이상, 의무분산 10% 이상등 | (좌 동) |
| 자산(수익) 가치 | - 액면가 2배 이상 | (좌 동) |
| 설립년수 | - 3년 이상 | - 주요자회사 고려 가능 |
| 매출액 | - 최근 200억원 이상, 3년 평균 150억원 이상 | - 자회사분×지분율 포함 |
| 부채비율 | - 동업종평균 1.5배 미만 | - 자회사전체의 가중 평균부채비율 적용 |
| 이익요건 | - 영업·경상·당기순익이 있고, · ROE가 최근 5% 이상, 3년 10% 이상 · 이익액이 최근 25억원, 3년 50억원 이상 등 | -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자본상태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1년미만은 설립시기준 |
| 감사의견 | -적정(직전2년은 한정 포함) | - 연결재무제표도 고려 |
| 소송·부도 | -없을 것 | - 자회사도 고려 |
| 비계량적 요건 | -경영독립요건 등 | - 경영독립요건 배제 |
| 지배구조 | (신 설) | -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

- 상장법인인 주요자회사가 순수자회사인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0/27 개정·시행)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 재무요건 등은 주요자회사가 완전자회사로서 이미 상장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 분산요건 등 일부요건만을 적용
- 이미 상장되었던 주요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더불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장폐지

○ 상장법인의 분할방식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0/27 개정·시행)

- 상장법인의 분할·재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매출액 등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분을 합산하여 심사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 자산 가치 | - 액면가액 이상 | (좌 동) |
| 주식 분산 | - 기본산 30% 이상, 의무분산 10% 이상 등 | (좌 동) |
| 규모 요건 |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좌 동) |
| 지배 구조 |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 (좌 동) |
| 주된 영업 계속 연수 | - 3년 이상 | - 매출액 최고 자회사의 주된 영업기준 |
| 매 출 액 | - 최근 200억원 이상 | - 자회사분×지분율 포함 |
| 소송·부도 | - 없을 것 | - 자회사도 고려 |
| 부채 비율 | - 동업종평균 1.5배 이내 | - 적용 배제 |
| 질적 요건 | - 경영독립요건 적용 | - 경영독립요건 불적용 |

- 상장법인의 분할 사업회사의 재상장요건 적용시 특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0/27 개정·시행)
 -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사업회사로서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동 사업회사의 재상장요건 중 부채비율 적용시 특례인정

- 지주회사의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및 지정해제의 특례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0/27 개정·시행)
 -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요건의 특례 인정
 - 관리종목 지정해제요건 중 자본잠식요건의 특례 인정

- 워크아웃 기업의 기업분할에 따른 재상장시 특례요건 신설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2/8 개정, 12/11 시행)
 -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의 재상장요건 중 자산가치요건(액면가액 초과)의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

- 연부과금 납부시점 및 부과기준일 조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9/30 시행)
 - 상장후 발행결과통지시점에서 연부과금 납부
 - 발행일 기준으로 연부과금 부과

○ 코스닥등록요건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벤처금융이 10% 이상 출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2000/1/28 개정, 4/1 시행)

- 벤처금융의 투자기간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의 등록을 허용
- 출자한 벤처금융에 대해 등록 후 3월간 동 벤처기업 주식의 10%이상 보유를 의무화

— 소액주주수 및 주식분산비율 요건의 강화 (2000/1/28 개정, 4/1 시행)

-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 30% 이상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수 :

300인 이상으로서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 500인 이상으로서 " 30% 이상

— 최대주주 등의 소유지분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간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 허용 (2000/1/28 개정, 4/1 시행)

— 코스닥 등록전 유상증자한도를 100%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 등록을 허용 (2000/4/14 개정, 4/17 시행)

- 다만,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후 1년간 매각제한

— 부채비율요건 변경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절대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등록을 위하여,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에도 부채비율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코스닥등록제도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동 공모실적을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
 - 공모로써 인정되기 곤란한 간주모집에 대해 공모요건의 적용을 배제
- 주식분산요건 산정시 간주모집분은 공모분에서 제외
 - 간주모집 : 과거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미만에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모집으로 간주
- 건설업체의 등록심사요건 변경
 - 상시고용 종업원수 100인 이상
 -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
- 2년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 일부 등록요건 적용배제
- 해외증권시장 주권상장기업의 코스닥 등록 허용
 - 잔여주권 전부를 등록하는 경우

○ 등록심사기능의 강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8 개정, 2/1 시행)

- 코스닥위원회의 구성 변경
 - 기관투자자대표·회계전문가·벤처기술전문가 및 상임위원을 추가하는 대신, 증권업계대표를 배제
 -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지휘

○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8 개정, 2/1 시행)

— 관리종목제도 신설

— 등록취소요건의 강화 (2000/4/1 시행)

-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후 일정기간 미해소시 반드시 등록취소

—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연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연간 2회 이상

— 비공개법인의 우회적 등록 방지 (2000/4/1 시행)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규모 등이 당해 협회등록법인보다 크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병을 허용

○ 불공정거래의 방지 강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8 개정, 4/1

시행)

— 수시공시사항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확대

○ 코스닥시장의 매매일시정지제도(Circuit Breakers) 도입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최종치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00/1/28 개정, 12/1 시행)

-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 매매거래중단후 20분 경과시 매매거래 재개

— 코스닥지수선물 개발 등 코스닥시장의 전산개발수요 과다로 Circuit Breakers 개발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일 연기 (2000/9/29 개정)

• 2000년 12월 1일 → 2001년 8월 1일

○ 등록심사기준에 질적 요건 도입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4/14 개정, 4/17 시행)

— 등록심사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요건을 구체화

•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또는 금융비용부담률 등이 동 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차입금의 구성비율, 자금 운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 되는 경우 등

○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4/14 개정, 4/17 시행)

— 중개회사(코스닥증권)의 중개수수료 인하

• 3/10,000 → 0.8/10,000

— 협회등록(예정)법인에 대한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징수근거 신설

• 등록수수료 : 자본금의 0.06% 이내

• 등록유지수수료 : " 0.011% 이내

○ 자기주식 취득시 주문가능한 가격범위를 확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 기 준 | 개 정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시 : 전일종가대비 +2호가 이내 · 처분시 : 전일종가대비 -2호가 이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시 : 전일종가대비 +5% 이내 · 처분시 : 좌동 |

○ 공매도제도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5/26 개정, 6/1 시행)

- 증권회사에 증권이 예탁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호가를 금지하고,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호가를 허용

- 위탁자가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대차거래에 의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 매수증권을 당해 수량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등

- 공매도시 호가제한 신설

- 차입한 증권의 공매도시, 직전가격보다 낮은 호가를 금지

-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확인의무 부여

- 매매거래 수탁시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호가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

○ 등록종목딜러제도 폐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유명무실한 등록종목딜러제도를 폐지하고,
 - 종금사의 등록주선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인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코스닥등록 주선업무 영위를 허용
 - 증권사의 신중한 등록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유도를 위해 코스닥등록주선인의 상품보유의무는 존치

○ 최대주주 등의 등록후 의무예탁제도 강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시세차익 획득목적의 코스닥 등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예탁의무기간 연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 1년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예탁의무기간 중 취득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예탁 의무화

○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제한 강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은 등록후 1년간 매각 제한
 - 1년경과 후에도 매1월마다 최초보유주식의 5%까지만 매각허용
(등록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는 잔여지분의 일괄매각 허용)
 - 최대주주의 경영책임을 강화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최대주주 범위 확대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7/7 개정 · 시행)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 벤처금융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제2대 주주에 대해서도 보유주식 매각제한 등 최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적용

- 시행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 벤처금융의 보유지분 매각제한 강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최대주주의 경영책임을 강화

| | 기 준 | 개 정 |
|-----------|-------------------------|--|
| 매각제한 대상주식 | 벤처금융이 10% 이상 투자한 기업의 주식 | 벤처특별법상 모든 벤처기업의 주식 |
| 매각제한 기 한 |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 · 투자기간 1년 이상 :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 투자기간 1년 미만 :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

○ 자기자본규모에 따른 주식분산요건 차등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협회등록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을 거래소와 동일하게 개정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구분 | 기 준 | 개 정 |
|-------|--|---|
| 분산 비율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이상이거나, * 10% 이상으로서 5백만주 이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 이상이거나, *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백억~1천억원은 1백만주 이상 1천억~2,500억원은 2백만주 이상 2,500억원 이상은 5백만주 이상 |

— 등록취소요건 중 주식분산요건 일부 수정 (2000/9/29 개정, 10/2 부터 적용)

| | 기 준 | 개 정 |
|---------|--|--|
| 소액주주 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 |

○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사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의 등록제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으로서 그후에

동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부터 적용)

— 벤처금융 또는 등록주선사의 임직원이 등록관련업무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

- 벤처금융이 출자한 벤처기업으로 동 벤처금융 임직원이 당해 등록예정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등록예정주선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불인정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코스닥등록 신청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이해관계 있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코스닥등록 심사시 불인정

-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

○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록시 특례인정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벤처금융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1년경과 후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을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해 적용 배제

○ 공개청문회제도 도입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10/2부터 적용)

- 등록심사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등록예정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 등록심사시 논란있는 사안에 대한 결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

○ 외국 유가증권의 등록요건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10/2부터 적용)

-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주권 포함
- 외국유가증권의 등록분산요건 상향조정
 - 100인 이상 5만 증서 이상 소유
 - 100인 이상 30만 주(증서)이상 소유

○ 결제제도의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예탁원의 결제책임 강화
 - 코스닥시장의 결제기구인 증권예탁원의 결제책임을 명확히 규정
- 결제불이행시 재원충당 순서
 - 결제안정기금 → 예탁원 자체재원 → 증권사별 안분비례
- 결제안정기금의 설치
 - 결제안정기금을 협회에 적립하여 결제불이행시 사용

| 구 분 | 기금 적립 및 관리 |
|------|------------------------------|
| 적립비율 | 거래대금의 1/10만분 이내에서 협회가 정하는 비율 |
| 기금관리 | 협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되 회원별로 구분 계리 |

○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 연장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예탁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고 매수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을 1일 연장 가능

- 결제대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증권 납부
→ 1일 추가 연장 가능

○ 등록주선인의 등록전 취득주식의 매각 제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등록주선인이 등록전에 취득한 등록주선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을 제한

○ 장마감 동시호가제도 도입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장마감전 소량주문으로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가결정시에만 적용토록 한 동시호가방식을 종가결정시에도 적용
 -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에 의함.

○ 신규등록 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결정방식 변경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2000/7/20 개정, 7/24 시행)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의 도입
- 동시호가의 체결원칙은 일반종목의 동시호가 체결원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최초매매개시일의 호가는 평가가격의 90%~200% 범위내로 함.
 - 종전의 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방식은 공모가에 의해 결정되어 신규등록종목의 적정가격 발견에 장기간 소요

-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자율적 판단으로 시초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정가격의 발견기능을 제고

○ 호가중개시장(OTC BB)의 도입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0/2/14 제정)

-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등록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는 주식시장을 도입

○ 호가중개시장의 거래대상종목의 지정 및 취소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0/2/14 제정)

— 지정요건

- 비상장·비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매매거래질서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일거래요건을 충족

<OTC BB 지정요건>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의견일 것
-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하고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모집·매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지정절차

- 지정신청회사가 지정신청을 하고, 증권업협회가 호가중개대상종목으로 지정
- 지정신청회사의 자격 : 증권회사 또는 발행회사

— 지정취소

- 협회는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하면 호가중개종목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코스닥증권회사 등에 통보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도록 함.

○ 호가중개시스템의 운영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0/2/14
제정)

— 운영주체

- 코스닥증권회사

— 호가중개시스템의 기능

- 호가집중 : 증권회사는 고객의 호가를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전달
- 매매체결 : 호가의 가격과 수량이 서로 일치하면 자동체결
- 공시 : 증권회사의 호가와 거래내역, 발행회사 공시사항은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일반에게 공시
- 수도결제 : 증권에탁원을 통하여 대체결제

○ 호가중개시장의 매매거래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0/2/14 제정)

— 매매거래시간

- 09:00 ~ 15:00 (단일장, 토요일 휴장)

— 매매방법

- 매수·매도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

-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
- 동시호가 및 가격제한폭 없음
- 주문의 종류
 - 지정가주문만 가능
- 위탁증거금률
 - 결제될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100% 납부
- 호가단위
 - 호가수량단위는 1주, 가격단위는 주권의 가격대별로 5단계로 코스닥시장과 동일
- 수도결제
 - 보통거래(T+2)
 - 증권에탁원을 통하여 증권회사간 계좌이체방식으로 차감결제

2. 채권시장

가. 발행시장

- 주택저당증권 발행의 원활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4/1 개정 · 시행)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MBS)에 대하여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및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면제확대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4/1

개정·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채권에 대하여도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무를 면제

○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단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0/11/21 개정·시행)

- 금감위 제출일부터 10일 경과 → 7일 경과
 - 사채발행의 원활화 도모

○ 금감위 등록절차의 구체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시행)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반환이나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저당권의 설정에 관하여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 유동화자산의 명세·양도방법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자산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

○ 근저당권부채권의 확정절차 개선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시행)

- 양도·신탁하는 채권이 근저당권부채권인 경우,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고 채권을 양도·신탁하겠다는 의사를 통지

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 · 시행)

- 유동화자산을 양도 · 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 자산유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

○ 자산보유자의 추가 지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4/1

제정 · 시행)

-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큰 법인을 추가
 -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방공기업

○ 자산관리자의 추가 지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4/1

제정 · 시행)

- 자산관리자의 범위에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추가
 - 자산관리자 : 유동화회사의 위탁을 받아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

○ 금감위 등록절차의 구체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 2000/1/21

개정·시행)

—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반환이나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저당권의 설정에 관하여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양도방법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자산 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주택저당채권의 확정절차 개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 2000/1/21 개정·시행)

— 양도하는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저당채권인 경우,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주택저당채권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고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 공탁의무·준비금적립의무의 적용면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

2000/1/21 개정·시행)

— 채권유동화회사가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에 의한 공탁의무·준비금적립 의무 등을 면제

- 주택저당증권의 취득가격 결정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시행령 :
2000/4/1 개정 · 시행)
 - 채권유동화회사가 기발행 주택저당채권을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 증권거래소 ·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 등록된 경우 : 시장거래가격
 - 증권거래소 · 협회중개시장에 상장 · 등록되지 않은 경우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기초가 되는 저당채권의 총액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로 나눈 가액

- 무보증사채의 효력발생기간 단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 상장법인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무보증사채의 효력발생기간을 단축
 - 7일 → 5일

- ABS발행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 확대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 2000/6/23 개정, 6/24 시행)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요건(신용평가등급 BBB- 이상) 폐지
 -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자산유동화(ABS발행) 가능
 - 금감위 등록법인인 비상장 · 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요건을 갖출 경우 ABS발행을 허용

나. 유통시장

○ IDB (Inter-Dealer Broker)의 업무방법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원활한 채권딜러간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해,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

○ IDB의 업무규정 제정 및 금감원장의 승인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IDB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개신청의 방법
-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
-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
-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등

○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도입근거 마련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2000/5/26 개정, 5/29 시행)

- 채권자기매매업자의 업무방법서가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업자를 채권전문딜러로 지정 가능

-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 월평균 2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수행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혜택부여) 가능
 - 은행등 증권업 겸영기관 : 채권자기매매업 허용
 - 증권회사 : 금리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허용
 - 증금을 통한 시장조성 자금 및 채권 지원

○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2000/6/12
제정·시행)

- 재무건전성

| | |
|----------|------------------|
| 은행 및 중금사 |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 증권회사 | 자기자본규제비율 150% 이상 |

- 직전 6월간 200억원 이상의 시장조성채권 보유 및 채권장외거래금액의 0.5% 이상의 채권거래
- 업무능력평가
 - 업무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이하

○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2000/6/12
제정·시행)

-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 시장조성중인 채권의 1월 이내 임의변경 금지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2000/6/12 제정·시행)

-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 은행 : 채권자기매매업 허가
 - 증권회사 :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 인가
- 최소호가수량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2000/6/12 제정·시행)
- 거액투자자 : 액면 10억원
 - 소액투자자 : 액면 1억원
- 거래내역의 공시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2000/6/12 제정·시행)
- 시장조성상황을 실시간으로 협회를 통하여 공시
-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취소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2000/6/12 제정·시행)
- 시장조성의무 불이행건수가 연5회 이상
 - 직전 6월간 시장조성실적이 최상위자의 10% 미만
 -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기업발행 회사채 보유한도제」 폐지
(금감위 명령 : 2000/5/24 시행)
- 회사채 보유한도제는 주채무계열의 구조조정 촉진과 부채비율 200% 이내 감축에 기여하였으므로 도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

- 2000. 1. 1부터 시행중인 은행의 신용공여한도제에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 투신권의 자금유입 촉진과 침체된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 ※ IMF구제금융 이후 5대 계열의 회사채발행 급증으로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 축소 및 대기업을의 재무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98. 10. 28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한도제」를 한시적으로 도입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 개선 (업무규정 : 2000/5/26 개정, 7/3 시행)

—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를 양방의 조성호가와 일방의 조성호가로 구분

- 양방의 조성호가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가 제출
- 일방의 조성호가는 모든 국채딜러가 제출
 - * 기존에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국채딜러는 조성호가를 할 수 없었음.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 상향 조정

(업무규정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액면 10억원 → 액면 50억원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의 은행예금지급준비금 적립마감일 전일의 매매거래종류 변경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11/4 시행)

— 익일결제거래 → 당일결제거래

- 상장채권의 대용가격제도 개선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 상장채권의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도 및 대용가격의 신뢰도를 제고

- 채권대용가격 산출주기 단축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11/4 시행)
 - 정기산출주기의 단축
 - 월단위 → 주단위 (매주 토요일 산출)

- 채권대용가격 기준시세 산출방법 변경 및 사정비율 조정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11/4 시행)

 - 기준시세 산출방법 변경
 - 대표종류별로 25매매거래일간의 매매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수익률을 환산한 가격
 - 종목별로 5매매거래일간의 종가 또는 시가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 사정비율 조정
 - 대표종류 여부 및 보증유무에 따른 차등
 - 회사채(85%) 및 주식관련사채권(80%) 이외에는 일률적 적용(95%)
 - 대용가격산출단위 조정
 - 100원 단위 → 10원 단위

- 채권의 매매거래종류 일원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국채딜러간매매거래는 익일결제거래, 기타 채권은 당일결제거래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채권매매시 수익률변동 등의 위험감소를 위해 채권의 매매거래종류를 당일결제거래로 일원화

- 채권속성을 갖는 수익증권의 채권 간주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9/8 개정·시행)
 - 금전분배방법 등이 채권속성을 갖는 수익증권은 채권으로 간주
 - MBS 등 채권의 성격이 강한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과 동일하게 관리
 - 기상장 수익증권의 처리
 - 채권속성의 기상장수익증권은 채권상장일에 상장폐지

-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2/8 개정, 12/11 시행)
 - 증권거래소에 주식관련채권 등을 상장하였으나 주권을 상장하지 아니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하여 CB, BW 등 권리행사시 관리서류의 제출을 의무화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관리서류 제출 간소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12/8 개정, 12/11 시행)
 - 주식관련채권 등을 상장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CB, BW 등 권리행사시 신주발행통지서만 제출하고, 전환청구권행사보고서 등 기

타 권리행사 관리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 기상장수익증권의 채권상장시 상장수수료 징수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2000/9/8 개정 · 시행)

— 기납부한 수익증권 상장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징수

3. 선물 · 옵션시장

○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대한 선물거래법 적용일의 지정

(선물거래법 시행령 : 2000/12/29 개정 · 시행)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및 그 주권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상장주식 선물거래)

• 2004년 1월 1일

— 기타 주권 및 그 주권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코스닥주식 선물거래)

• 2000년 12월 29일

○ 증권거래소의 선물 · 옵션시장의 전 · 후장 구분 폐지

(선물 · 옵션 업무규정 : 2000/5/12 개정, 5/22 시행)

— 점심시간(12:00~13:00)에도 거래 허용

— 후장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매매제도 폐지

- 증권거래소의 추가증거금 관련제도 개선 (선물·옵션 업무규정 :
2000/5/12 개정, 5/22 시행)
 - 추가증거금 등 미납시의 반대매매시기 개선
 - 위탁자가 추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을 익일 12:00까지 미납시에,
동시호가시간대(12:00~13:00, 15:05~15:15)에만 반대매매
→ 전·후장 구분 폐지에 따라 접속매매시간대(12:00~
15:05)에도 반대매매를 허용
 - 접속매매에 의한 반대매매는 시장가호가로 한정
 - 회원과 고객간의 분쟁발생 소지를 축소
 - 추가증거금의 징수의제
 - 고객이 추가증거금 징수시한 전에 자율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여
개시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을 징수한 것으로
의제

-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의 최저금액 인하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
세칙 : 2000/3/13 개정·시행)
 - 3,000만원 → 1,000만원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인하여건이 조성되었으며, 투자자 스스로
시장변동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용증권의 범위에 채권속성의 수익증권 추가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8 개정·시행)
 - 투자자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MBS 등

채권속성의 수익증권을 대용증권의 범위에 추가

- 수익증권의 대용가격은 상장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 상장채권의 대용가격제도 개선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11/4 시행)

- 상장채권의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도 및 대용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선제도의 균형을 도모
- 정기산출주기의 단축
 - 월단위 → 주단위 (매주 토요일 산출)
- 기준시세 산출방법 변경
 - 대표종류별로 25매매거래일간의 매매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수익률을 환산한 가격
 - 종목별 5매매거래일간의 종가(또는 시가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 사정비율 조정
 - 대표종류 여부 및 보증유무에 따른 차등
 - 회사채(85%) 및 주식관련사채권(80%) 이외에는 일률적 적용(95%)
- 대용가격산출단위 조정
 - 100원 단위 → 10원 단위

○ 협회등록주권의 대용가격 산정기능의 협회 이관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9/29 개정, 10/2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협회등록유가증권에 대한 대용가격 산정기관이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업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대용가격은 협회가 산정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최저금액 인하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 업무규칙 : 2000/3/13 개정·시행)

- 3,000만원 → 1,000만원

4. 기업공시

○ 협회등록법인의 공시의무 강화 (증권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시공시제도 및 조회공시제도를 도입

- 수시공시사항 및 조회공시사항의 불성실공시 또는 미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 최고 5억원 이내

○ 코스닥등록법인의 공시의무 등을 상장법인과 완전 동일화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9/29 개정)

— 상장법인에 적용하는 주요경영사항신고제도 및 재무관리기준을 코스닥등록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하여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감위에 신고·공시

○ 비상장 증권회사의 분기보고서 도입 (증권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비상장 증권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00. 1. 1부터 분기보고서 작성 의무화

○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투명한 기업공시를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 강화

- 과징금의 상한 5억원 → 20억원

○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3/1시행)

— 제출인의 신원확인 및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제도를 도입

○ 참조방식의 확대 적용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3/1시행)

—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기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참조방식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 유가증권신고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으로 확대

○ 제출인이 아닌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3/1시행)

— 제출문서의 첨부서류 중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토록 함.

○ 관계기관간 1회동시제출(One Stop Filing)체제 구축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3/1시행)

— 민원인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은 제출된 공시서류를 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공인회계사회에 전송 가능

- 동 공시서류가 관계기관에 전송·도달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전자공시시스템 장애발생시의 대체방안 보완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3/1 시행)

— 신고서 등을 서면·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전자공시시스템의 위탁운영근거 마련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3/1시행)

—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제도의 시행일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3/1시행)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 4/1 시행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와 상장·협회 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에 대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문서의 제출면제 : 7/1 시행

※ 전자공시제도

—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서류를 제출·공시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금감위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제출하고, 금감위는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전송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공시시스템

- 사업보고서 등의 전자공시 의무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7/1 시행)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3종)와 상장·
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177종) 등 총 180종을 전자문서(전자
공시)로만 제출
 - 지금까지는 278종의 공시서류를 서면과 전자문서(전자공시)로
병행 제출
 - 2001. 3. 1부터는 공시서류 전체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토록 할 예정

- 전자공시의 조기 완전시행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 공시의무자의 공시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전자공시
의 완전시행시기를 앞당김.
 - 2001. 3. 1 → 2001. 1. 1

- 지주회사의 상장에 대비한 공시제도 보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수시공시사항)을 공시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의 범위
 - 지주회사가 소유한 개별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
액의 5% 이상인 자회사

(다만, 자회사의 해산사유발생, 부도발생,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에는 5% 미만이라도 공시)

- 시가배당률 신고 의무화 (유가증권 상장규정 : 2000/4/14 개정, 5/2 시행)
 - 시가배당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배당결의시 사업연도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중간배당시는 정관에 따라 정한 날의 시가를 기준

- 증권거래소의 공시구분 폐지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4/1 시행)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 됨에 따라 동 구분 폐지

- 자진공시제도 도입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4/1 시행)
 - 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중요경영정보를 1일 이내에 자진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진공시사항의 변경·반복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간주

-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7/1 시행)
 - 정·부 공시책임자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 공시책임자는 임원만이 될 수 있으나, 공시담당자는 직원도 가능

- 영문공시 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7/1 시행)
 -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한글공시 후 1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시대상범위 확대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4/1 시행)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결정을 공시사항에 추가

- 거래소에 의한 공시근거 마련 (상장법인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4/1 시행)
 -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거래소가 관계기관에 확인한 사항을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공시구분의 폐지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4/1 시행)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 됨에 따라 동 구분 폐지

-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4/1 시행)
 - 정·부 공시책임자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규정 : 2000/3/24 개정, 4/1 시행)
 -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기 공시내용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불성실공시로 간주

- 전자문서 제출대상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3/24 제정, 4/1 시행)
 - 증권거래법령 및 거래소의 각종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

-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3/24 제정, 4/1 시행)
 - 제출인의 본인 및 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거래소에 사전등록
 - 첨부서류 중 공인회계사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은 작성자가 전자서명 후 제출인에게 제공
 -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가 정한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제출인 신원의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제도 도입

- 금감위로부터의 신고서 접수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3/24 제정, 4/1 시행)
 - 전자문서 방법으로 금감위에 제출된 신고서 등을 금감위로부터 전송받는 경우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동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처리

- 사업보고서 등의 시행일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3/24 제정, 4/1 시행)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2000. 7. 1. 시행

- 전자공시제도 도입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4/14 개정, 4/17 시행)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방법을 도입
 - 공시방법을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부응

- 불성실공시의 예외 인정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4/14 개정,
4/17 시행)
 - 법령개정이나 경제사정의 급변 등 불가피하게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

- 공시의무이행능력 결여 기업의 등록제한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9/29 개정, 10/2 이후 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등록예정기업이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자료를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하지 않았거나, 재정상태·경영실적 등을 적시공시할 관리조직이 없는 경우

-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 불이행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
 - 2회 연속 미제출시 등록취소 → 연속여부에 상관없이 2회 미제출시 등록취소
 -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미확정공시에 대한 중간진척사항 공시 의무화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미확정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확정공시시까지 매 1개월마다 당해 의사결정에 관한 중간 진척상황을 제공시하도록 의무화

- 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인 코스닥법인에 대한 공시강화
 -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협회등록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가 금고의 과점주주로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이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금고의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금고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시의무화
 - 이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금고의 BIS비율이 6%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해당 협회등록법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시가기준에 의한 배당공시 의무화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협회등록법인의 배당결정시 사업연도말(또는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부중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수익률을 협회에 신고토록 의무화

○ 호가중개시장의 공시제도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2000/2/14 제정)

— 발행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 발행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수시공시제도는 OTC BB시장이 정규시장 전단계이고, 투자자책임이 강조되는 상대매매시장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 공시주체

- 지정신청회사(증권회사 또는 발행회사)

— 공시수단

- 코스닥증권회사가 공시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증권회사 전산망과 코스닥증권회사 인터넷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도록 함.

— 정기공시사항

- 발행회사 현황, 요약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 조회공시

-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지정신청회사는 1일 이내에 공시

— 불성실공시내용의 공표

- 호가중개시스템에 당해 사실을 10영업일간 공표

Ⅱ. 증권산업

1. 증권회사

가. 진입규제

- 증권업 진입·퇴출기준의 투명성 제고 (증권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업 허가심사기준과 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판단기준 및 허가취소근거 마련
 - 대주주발행 유가증권 소유제한, 채무보증금지 등

- 자기매매업 및 위탁매매업 영위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9/8 개정·시행)
 - 300억원 → 200억원

-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설정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9/8 개정·시행)
 -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 20억원
 - 채권을 취급하는 도매업자간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 : 20억원

-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회사

○ 인허가제도의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감위의 증권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주요출자자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증권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증권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은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보험업자)

— 증권회사간 합병시 인가요건 완화

- 증권회사의 합병시 인가요건으로 재무건전성기준(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을 유지
 - 정부의 권고·요구 등에 의하거나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증권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달리 적용

나. 영업·상품규제

○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고객예탁자산 최소규모 설정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0/11/21 개정·시행)

—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투자자문계약자산의 최소규모

- 개인고객 : 5천만원
- 법인, 기타 단체고객 : 1억원

○ 비밀누설 금지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자기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당해 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매매거래 수탁시 신의성실의무 부과 (업무규정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거래소회원이 주문수탁시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주가·거래량의 급변 등 이상매매 징후 발생시 투자위험을 고지토록 함.

○ 거래소회원의 호가시 위탁자로부터 주문받는 방법을 구분표시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5/12 개정, 6/5시행)

- Home Trading 주문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서·전화, 유선통신단말기(ARS), 무선통신단말기(인터넷폰등), 컴퓨터(HTS)에 의한 주문접수 방법을 구분표시

○ 공매도주문 수탁시 증권의 소유여부 확인방법 구체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위탁자의 신용도에 따라 확인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하여 거래소회원이 자율적으로 세부기준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다. 재무건전성규제

- 비상장 증권회사의 분기보고서 도입 (증권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비상장 증권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00. 1. 1부터 분기보고서 작성 의무화
-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화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9/8 개정 · 시행)
 - 자산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
 -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
-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피선거격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9/8 개정 · 시행)
 -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강화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을 변경

- 2월 이내 → 2월 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
- 금융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정비

○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위한 경영진단의 실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받은 증권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 가능

- 감독원장(권고), 금감위(요구·명령)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 전환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

(전환증권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규정 등의 적용

유예 등에 관한 규정 : 2000/2/25 개정, 2/26 시행)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

- 최장 2년 6개월 → 최장 3년 6개월

— 금감위가 인정하는 전환증권회사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서 적용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가능

- 금융구조조정을 지원

|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결영기간 | 6월 | 6월 | 현행과 동일 |
| 유예기간 | 2년 | 3년 (금감위 승인시 2년 이내 추가 연장) | 1년 연장 (단서 신설) |

○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증권업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적기시정조치제도 정비

-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시점(반기말 및 결산기말) 제한의 폐지
- 경영개선명령 발동요건 변경 및 조치내용 추가
 - * 요건 : 자산부채비율 100% 미만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 * 조치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을 추가

— 증권회사 재무행위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 계열관계에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 계열 보험회사 및 적기시정조치 이행중인 계열은행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합리적 조정

-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대상 증권회사를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전환된 경우로 제한

○ 고객예탁재산 보호의 강화 (증권업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보호 강화

- 증권회사의 부도에 대비하여, 공모주 청약증거금 예치시 예치기관(은행·증금)과 상계금지특약을 체결
- 부도발생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분리보관의무 강화
 - 부도후 발생하는 고객예탁금을 부도 발생전 고객예탁금과 구분·관리
- 부실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전액예치 의무화 (2001/4/1 시행)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하는 모든 증권회사는 모든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
 - * 현재는 매매결제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별도예치에서 제외

라. 기업지배구조 등

- 대형 증권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증권거래법 : 2000/1/21 개정·시행)
 - 사외이사의 수
 -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 사외이사의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 상장법인의 1/2 수준으로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경영투명성 도모

<대형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 내 용 | 대형 증권회사 | 상 장 법 인 |
|--------------------|--------------------|------------------|
| · 대표소송제기권 | 0.005%, 6개월 | 0.01%, 6개월 |
|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0.25%(0.125%), 6개월 | 0.5%(0.25%), 6개월 |
| ·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 0.25%(0.125%), 6개월 | 0.5%(0.25%), 6개월 |
|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0.5% (0.25%), 6개월 | 1% (0.5%), 6개월 |
| · 주주제안권 | 0.5% (0.25%), 6개월 | 1% (0.5%), 6개월 |
| · 회사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1.5% (0.75%), 6개월 | 3% (1.5%), 6개월 |
|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1.5% (0.75%), 6개월 | 3% (1.5%), 6개월 |

*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 대형 증권회사의 범위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3/4 개정 ·

시행)

—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 이사총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상장법인의 1/2 수준으로 완화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적용되는 대형 증권회사의 범위를 규정

○ 장외거래 중개수수료 자율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수수료율 설정·변경시 금감원장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폐지 → 자율화
- 중개회사의 증권회사에 대한 중개수수료율(2/100,000 범위내) 조항 폐지 → 자율화

2. 투자신탁회사

가. 진입규제

- 투신업 진입기준의 투명성 제고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신사 설립시 허가기준, 절차,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자본금 : 100억원 이상

나. 영업·상품규제

- 투자신탁설명서제도의 보강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 투자신탁설명서를 사전에 금감위에 제출토록 의무화
 - 투자자에 대한 투자신탁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의무 부여
-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규제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주요한 내용을 투자신탁회사의 광고에 포함
 - 허위광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 수익증권판매 권유광고의 규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6/23
개정·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해 광고내용에 투신상품이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
본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

- 위탁회사의 상품운용의 자율성 제고 (증권투자신탁업법 : 개정안)
 - 신탁약관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제 → 보고제로 전환

-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의 다양화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2000/5/26 개정, 5/29 시행)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15 영업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가 협의
 - 채권딜러가 금리전망에 따라 공매도를 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해
지할 수 있게 되며, 공매도와 연계된 RP 및 채권대차거래가 활
성화되므로 채권딜러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투자신탁 상품분류체계 개편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0/5/12
개정, 6/1 시행)
 - 주식편입여부에 따라 주식형 및 공사채형 펀드로 분류하고 있는 현
행 상품체계를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비율에 따라 3종류로 개편
 - 상품특징의 명확화와 상품체계 통일로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선
택과 상품정보의 효율적 이용 가능

| | |
|--------|---|
| 주식투자신탁 | · 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 채권투자신탁 | · 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 (MMF포함) |
| 혼합투자신탁 | · 주식 및 채권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신탁으로서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배분하여 투자 |

- 금감원장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해지 가능한 투자신탁의 규모 상향조정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2000/10/2 개정 · 시행)

- 신고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투자신탁원본액
 - 채권투자신탁 및 혼합투자신탁 : 50억좌 → 100억좌
 - 주식투자신탁 : 10억좌 → 50억좌
-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함.

다. 재무건전성규제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신사는 법령준수, 자산운용, 투자자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작성해야 함.

- 위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6/23 개정 · 시행)
 -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반

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신탁재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

-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탁재산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6/23 개정 · 시행)
 - 외부감사비용을 고려하여 수탁고가 소액인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인 신탁재산과 투자자에 의한 통제가 잘 되는 사모신탁재산은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신탁재산운용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의 거래행위 금지
 -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 투자자보호의 강화 (증권투자신탁업법 : 개정안)
 - 위탁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6/23

개정·시행)

— 무위험자산인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폐지

- 신탁재산의 30% 이내 → 100% 이내

— 투신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규제

- 신탁재산의 7% 이내

○ 준법감시인의 자격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6/23 개정·시행)

— 2년 이상의 금융기관 근무경력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

○ 신탁재산의 투자한도 예외인정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6/23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한 한도 초과시 6개월 동안은 한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

○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10/23 개정·시행)

—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30%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대형주식에 대한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시가총액비중 수준

○ 후순위채권의 편입비율 확대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0/2/29

개정 · 시행)

- 투신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채권을 주로 편입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동 후순위채권을 후순위채권담보채펀드 자산총액의 30%까지 편입 허용

○ 투신사의 해외유가증권투자 지원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0/2/29 개정 · 시행)

- 투신사의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
 - 외국 투신사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신탁재산투자한도(5%)의 예외를 인정

○ 위탁회사의 유가증권 대여한도 제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0/8/3 개정 · 시행)

- 당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등의 50% 이내

○ 채권가치평가의 산정기준 확대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0/8/3

개정 · 시행)

- 채권의 가치평가에 증권업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이외에 금감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채권의 가격정보도 고려 가능

○ 시가평가제도 실시방안 확정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0/5/26

개정 · 시행)

| 구 분 | 유 형 | 기존 평가방법 | 2000.7.1이후 평가방법 |
|-----------------|--|---------------------------------|--|
| 장부가 평가 펀드 | - 98.11.14이전 설정펀드 · 적립식 이외의 투자 신탁 · 적립식 투자신탁 - MMF | · 장부가 · 장부가 · 장부가 | · 장부가 (7.1이후 수탁금지) · 장부가 (7.1이후 수탁분 시가평가) · 장부가 (신규수탁 허용) |
| 시가펀드 | - 98.11.15이후 설정펀드 | · 시 가 | · 시 가 |

○ 비상장채권 평가방법의 확대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0/6/9

개정 · 시행)

—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 채권가격의 적용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0/6/9 개정 · 시행)

— 2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채권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가 규정

- 적용하는 평가방법은 일관성을 유지

○ 채권가격평가기관의 지정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0/6/9 개정 · 시행)

— 금감원장이 채권평가업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

— 지정기준

- 채권평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
-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채권분석전문요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상시근무하는 평가분석요원이 10명 이상
- 채권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 합리적인 채권평가모형 보유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은 출자액이 자본금의 10% 이하

○ MM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 발생시 조치 및 보고 의무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MMF 신탁재산의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로 신탁재산에 1% 이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채권 등의 가격조정 또는 매각 등의 조치 후 금감위에 보고

○ MMF 편입채권 등의 신용등급 하락시 조치 의무화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MMF 편입채권 등의 신용등급이 투자비적격등급(채권은 BB+이하, CP는 B+이하)으로 하락하는 경우,

- 당해 채권 등을 하락된 신용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

○ MMF의 국채·통안증권 투자한도 상향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절차 : 2000/4/10 개정·시행)

- MMF의 수탁고 증가시 (경과물)채권의 부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채 및 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30% → 50%

라. 기업지배구조 등

○ 대형 투신사의 지배구조 개선 (증권투자신탁업법 : 2000/1/21 개정·시행)

- 사외이사의 수
 -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 대형 투자신탁회사의 범위 명시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2000/6/23 개정·시행)

- 대형 투자신탁회사의 범위를 신탁재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

- 대형 투신사에 대해서는 이사총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완화된 소수 주주권 행사요건이 적용됨.

3. 증권투자회사

가. 진입규제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하향조정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8/5 개정·시행)
 - 8억원 → 4억원
 - 증권투자회사의 투자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일반사무 수탁회사의 등록요건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8/5 개정·시행)
 - 자본금 20억 이상
 - 신탁재산 등의 계산에 관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독립된 전산설비 및 물적시설 보유 등

나. 영업·상품규제

- 투자설명서제도의 보강 (증권투자회사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금감위에 제출토록 의무화
 - 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의무 부여

-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규제 (증권투자회사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주요한 내용을 증권투자회사의 광고에 포함
 - 허위광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판매권유광고 규제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8/5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과장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 광고내용에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

다. 재무건전성규제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증권투자회사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투자회사 임직원의 내부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거래 행위 금지
 -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증권투자회사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일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 증권투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는 경우
 - 증권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증권투자회사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대상에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추가

-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증권투자회사법 : 개정안)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대여 허용

- 증권투자회사의 주식배당한도 확대 (증권투자회사법 : 개정안)
 -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 허용

○ 최저 순자산액의 하향조정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8/5 개정 · 시행)

- 유지해야 하는 순자산액을 인하
 - 4억원 → 2억원

○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폐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8/5 개정 · 시행)

-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위험자산인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취득한도를 폐지
 - 자산총액 30% 또는 10% → 100%

○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10/23 개정 · 시행)

-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30%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대형주식에 대한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시가총액비중 수준

○ 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필요적 기재사항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8/5 개정 · 시행)

-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회사 준법감시인의 선임자격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8/5 개정·시행)

—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 채권가치평가의 산정기준 확대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2000/8/11
개정·시행)

— 채권의 가치평가에 증권업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이외에 금감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채권의 가격정보도 고려 가능

○ 비상장채권 평가방법의 확대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0/6/9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 채권가격의 적용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2000/6/9 개정 · 시행)
 - 2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채권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가 규정
 - 적용하는 평가방법은 일관성을 유지

4. 선물회사

- 선물거래업 진입기준 투명성 강화 (선물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선물업의 허가기준을 구체화
 - 자본금 : 30억원 이상
 - 선물업 허가의 공고
 - 금감위가 선물업을 허가한 때에는 관보에 공고한 후 컴퓨터통신 등으로 일반인에게 공시
- 선물거래소의 임원자격 제한 (선물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금융관련법률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선물거래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선물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거래의 대상품목인 일반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시세를 고정·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의무화 (선물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선물업자는 건전한 자산운용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

- 선물업 허가의 세부요건 명시 (선물거래법 시행령 : 2000/7/10 개정·시행)
 - 전문인력 3인 이상 확보
 - 선물위탁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 보유
 - 주요출자자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

- 선물업자의 자산운용 및 경영건전성 유지의무
(선물거래법 시행령 : 2000/7/10 개정·시행)
 -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 이상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
 - 주요출자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신용공여 금지

○ 선물업자의 책임준비금 적립 (선물거래법 시행령 : 2000/7/10 개정 · 시행)

— 회계연도마다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 단,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수탁수수료의 0.1%를 초과하면 수탁수수료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 선물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위탁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

○ 선물업자의 판매가능 수익증권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2000/8/3

개정 · 시행)

— 위탁회사가 운영하는 신탁재산 중 자산총액 30% 이상을 선물거래 · 해외선물거래 · 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 또는 유가증권옵션매매거래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증권만 판매 가능

○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 (선물업 감독규정 : 2000/12/22 개정, 12/29

시행)

— 영업용순자본비율산정시 적용되는 총위험액중 기초위험액 산정방식을 완화

- 연간경상지출비용의 25%와 위탁자예탁자산의 4%중 큰 금액
→ " 위탁자예탁자산의 2% "
- 위험액 과다산정으로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었던 선물회사들의 영업력 신장이 기대됨.

- 적기시정조치제도 정비 (선물업 감독규정 : 2000/12/22 개정, 12/29 시행)
 -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상 기준시점(반기·결산기말) 제한 폐지 및 경영개선요구 조치내용 추가

Ⅲ. 증권 행정감독

1. 법적규제기관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항의 상위 규정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현재 시행세칙으로 운영중인 사항 중 감독정책이나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 기관 및 임원 제재의 종류 및 요건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변상조치요구
- 과태료 부과기준
- 제재의 병과
- 금융기관의 제재조치 이행
- 주요 정보사항 보고

○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 및 규제개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경영유의사항의 정리기한 연장

- 3개월 → 6개월

— 보고대상 정보사항의 축소

- 검사징구자료의 과잉·중복징구 방지
- 자체감사계획 등의 보고대상 금융기관의 축소
 - 중소형 금융기관(선물회사·여전·신협·부동산신탁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계획 및 자체감사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

○ 검사업무의 투명성 확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한 감사원 복무수칙 개선
 - 금지항목의 구체화
 - 유가증권 매매거래 관련 제한 강화
 - 과도한 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 제한조항 및 상급자의 부당 행위 지시에 대한 추종 배격 조항 신설
- 감독 및 검사상 조치종류의 명확화
- 일일 검사실시내용에 대한 기록 및 보고체제 구축

○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기반 구축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검사업무와 관련한 검사사전준비협의회, 검사결과협의회, 자산건전성분류협의회, 상시감시업무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운영근거 마련
- 지원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 변경
- 검사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도모

○ 검사결과 조치기준의 합리적 운영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거액금융사고 발생시의 기관 제재기준 강화

| 제 재 | 기 준 | 변 경 |
|---------------|---|---|
| 문 책 기관경고 | 자기자본의 2% 또는 10억 원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 자기자본의 2%(자기자본의 2% 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 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손 실 발생 |
| 주 의 적 기관경고 | 자기자본의 1% 또는 5억 원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 자기자본의 1%(자기자본의 1% 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 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손 실 발생 |

— 임원에 대한 제재감면기준 마련

— 부실여신에 대한 기관제재 대상 확대

- 은행에 한정 →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조정 (금융기관 제재규정 시행세칙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금감원 원내위원 8인

→ 외부전문가(변호사, 법학교수) 3인을 추가하여 11인으로 구성

○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금융기관 제재규정 시행세칙 :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면직조치

-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인 경우 : 위법·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양정 수위를 한 단계씩 강화

2. 자율규제기관

-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증권거래법 :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거래소
 - 예산·결산의 금감위 보고의무 폐지
 - 증권금융회사
 - 정관변경시 금감위 승인 → 변경후 보고

- 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증권거래법 : 개정안)
 - 이사회를 공익이사·회원대표 중심으로 개편
 - 결제책임없는 회원제도 도입
 - 회원구조를 다양화하여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가입비(약 200억원) 부담도 경감

-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 (증권거래법 : 개정안)
 -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문화

○ 코스닥위원회 관련제도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6/23 개정,
7/1 시행)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 코스닥위원회 위원에 대해 심신장애, 직무상 의무위반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기전 해임 불가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요건 규정

- 친인척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하고,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허용

○ 증권업협회의 규정 제정 등에 관한 승인기관 변경 (증권거래법 : 개정안)

— 금감위 → 재정부장관

○ 유가증권 인수업무 감독사항의 증권업협회 이관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0/12/22 제정)

— 이관대상업무

- 간사회사가 발행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의 인수 제한
-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간사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의무
-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모집설립주식의 인수제한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 주관사회사의 발행회사 주식 부실분석에 대한 제재

- 인수대상 무보증사채의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 공모주식의 청약그룹별 배정기준 등

○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제고 (증권업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증권회사의 신상품개발 촉진 및 증권업협회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약관심사업무 및 증권저축감독업무를 증권업협회에 대폭 위임

○ 거래소회원 감리업무의 효율화 (업무규정 시행세칙 :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현지출장의 실시범위 및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회원감리결과 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협의회
를 설치·운영

○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2000/1/28 개정,
2/1 시행)

- 증권업협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의 업무조정
 - 코스닥증권의 등록관련 업무를 협회로 이관
 - 증권업협회의 공시업무·시장관리업무를 코스닥증권으로 이관

IV.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1. 기업경영감시

○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증권거래법 : 2000/1/21 개정·시행)

— 사외이사의 수

-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2000사업년도에 대한 주총시까지 그 비율에 관계없이 3인 이상만 선임 가능)

— 사외이사의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근거 강화

-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 「증권거래법」

—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범위 신설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3/4 개정·시행)

—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 이사총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형 상장법인의 범위를 규정

- 사외이사의 선임 및 기능 강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대형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일정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음.

-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강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이사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통지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
 - 사외이사의 이사회출석을,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보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소수주주권 | 기 존 | 변 경 |
|---------------|--------------|----------------|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0.5% (0.25%) | 0.05% (0.025%) |
| 집중투표실시요구권* | 신설 (상법상 3%) | 1% |
| 회계장부열람권 | 1% (0.5%) | 0.1% (0.05%) |

* 괄호안은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한하여 적용

*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시 3% 이상 지분보유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행사 허용

- 협회등록법인의 지배구조 강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협회등록법인도 사외이사 도입(1/4 이상) 의무화
 - 대형 협회등록법인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협회등록법인도 금감위의 재무관리기준 적용

○ 사외이사의 선임결격요건 추가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3/4 개정 ·

시행)

- 당해 증권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
- 당해 증권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 M&A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모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 자유화

(증권투자회사법 : 개정안)

- 현재 증권투자회사는 계열관계에 있거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독립적 의결권행사만 허용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 산정절차 간소화 (상법 : 개정안)

- 회사와 매수청구한 주주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회계전문가의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
- 곧바로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

○ 주총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허용 (상법 : 개정안)

- 주가관리 등 재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정기 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 가능

○ 주총결의사항의 확대 (상법 : 개정안)

-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를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포함

-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

○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상법 : 개정안)

- 신주의 제3자배정은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

○ 이사회의 활성화 도모 (상법 : 개정안)

- 이사회 결의사항의 구체화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추가
- 이사의 회사업무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어나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보고의무 명시
 - 이사는 업무집행상황을 3개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 4/1 시행)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금감위는 민간전문기관이 작성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수정요구권 보유

○ 한국회계연구원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 마련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 4/1 시행)

- 금감원은 분담금으로 회계처리기준 제정기관을 지원 가능
 - 금감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5% 이내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위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7/27 개정·시행)

- 금감위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 금융감독원은 분담금의 4%를 지원

○ 한국회계연구원에 대한 업무위탁관련 사항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 2000/8/25 개정, 8/26 시행)

- 회계연구원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금감위에 지체없이 보고
 - 감독원장은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수정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중선위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부의
- 재정적 지원
 - 직전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납부한 순분담금의
4%를 회계연구원에 매 분기별로 지급하여 적립기금 및 운영경
비로 사용

○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업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도,

-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동일 감사인으로 3개년도 계속감사를 의무화
- 감사인중 주책임자인 이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년도 동일기업에 대한 감사를 금지

○ 감사인 선임의 투명성 제고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감사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주주총회에 사후보고
- 계약기간 중 감사인 변경시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요구

○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사실 및 조치내용의 공시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 금감위가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확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7/27 개정·시행)

-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반영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변경
 - 지분율 기준 → 실질적인 지배력 기준
 - 타회사에 대한 주식소유지분이 적은 경우에도 타회사 임원의 임

면 등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작성대상에 포함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전체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

○ 상장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정감사인제도 적용면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7/27 개정·시행)

— 종전에는 상장에정기업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 증선위가 미리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장직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회계감사를 면제

○ 주주총회 참고서류 기재사항의 범위확대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2000/9/29 개정)

— 이사·감사선임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공시사항에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토록 추가

○ 회계조사 방법의 개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00/12/8 개정, 12/18 시행)

— 감사조서 중심의 서면감리 원칙을 폐지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출석요구 등에 의한 입체적인 조사체제로 전환

• 부외부채, 비용과소계상, 재고자산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추적 등 정밀조사실시

- 외감법상의 감리권과 증권거래법상의 조사권을 동시에 발동하여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서제출요구, 계좌추적, 회계장부열람 실시
 - *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

○ 감리대상 선정방법의 개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00/12/8 개정, 12/18 시행)

- 표본감리(일반감리) 위주의 감리업무를 분식혐의기업을 위주로 한 회계조사업무로 전환하되, 표본감리도 병행 실시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00/12/8 개정, 12/18 시행)

— 기업 및 관련 임직원

-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
-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외부감사방해죄로 고발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중대한 분식회계가 공인회계사의 묵인(방조)등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등 중징계 및 형사 고발
- 과실에 의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기준 대폭 강화
 - * 감사인 지정제외기간 : 2년 이내 → 3년 이내
 - * 감사인 지정제외회사 : 3/100(15사) 이내 → 5/100(25사) 이내

* 감사업무참여제한 : 상장법인·증권위 지정회사

→ 협회등록법인을 추가

○ 분식회계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2000/12/8 개정, 12/18 시행)

-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내용을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여신업무·세정 등에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관련내용을 게시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 조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

2000/8/25 개정, 8/26 시행)

— 작성대상에서 제외

-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종속회사의 처분이 예정된 경우 등

— 작성대상에 포함

-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한 회사가 피투자회사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등

—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배회사의 범위를 규정

- 연속적인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금융기관 등은 중간지배회사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

2000/8/25 개정, 8/26 시행)

- 증선위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상장예정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2. 지원·관리제도

- 이익소각 절차의 간소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이익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소각 가능
 -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상의 근거설치에 관한 주총결의요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

- Stock Option 부여시의 시가산정방법 변경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2000/3/15 개정·시행)

- 기준일 이전 3개월간 평균주가
 - 부여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관련 조항 변경

○ Stock Option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범위 축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2000/1/10 개정, 4/13 시행)

- 상장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를 축소
 - 주식매수가액 연간 5천만원 → 3천만원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 완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선택권 부여한도 개선
 - 대통령령으로 규정(15%)
 -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이사회결의에 의한 선택권 부여 허용
 - 전부 주총결의에 의해서만 부여 가능
 - 발행주식총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부여 가능
- 선택권 행사요건 완화
 -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and 2년 이상 재직
 -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상법과 일치)

○ 자기주식 취득금지기간 단축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4/1 개정·시행)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자기주식의 재취득금지기간을 단축
 - 처분 후 6월 이내 재취득금지 → " 3월 이내 "

○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상장법인·코스닥등록법인이 2002. 12. 31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

○ 자기주식 취득실패시의 재취득 금지기간 단축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에 실패한 경우, 재취득 금지기간을 단축
 - 3개월 → 1개월
 - * 추가급등락시 시장안정화에 기여

○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주문가격폭의 확대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자기주식 취득시 장개시전 시초가결정에 참여하는 주문가격을 확대
 - 전일종가~전일종가보다 2호가 가격단위 높은 가격
 - 전일종가~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
 - * 추가상승시에도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고, 자기주식 매수주문의 신속한 체결이 가능

○ 자기주식 취득한도의 산정방법 개선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 2000/4/28 개정, 5/2 시행)

— 기업회계기준에서 신탁계약(자사주펀드)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방식에 반영

•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시 신탁계약 금액 전체를 차감

→ 신탁계약금액중 자기주식 취득분만큼 자기자본 산정시 이미 차감되어 반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취득한도 산정시 전체 계약금액중 차감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차감

○ 발기인의 최소인원수 제한 폐지 (상법 : 개정안)

— 7인 → 3인 (95년 개정) → 1인 (2000년 개정안)

○ 비상장·비등록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시가산정
방법 변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2000/10/23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상의 행사가격 및 산정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행사가격 및 산정기준

○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인정

(조세특례제한법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상장중소기업도 코스닥등록중소기업처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도록 허용

- 손금산입한도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30%
 - * 손금산입한도를 기존 50%에서 일부 축소

○ 장기보유 우리스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우리스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V. 기업구조조정

1. 일반기업

- M&A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절차의 완화 (증권거래법 : 개정안)
 - 공개매수 공고전 금감위에 사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금감위에 사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까지의 대기기간 단축
 - 7일 → 3일
 - 재공개매수 금지기간 단축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 6월

- 합병의 공정성 제고 (증권거래법 시행령 : 2000/9/8 개정 · 시행)
 - 정부의 승인 · 지도 등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시에도, 당사자인 회사가 서로 계열회사관계인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 기존에는 정부의 승인 등에 의한 합병시, 합병비율은 당사자가 자율결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개념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2000/10/23 제정 · 시행)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Workout기업

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Mutual Fund 형태의 Paper Company

— 동법의 유효기간

- 6년간 시행 (단, 유효기간 내 설립된 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정관상의 존립기간동안 동법의 적용을 받음)

○ CRV의 설립 및 존립기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2000/10/23

제정·시행)

—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금감위에 등록

- 본점이외의 영업소 설치금지
- 직원 및 상근임원의 채용금지

— 존립기간은 5년 이내, 연장시 1년 이내로 제한

○ CRV의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2000/10/23 제정·시행)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 이내

— 사채(ABS 등)발행

-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

○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 확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2000/10/23

제정·시행)

- 은행법·보험업법·종금사법 등에 규정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

○ CRV의 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2000/10/23 제정·시행)

— 업무

- 금융기관이 보유한 Workout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이 Workout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의 매매
- Workout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지급보증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 수행 등

— 자산운용업무 등의 타회사 위탁

- 자산운용업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업무 :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영위 금융기관
- 일반사무 : 채권금융기관

○ CRV 감독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2000/10/23 제정·시행)

— 금감원장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검사권을 보유

— 금감위는 검사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권 등을 행사

- CRV 등록요건 중 자본금기준의 설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10/31 제정 · 시행)
 - 5억원 이상

- CRV의 추가업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10/31 제정 · 시행)
 - 약정채결기업에 대한 투자

- CRV의 자산운용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10/31 제정 · 시행)
 -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때,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등에 운용

-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는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2000/10/31 제정 · 시행)
 - 자기자본금 : 20억원 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4인 이상

- CRV의 등록 처리시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2000/11/24 제정)
 -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CRV의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 명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2000/11/24 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CRV의 공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2000/11/24 제정)

- 등록내용 등의 공시를 위해 투자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2부
 -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 등록사항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투자회사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및 감독업무의 이관에 따른 규정제정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 2000/7/7 개정 · 시행)

- 산업자원부장관 → 금융감독위원회
 - * 기업구조조정조합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융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구조조정 대상기업 자산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 2000/7/7 개정 · 시행)

- 납입출자금 10억원 이상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총출자금의 5% 이상

- 주식 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 (상법 : 개정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교환·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 모자회사관계의 인정기준 상향조정 (상법 : 개정안)
 - 모자회사관계가 성립되는 지주비율요건을 변경
 - 40% → 50%

-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용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요건 보완
 - 지주회사 설립이전에 주권상장된 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의 경우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완화(50% → 30%)
 - 30대집단 소속회사가 사업연도중 주식취득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 유예기간 부여
 -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무 중 자회사지분율 제한의 적용 제외
 -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

- 공정위의 조사권 강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개정안)
 -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기한(2001. 2. 4 만료) 연장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적용대상 확대
 -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조사 → 위장계열사의 조사도 추가
 - 자료미제출,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범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4/1 개정, 2001/4/1 시행)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타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되는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구체화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의 예외인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4/1 개정·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허용

- 공시대상 내부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4/1 개정·시행)
 -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거래의 목적·대상·금액을 공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1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행위로 규정

- 회사정리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도입 (회사정리법 : 개정안)
 - 회사부채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그 정리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는 정리계획안 결의시 가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절차지연으로 인한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 파산절차 이행의 신속화 (화의법 : 2000/1/12 개정, 4/13 시행)
 - 화의절차가 실패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 처음부터 절차 다시 시작
 - 화의절차·화의불인가·화의취소로 파산선고되면 채권신고 등 이미 진행된 절차는 파산절차에서도 효력 존속

- 주식회사의 화의신청에 대한 기각사유 확대 (화의법 : 2000/1/12 개정, 4/13 시행)
 - 고의적인 부실경영
 -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이 발생한 경우도 추가

- 화의개시 결정기간의 단축 (화의법 : 2000/1/12 개정, 4/13 시행)
 - 3개월 → 1개월

○ 화의조건의 변경사유 확대 (화의법 : 2000/1/12 개정, 4/13 시행)

— 화의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화의조건을 변경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더라도 이행가능성이 높은 화의안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의조건의 변경이 가능

○ 화의절차의 폐지 (화의법 : 2000/1/12 개정, 4/13 시행)

— 화의개시결정 후라도 다음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지

-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영진의 부실경영이나 자산·부채규모의 과다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 재단채권의 범위 확대 (파산법 : 2000/1/12 개정, 4/13 시행)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피용자의 급료·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추가

- 근로자의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

○ 파산관재인인의 부인권 행사범위 확대 (파산법 : 2000/1/12 개정, 4/13 시행)

—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변제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전 30일 이내의 변제행위
→ " 60일 이내의 변제행위

- 부인권 행사의 강화 (파산법 : 000/1/12 개정, 4/13 시행)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행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령

-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요건 완화
 - (법인세법 시행령 :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사업부문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개선
 -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9/29 개정)
 -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합병시, 협회등록법인이 코스닥시장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외부평가의무를 면제
 - 종전에는 협회등록법인이라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정부승인 등에 의한 합병의 공정성 제고
 -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 2000/9/29 개정)
 - 정부의 승인·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합병시에도, 합병당사자가 계열사이고, ①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서 시장가격에 의한 합병비율을 산정하지 않거나, ②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무화

- 기존에는 정부의 승인 등에 의한 합병시, 합병관련요건의 적용을 배제

2. 금융기관

-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 촉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 · 시행)

- 합병후의 금융기관이 합병전 금융기관이 행하던 업무를 법령에 의해 할 수 없게 된 경우,

- 금감위의 인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계속 영위 가능

- 금융기관간의 합병촉진을 위한 지원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6/7 개정 · 시행)

- 금융기관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자금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등의 자금지원 가능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의 다양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 · 시행)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자금지원방법을 확대

- 출자 → 출자 및 유가증권매입

- 지원자금 회수의 효율성 제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2000/1/21 개정·시행)
 - 영업이 전부 정지되거나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선임 가능
 - 해산·파산되는 금융기관의 최대채권자가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동공사의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가능

-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6/7 개정·시행)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동법의 적용대상에 추가

-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시 영위가능한 업무의 구체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6/7 개정·시행)
 -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중에서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
 - 은행과 종금사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증권회사와 종금사가 합병하여 증권회사가 되는 경우 등

- 금감위의 부실관련 자료요청 대상 공공기관의 명시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6/7 개정·시행)
 -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규명·추궁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명시

-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어음교환소
- 금융지주회사의 허용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개념
 -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설립인가제 : 금감위의 인가
- 금융지주회사 인가의 세부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시행)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할 것 등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기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자회사편입 승인시 요구되는 경영실태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종합평가등급 2등급(양호) 이상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그 부수업무 만을 수행(순수 지주회사)
 -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영위 불가

○ 금융지주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명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시행)

-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업무
-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 개발업무
 - 금융지주회사는 기본업무인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이외에 추가로 부수업무의 영위도 가능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 도입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완전지주회사) 설립 가능
 -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함.
 - ※ 주식교환 : 기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신주를 교부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
 - ※ 주식이전 : 주주가 주식 전부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지주회사를 설립

○ 금융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소유금지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원칙
 -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음.
- 예외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밑에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둘 수 있음.

- 중간지주회사 지배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여야 함.
 - 중간지주회사 밑에는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만을 둘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
 -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4%)로 제한
 -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업가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
 - 은행지주회사의 타은행주식의 소유한도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4%)를 초과하여 다른 은행주식을 소유 가능
 - 강화된 지배구조 적용
 -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의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

-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초과보유 승인요건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시행)
 - 금융전업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취득

- 내부거래 규제 (Fire-Wall 설치)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출자금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소유금지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음.
 -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을 손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 · 시행)
 -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금사인 경우
 - 신용정보사, 신용카드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투신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 자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
 - 투신사, 투자자문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허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시행)
 - 부실금융기관인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우, 및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등
 - 한도를 초과한 출자금은 2년 이내에 회수

- 신용공여한도 설정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상호간의 신용공여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금감위의 감독 (금융지주회사법 :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경영건전성 감독
 - 경영지도기준의 준수
 - 연결재무제표와 주요 경영상황의 공고의무화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 추가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시행)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자 등은 금융전업자의 인가를 받지 못함.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의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2000/12/20 제정·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과거 대규모기업집

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매입을 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자회사간 신용공여시 확보하여야 할 적정담보는 담보자산의 종류에 따라 담보비율을 차등 적용

| 담 보 자 산 | 담 보 비 율 |
|----------------------|---------|
| 예·적금,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 100% |
| 공채, 공공기관보증채 | 110% |
| 기타 자산 | 130% |

* 요주의 이하 분류자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담보제공 불가능

- 자회사간 거래가 금지되는 불량자산
 -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자산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공동광고하는 경우 예금자 및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부보금융기관여부 등을 광고에 명시

○ 경영지도기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융지주회사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과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경영지도비율 유지

| 경 영 지 도 기 준 | | 기 준 비 율 |
|---------------------------|------------|---------|
|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 | 100% 이상 |
| 유동성비율 (금융지주회사 개별기준) |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
| | 외화유동성비율 | 80% 이상 |
| | 외화만기 불일치비율 | 0% 이상 |
| | | 10% 이내 |

* 필요자본 : 금융기관이 금융관련법령에 규정된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 금융지주회사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기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설정·운용

— 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

— 금융지주회사의 공시사항

- 일반적인 경영상황, 임직원 및 주주 현황, 재무제표 및 경영지표, 내부거래규제 정책 및 내부거래내역 등

○ 경영실태평가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검사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검사업무에 반영

- 평가단계 : 5단계, 1등급(우수) ~ 5등급(위험)

- 적기시정조치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부실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음.
 - 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권고·요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제출 받은 후 1개월내 승인 여부 결정

- 공적자금 회수기능 강화 (예금자보호법 : 2000/1/21 개정·시행)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에게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동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 예금보험공사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부실관련자의 재산자료 요청권을 부여

-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방식 확대 (예금자보호법 : 2000/1/21 개정·시행)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방식을 확대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지원
 - 출자 →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 부실책임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요청 대상 공공기관의 명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2000/6/23개정 · 시행)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명시

-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어음교환소

○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근거 마련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2000/6/23 개정 · 시행)

-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예금보험료의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2000/8/5 개정 · 시행)

-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인상

- 증권회사의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 20/10,000

○ 예금자보험금의 지급한도 상향조정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2000/10/31

개정, 2001/1/1 시행)

- 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인상

- 2천만원 → 5천만원(2000. 1. 1부터)

-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제성 예금은 2003년 말까지 예금전액을 지급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증한도 축소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000/2/14 개정·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축소

- 동 공사의 납입자본금 등을 합제한 금액의 500% → 300%

<부록> 규정별 변경내용

I. 법령

1. 증권거래법

○ 대형 증권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2000/1/21 개정 · 시행)

- 사외이사의 수
 -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 사외이사의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
-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 상장법인의 1/2 수준으로 완화하여 증권회사의 경영투명성 도모

<대형 증권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 내 용 | 대형 증권회사 | 상장법인 |
|--------------------|--------------------|------------------|
| · 대표소송제기권 | 0.005%, 6개월 | 0.01%, 6개월 |
|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0.25%(0.125%), 6개월 | 0.5%(0.25%), 6개월 |
| · 이사·감사·청산인 해임청구권 | 0.25%(0.125%), 6개월 | 0.5%(0.25%), 6개월 |
| · 회계장부열람청구권 | 0.5% (0.25%), 6개월 | 1% (0.5%), 6개월 |
| · 주주제안권 | 0.5% (0.25%), 6개월 | 1% (0.5%), 6개월 |
| · 회사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1.5% (0.75%), 6개월 | 3% (1.5%), 6개월 |
|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1.5% (0.75%), 6개월 | 3% (1.5%), 6개월 |

* ()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 대형 상장법인의 지배구조 개선 (2000/1/21 개정 · 시행)
 - 사외이사의 수
 -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 (2000사업년도에 대한 주총시까지는 그 비율에 관계없이 3인 이상만 선임 가능)
 - 사외이사의 선임
 -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임
 - 사외이사제도의 도입근거 강화
 - 증권거래소의 「유가증권상장규정」 → 「증권거래법」
 -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증권업 진입 · 퇴출기준의 투명성 제고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업 허가심사기준과 허가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판단기준 및 허가취소근거 마련
 - 대주주발행 유가증권 소유제한, 채무보증금지 등

- 비상장 증권회사의 분기보고서 도입 (2000/1/21 개정, 4/1 시행)
 - 비상장 증권회사에 대해 분기별로 영업보고서의 작성을 의무화
 -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00. 1. 1부터 분기보고서 작성 의무화

- 협회등록법인의 공시의무 강화 (2000/1/21 개정, 4/1 시행)
 - 협회등록법인에 대해서도 상장법인과 동일한 수시공시제도 및 조회 공시제도를 도입

— 수시공시사항 및 조회공시사항의 불성실공시 또는 미공시에 대한
과징금 부과 가능

- 최고 5억원 이내

○ 증권관계기관에 대한 규제완화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거래소

- 예산·결산의 금감위 보고의무 폐지

— 증권금융회사

- 정관변경시 금감위 승인 → 변경후 보고

[개정안]

○ 전자장외거래시스템(ATS)의 허용

—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을 거래할 수 있는 전
자장외거래시스템을 증권업의 한 형태로 허용

- 기존 시장에서 거래된 최종거래가격을 이용하여 당해 주식을 장
종료 이후에 거래

○ M&A 활성화를 위한 공개매수절차의 완화

— 공개매수 공고전 금감위에 사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금감위에 사후신고

— 공개매수 공고후 실제 매수까지의 대기기간 단축

- 7일 → 3일

- 재공개매수 금지기간 단축
 - 공개매수신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 6월

- 증권거래소의 지배구조 개선
 - 이사회를 공익이사·회원대표 중심으로 개편
 - 결제책임없는 회원제도 도입
 - 회원구조를 다양화하여 증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가입비(약 200억원) 부담도 경감

-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
 - 협회중개시장 운영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명문화

- 증권업협회의 규정 제정 등에 관한 승인기관 변경
 - 금감위 → 재경부장관

- 사외이사의 선임 및 기능 강화
 - 대형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의 경우, 일정한 소수주주가 추천한 사외이사후보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가 반드시 주주총회에 추천
 -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맡음.

○ 이익소각 절차의 간소화

-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은 주총 특별결의로 정관에 이익소각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이사회결의로 주식소각 가능
 - 이익소각을 위한 정관상의 근거설치에 관한 주총결의요건 논란을 입법적으로 해결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제도 완화

- 선택권 부여한도 개선
 - 대통령령으로 규정(15%)
 - 2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 이사회결의에 의한 선택권 부여 허용
 - 전부 주총결의에 의해서만 부여 가능
 - 발행주식총수 10% 이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까지는 이사회결의로 부여 가능
- 선택권 행사요건 완화
 -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하고 and 2년 이상 재직
 - 선택권부여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 (상법과 일치)

○ 주주총회 소집공고의 강화

- 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은 이사선임을 위한 주총 소집통지시 이사후보자의 성명·약력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
- 사외이사의 이사회출석율,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보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 경영참고사항 등을 통지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완화

| 소수주주권 | 기 준 | 변 경 |
|---------------|--------------|----------------|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0.5% (0.25%) | 0.05% (0.025%) |
| 집중투표실시요구권* | 신설 (상법상 3%) | 1% |
| 회계장부열람권 | 1% (0.5%) | 0.1% (0.05%) |

* 괄호안은 대형 상장·협회등록법인에 한하여 적용

* 집중투표제 배제를 위한 정관변경시 3% 이상 지분보유 주주는 3%까지만 의결권행사 허용

○ 협회등록법인의 지배구조 강화

- 협회등록법인도 사외이사 도입(1/4 이상) 의무화
- 대형 협회등록법인도 감사위원회 설치 의무화
- 협회등록법인도 금감위의 재무관리기준 적용

○ 부실·허위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 투명한 기업공시를 위하여 과징금의 상한을 상향조정하고 벌칙 강화
 - 과징금의 상한 5억원 → 20억원

2. 증권거래법 시행령

○ 대형 증권회사의 범위 신설 (2000/3/4 개정·시행)

-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종합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

- 이사총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하며, 상장법인의 1/2 수준으로 완화된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이 적용되는 대형 증권회사의 범위를 규정

○ 대형 주권상장법인의 범위 신설 (2000/3/4 개정 · 시행)

- 최근 사업년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

- 이사총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 하여야 하는 대형 상장법인의 범위를 규정

○ 사외이사의 선임결격요건 추가 (2000/3/4 개정 · 시행)

- 당해 증권회사 이외에 2개 이상의 다른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 등으로 재직중인 자

- 당해 증권회사와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변호사 · 공인회계사 등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자

○ 자기주식 취득금지기간 단축 (2000/4/1 개정 · 시행)

- 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에 대한 자기주식의 재취득금지기간을 단축

- 처분 후 6월 이내 재취득금지 → " 3월 이내 "

○ 주택저당증권 발행의 원활화 (2000/4/1 개정 · 시행)

-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하여 발행되는 주택저당증권 (MBS)에 대하여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무 및 유가증권발행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

-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의 면제확대 (2000/4/1 개정·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 사채권에 대하여도 유가증권발행인등록의무를 면제

- 외국기업발행 주권의 코스닥시장 등록 허용 (2000/9/8 개정·시행)
 - 코스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 확대
 -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권 및 이를 기초로 발행된 예탁증서(DR)를 추가

- 소액공모의 공시 강화 (2000/9/8 개정·시행)
 - 유가증권신고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시에도 발행인의 재무상태 및 영업실적 등 투자자보호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의 공시를 의무화

- 자기매매업 및 위탁매매업 영위 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인하
(2000/9/8 개정·시행)
 - 300억원 → 200억원

- 채권딜러간 중개회사와 채권매매전문증권회사의 최저자본금 설정
(2000/9/8 개정·시행)
 - 채권딜러간 중개회사(IDB) : 20억원
 - 채권을 취급하는 도매업자간 채권거래를 중개하는 회사

- 채권매매 전문증권회사 : 20억원
 - 일반인을 대상으로 채권매매만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회사

- 증권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구체화
(2000/9/8 개정·시행)

- 자산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 관리
-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등

- 증권회사 준법감시인의 피선거격 (2000/9/8 개정·시행)

-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합병의 공정성 제고 (2000/9/8 개정·시행)

- 정부의 승인·지도 등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의 합병시에도, 당사자인 회사가 서로 계열회사관계인 경우에는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
 - 기존에는 정부의 승인 등에 의한 합병시, 합병비율은 당사자가 자율결정

3.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 Stock Option 부여시의 시가산정방법 변경 (2000/3/15 개정·시행)
 - 기준일 이전 3개월간 평균주가
 - 부여일 이전 2개월, 1개월, 1주간의 거래량가중평균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관련 조항 변경

- 무보증사채 발행을 위한 유가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기간 단축 (2000/11/21 개정·시행)
 - 금감위 제출일부터 10일 경과 → 7일 경과
 - 사채발행의 원활화 도모

-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고객예탁자산 최소규모 설정 (2000/11/21 개정·시행)
 -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투자자문계약자산의 최소규모
 - 개인고객 : 5천만원
 - 법인, 기타 단체고객 : 1억원

4. 증권투자신탁업법

- 투신업 진입기준의 투명성 제고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신사 설립시 허가기준, 절차,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인·허가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
 - 자본금 : 100억원 이상

- 대형 투신사의 지배구조 개선 (2000/1/21 개정·시행)
 - 사외이사의 수
 - 최소 3인 이상, 이사회 총원의 1/2 이상
 -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소수주주권의 행사요건 완화

- 내부통제기준의 마련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신사는 법령준수, 자산운용, 투자자보호를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작성해야 함.

- 신탁재산의 회계감사 (2000/1/21 개정, 4/1 시행)
 - 신탁재산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에 대해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의무화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신탁회사 임직원의 미공개 신탁재산운용정보를 이용한 유가증

권의 거래행위 금지

-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 투자신탁설명서제도의 보강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신탁회사가 투자자에게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 투자신탁설명서를 사전에 금감위에 제출토록 의무화
- 투자자에 대한 투자신탁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의무 부여

○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규제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주요한 내용을 투자신탁회사의 광고에 포함

- 허위광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개정안]

○ 위탁회사의 상품운용의 자율성 제고

— 신탁약관에 대한 금감위의 승인제 → 보고제로 전환

○ 투자자보호의 강화

— 위탁회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규정

5.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령

- 대형 투자신탁회사의 범위 명시 (2000/6/23 개정 · 시행)
 - 대형 투자신탁회사의 범위를 신탁재산 총액이 6조원 이상인 회사로 규정
 - 대형 투신사에 대해서는 이사총수의 1/2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완화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적용됨.

- 위탁회사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2000/6/23 개정 · 시행)
 -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신탁재산 (2000/6/23 개정 · 시행)
 - 외부감사비용을 고려하여 수탁고가 소액인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인 신탁재산과 투자자에 의한 통제가 잘 되는 사모신탁재산은 회계감사대상에서 제외

- 수익증권판매 권유광고의 규제 (2000/6/23 개정 · 시행)
 - 투자자보호를 위해 광고내용에 투신상품이 실적배당상품이므로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

-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 도모 (2000/6/23 개정·시행)
 - 무위험자산인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폐지
 - 신탁재산의 30% 이내 → 100% 이내
 - 투신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한도 규제
 - 신탁재산의 7% 이내

- 준법감시인의 자격 (2000/6/23 개정·시행)
 - 2년 이상의 금융기관 근무경력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경력자

- 신탁재산의 투자한도 예외인정 (2000/6/23 개정·시행)
 -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유가증권 발행법인의 합병 등의 사유로 인한 한도 초과시 6개월 동안은 한도 적합한 것으로 간주

-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2000/10/23 개정·시행)
 -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30%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대형주식에 대한 신탁재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시가총액비중 수준

6. 증권투자신탁업법 시행규칙

- 후순위채권의 편입비율 확대 (2000/2/29 개정·시행)
 - 투신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된 후순위채권을 주로 편입하는 펀드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동 후순위채권을 후순위채권담보채펀드 자산총액의 30%까지 편입 허용

- 투신사의 해외유가증권투자 지원 (2000/2/29 개정·시행)
 - 투신사의 해외투자펀드에 대해서,
 - 외국 투신사의 수익증권 또는 증권투자회사의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신탁재산투자한도(5%)의 예외를 인정

- 선물업자의 판매가능 수익증권 (2000/8/3 개정·시행)
 - 위탁회사가 운용하는 신탁재산 중 자산총액 30% 이상을 선물거래·해외선물거래·유가증권지수선물거래 또는 유가증권옵션매매거래의 방법으로 투자하는 신탁재산의 수익증권만 판매 가능

- 위탁회사의 유가증권 대여한도 제한 (2000/8/3 개정·시행)
 - 당해 신탁재산에 속하는 유가증권 등의 50% 이내

- 채권가치평가의 산정기준 확대 (2000/8/3 개정·시행)
 - 채권의 가치평가에 증권업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이외에 금감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채권의 가격정보도 고려 가능

7. 증권투자회사법

- 투자설명서제도의 보강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주식을 모집·매출하는 경우,
 - 투자설명서를 사전에 금감위에 제출토록 의무화
 - 투자자에 대한 투자설명서 제공 및 주요내용 설명의무 부여

- 미공개 자산운용정보의 이용행위 금지 (2000/1/21 개정, 4/1 시행)
 - 증권투자회사 임직원의 내부 자산운용정보를 이용한 유가증권 거래 행위 금지
 - 유가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방지

- 판매권유광고의 내용 규제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자에게 알려야 할 주요한 내용을 증권투자회사의 광고에 포함
 - 허위광고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를 예방

- 자산운용대상의 확대 (2000/1/21 개정, 4/1 시행)
 -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대상에 선물거래법상 선물거래를 추가

-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2000/1/21 개정, 4/1 시행)
 - 일정 사안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 증권투자회사가 정관을 변경하여 주식의 매수를 제한하는 경우

- 증권투자회사의 존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개정안]

- 증권투자회사의 자산운용방법의 다양화
 - 증권투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대여 허용
- 증권투자회사의 주식배당한도 확대
 - 이익전액을 주식으로 배당 허용
- M&A 목적으로 설립되는 사모 증권투자회사의 의결권행사 자유화
 - 현재 증권투자회사는 계열관계에 있거나 계열회사로 편입되는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는 중립적 의결권행사만 허용

8. 증권투자회사법 시행령

- 증권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 하향조정 (2000/8/5 개정·시행)
 - 8억원 → 4억원
 - 증권투자회사의 투자등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최저 순자산액의 하향조정 (2000/8/5 개정 · 시행)
 - 유지해야 하는 순자산액을 인하
 - 4억원 → 2억원

- 국채 · 통안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투자한도 폐지 (2000/8/5 개정 · 시행)
 - 자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위험자산인 국채 · 통안증권에 대한 동일종목 취득한도를 폐지
 - 자산총액 30% 또는 10% → 100%

-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 확대 (2000/10/23 개정 · 시행)
 - 인수합병을 위한 자금조달목적으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에 대한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30%
 - 유가증권시장에서 시가총액비중이 10%를 넘는 대형주식에 대한 증권투자회사 자산의 동일종목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10% → 시가총액비중 수준

- 자산운용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필요적 기재사항 (2000/8/5 개정 · 시행)
 - 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영위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 증권투자회사 주식의 판매권유광고 규제 (2000/8/5 개정·시행)
 - 증권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과장광고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 광고내용에 원본손실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재

- 일반사무 수탁회사의 등록요건 (2000/8/5 개정·시행)
 - 자본금 20억 이상
 - 신탁재산 등의 계산에 관한 전문인력 3인 이상 보유
 - 독립된 전산설비 및 물적시설 보유 등

- 자산운용회사 준법감시인의 선임자격 (2000/8/5 개정·시행)
 - 금융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당해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

9. 증권투자회사법 시행규칙

- 채권가치평가의 산정기준 확대 (2000/8/11 개정·시행)
 - 채권의 가치평가에 증권업협회의 최종호가수익률 이외에 금감원장이 채권가격평가기관으로 지정하는 자가 제공하는 채권의 가격정보도 고려 가능

10. 선물거래법

- 선물거래업 진입기준 투명성 강화 (2000/1/21 개정, 4/1 시행)
 - 선물업의 허가기준을 구체화
 - 자본금 : 30억원 이상
 - 선물업 허가의 공고
 - 금감위가 선물업을 허가한 때에는 관보에 공고한 후 컴퓨터통신 등으로 일반인에게 공시

- 선물거래소의 임원자격 제한 (2000/1/21 개정, 4/1 시행)
 - 금융관련법률에 의해 영업의 허가·인가가 취소된 경우, 당해 회사의 임직원이었다는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선물거래소의 임원이 될 수 없음.

- 시세조종행위의 금지 (2000/1/21 개정, 4/1 시행)
 -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선물거래의 대상품목인 일반상품이나 금융상품의 시세를 고정·변동시키는 행위를 금지
 - 위반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또는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벌금

-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의무화 (2000/1/21 개정, 4/1 시행)
 - 선물업자는 건전한 자산운용과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의무적으로 작성

11. 선물거래법 시행령

- 선물업 허가의 세부요건 명시 (2000/7/10 개정·시행)
 - 전문인력 3인 이상 확보
 - 선물위탁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시설 보유
 - 주요출자자는 자기자본이 출자금액의 3배 이상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등

- 선물업자의 자산운용 및 경영건전성 유지의무 (2000/7/10 개정·시행)
 - 자기자본규제비율을 100% 이상으로서 금감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유지
 - 주요출자자에 대한 금전대여 및 신용공여 금지

- 선물업자의 책임준비금 적립 (2000/7/10 개정·시행)
 - 회계연도마다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
 - 단, 처분가능이익잉여금이 수탁수수료의 0.1%를 초과하면 수탁수수료의 0.1%에 해당하는 금액
 - 선물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한 위탁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

- 주가지수 선물거래에 대한 선물거래법 적용일의 지정 (2000/12/29 개정·시행)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권 및 그 주권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상장주식 선물거래)

- 2004년 1월 1일
- 기타 주권 및 그 주권의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거래 (코스닥주식 선물거래)
- 2000년 12월 29일

12. 은행법

- 은행의 지배구조 개선 (2000/1/21 개정 · 시행)
 - 감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
 - 총위원의 2/3 이상을 사외이사로 선임
 -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의 대폭 완화

- 감독의 투명성 강화 (2000/1/21 개정, 4/22 시행)
 -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감위가 정하던 은행에 대한 경영지도기준을 대통령령으로 규정
 - BIS자기자본비율 등을 법령에 직접 규정

- 은행경영의 자율성 제고 (2000/1/21 개정, 4/22 시행)
 - 은행의 정관변경 및 자본감소
 - 금감위 인가사항 → 금감위 신고사항

13. 은행법 시행령

- 대형은행의 범위 (2000/6/23 개정·시행)
 - 대형은행의 범위를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은행으로 규정
 - 대형 은행에 대해서는 일반은행의 1/2 수준으로 완화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이 적용됨.

- 준법감시인의 임면 (2000/6/23 개정·시행)
 - 준법감시인은 이사회에서 임면하고, 금감위에 통보

- 은행의 내부통제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2000/6/23 개정·시행)
 - 업무분장 및 조직구조에 관한 사항, 자산운용 또는 업무영위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임직원이 업무수행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등

- 은행경영의 건전성 확보 (2000/6/23 개정·시행)
 - 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경영지도기준에 다음 사항을 포함
 - 신용위험에 대응하는 자기자본의 보유기준
 - 자산의 건전성분류기준
 - 유동성부채에 대한 유동성자산의 보유기준 등

1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합병 촉진 (2000/1/21 개정·시행)
 - 합병후의 금융기관이 합병전 금융기관이 행하던 업무를 법령에 의해 할 수 없게 된 경우,
 - 금감위의 인가를 받으면 일정기간 계속 영위 가능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자금지원방식의 다양화 (2000/1/21 개정·시행)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등의 자금지원방법을 확대
 - 출자 → 출자 및 유가증권매입

- 지원자금 회수의 효율성 제고 (2000/1/21 개정·시행)
 - 영업이 전부 정지되거나 계약이전이 결정된 부실금융기관의 관리인으로 예금보험공사의 임직원을 선임 가능
 - 해산·파산되는 금융기관의 최대채권자가 예금보험공사인 경우, 동공사의 임직원을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 가능

15.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확대 (2000/6/7 개정·시행)
 - 선물거래법에 의한 「선물업자」 및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를 동법의 적용대상에 추가

- 금융기관간의 합병촉진을 위한 지원 (2000/6/7 개정·시행)
 - 금융기관간 합병을 촉진하기 위하여 합병으로 신설되는 금융기관에 대해,
 - 예금보험기금에 의한 자금지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한 유가증권의 매입, 국유재산의 현물출자 등의 자금지원 가능

-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시 영위가능한 업무의 구체화 (2000/6/7 개정·시행)
 - 이종 금융기관간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금융기관이 소멸하는 금융기관의 업무중에서 추가로 영위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화
 - 은행과 종금사가 합병하여 은행이 되는 경우, 증권회사와 종금사가 합병하여 증권회사가 되는 경우 등

- 금감위의 부실관련 자료요청 대상 공공기관의 명시 (2000/6/7 개정·시행)
 - 금감위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책임을 규명·추궁하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명시
 -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어음교환소

16. 금융지주회사법

○ 금융지주회사의 허용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개념

- 주식(지분)의 소유를 통하여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

— 설립인가제 : 금감위의 인가

○ 금융지주회사의 업무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의 경영관리와 그 부수업무 만을 수행(순수 지주회사)

-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영위 불가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제도 도입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주식교환 및 주식이전에 의하여 자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는 금융지주회사(완전지주회사) 설립 가능

-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설립을 촉진하기 위함.

※ 주식교환 : 기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이전받고 신주를 교부하여 완전자회사로 편입

※ 주식이전 : 주주가 주식 전부를 신설되는 금융지주회사로 이전하고 금융지주회사가 발행하는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완전지주회사를 설립

- 금융지주회사의 중간지주회사 소유금지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원칙
 - 원칙적으로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없음.
 - 예외
 -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 밑에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둘 수 있음.

- 금융지주회사의 소유구조 및 지배구조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동일인 소유한도
 -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4%)로 제한
 - 금융업만을 영위하는 금융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외를 인정
 - 은행지주회사의 타은행주식의 소유한도
 - 은행지주회사는 은행법상 동일인 소유한도(4%)를 초과하여 다른 은행주식을 소유 가능
 - 강화된 지배구조 적용
 - 사외이사의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의 설치, 소수주주권 강화

- 내부거래 규제 (Fire-Wall 설치)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자회사의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출자금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출자 금지
 - 자회사의 다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제한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상호간 불량자산 거래금지

- 금융지주회사의 손자회사 소유금지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 밑에 손자회사를 둘 수 없음.
 - 자회사의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금융기관 등을 손자회사로 두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금융지주회사의 출자제한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함.

- 신용공여한도 설정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동일한 금융지주회사에 속하는 자회사 상호간의 신용공여는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못함.

- 금감위의 감독 (2000/10/23 제정, 11/24 시행)
 -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를 포괄하는 경영건전성 감독
 - 경영지도기준의 준수
 - 연결재무제표와 주요 경영상황의 공고의무화

17.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 금융지주회사 인가의 세부요건 (2000/12/20 제정·시행)
 - 사업계획이 지속적인 영업을 영위하기에 적합하고, 추정재무제표 및 수익전망이 사업계획에 비추어 타당할 것 등

- 중간지주회사 지배요건 (2000/12/20 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가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려면, 중간지주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여야 함.
 - 중간지주회사 밑에는 동일한 업종 또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회사만을 둘 수 있음.

- 은행지주회사 주식의 초과보유 승인요건 (2000/12/20 제정 · 시행)
 - 금융전업자는 은행지주회사의 의결권주식 10% 이상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 아닌 자기자금으로 취득

- 금융전업자의 인가요건 추가규정 (2000/12/20 제정 · 시행)
 - 금융지주회사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또는 충분한 자금력이 없는 자 등은 금융전업자의 인가를 받지 못함.

- 금융지주회사의 부수업무 범위 명시 (2000/12/20 제정 · 시행)
 -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업무
 - 자회사 등과의 공동상품 개발업무
 - * 금융지주회사는 기본업무인 자회사의 경영관리업무 이외에 추가로 부수업무의 영위도 가능

- 금융지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손자회사의 범위
(2000/12/20 제정 · 시행)
 - 자회사가 은행 또는 종금사인 경우

- 신용정보사, 신용카드사, 투자자문사, 신탁회사, 투신사, 선물회사, 자산운용회사
 - 자회사가 증권회사인 경우
 - 투신사, 투자자문사, 자산운용회사, 선물회사
- 금융지주회사의 자기자본을 초과한 자회사에 대한 출자허용
(2000/12/20 제정·시행)
- 부실금융기관인 자회사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경우, 및 금융지주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경우 등
 - 한도를 초과한 출자금은 2년 이내에 회수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금융전업자의 은행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한 행위제한 (2000/12/20 제정·시행)
- 대규모기업집단에서 제외된 날로부터 5년 동안, 과거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및 계열회사 발행 유가증권매입을 금지

18.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의 개념 (2000/10/23 제정·시행)
-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건전성을 제고하고 Workout기업에 대한 전문성 있는 경영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회사로 Mutual Fund 형태의 Paper Company

- 동법의 유효기간
 - 6년간 시행 (단, 유효기간 내 설립된 구조조정투자회사는 당해 회사정관상의 존립기간동안 동법의 적용을 받음)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 및 존립기간 (2000/10/23 제정·시행)
 - 자본금 5억원 이상의 상법상 주식회사로서 금감위에 등록
 - 본점이외의 영업소 설치금지
 - 직원 및 상근임원의 채용금지
 - 존립기간은 5년 이내, 연장시 1년 이내로 제한

- 자금차입 및 사채발행 한도 (2000/10/23 제정·시행)
 - 자금차입
 - 자기자본의 2배 이내
 - 사채(ABS 등)발행
 -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 이내

-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 확대 (2000/10/23 제정·시행)
 - 은행법·보험업법·종금사법 등에 규정된 투자한도를 초과하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주식소유를 허용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업무 (2000/10/23 제정·시행)
 - 업무
 - 금융기관이 보유한 Workout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매매

- 금융기관이 Workout기업에 대해 갖는 대출채권의 매매
- Workout 기업에 대한 자금대여, 지급보증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업무 수행 등
- 자산운용업무 등의 타회사 위탁
 - 자산운용업무 : 자산관리회사
 - 자산보관업무 :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영위 금융기관
 - 일반사무 : 채권금융기관

○ CRV 감독 (2000/10/23 제정·시행)

- 금감원장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대한 검사권을 보유
- 금감위는 검사결과에 따라 등록취소·업무정지권 등을 행사

1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시행령

○ 등록요건 중 자본금기준의 설정 (2000/10/31 제정·시행)

- 5억원 이상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추가업무 (2000/10/31 제정·시행)

-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투자

- 자산운용 (2000/10/31 제정·시행)
 -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구조조정대상기업이 발행한 유가증권의 때
때, 구조조정대상기업에 대한 대출 및 지급보증 등에 운용

- 자산운용업무를 위탁받는 자산관리회사의 등록요건 (2000/10/31 제정·
시행)
 - 자기자본금 : 20억원 이상
 - 자산운용 전문인력 : 4인 이상

20.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금감위 등록절차의 구체화 (2000/1/21 개정·시행)
 -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반환이나 유동화
자산에 대한 질권·저당권의 설정에 관하여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 유동화자산의 명세·양도방법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자산양
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

- 근저당권부채권의 확정절차 개선 (2000/1/21 개정·시행)
 - 양도·신탁하는 채권이 근저당권부채권인 경우,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추
가로 발생시키지 않고 채권을 양도·신탁하겠다는 의사를 통지
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 국민주택채권의 매입의무 면제 (2000/1/21 개정·시행)
 - 유동화자산을 양도·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
 - 자산유동화에 따른 비용 절감

2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자산보유자의 추가 지정 (2000/4/1 제정·시행)
 - 보유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자산유동화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큰 법인을 추가
 - 예금보험공사,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탁회사,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지방공기업

- 자산관리자의 추가 지정 (2000/4/1 제정·시행)
 - 자산관리자의 범위에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20인 이상의 관리인력을 갖추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을 추가
 - 자산관리자 : 유동화회사의 위탁을 받아 유동화자산의 관리업무를 수행

22.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 금감위 등록절차의 구체화 (2000/1/21 개정·시행)
 - 채권유동화회사가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주택저당채권의 양도·신탁·반환이나 주택저당채권에 대한 질권·저당권의 설정에 관하여 금감위에 등록하는 경우,
 - 주택저당채권의 명세·양도방법 등을 기재한 등록신청서와 자산양도에 관한 계약서를 제출

- 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주택저당채권의 확정절차 개선 (2000/1/21 개정·시행)
 - 양도하는 채권이 근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주택저당채권인 경우,
 -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에 대하여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주택저당채권을 추가로 발생시키지 않고 채권을 양도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면, 통지서를 발송한 때에 채권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 채무자가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

- 공탁의무·준비금적립의무의 적용면제 (2000/1/21 개정·시행)
 - 채권유동화회사가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하여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탁업법에 의한 공탁의무·준비금적립의무 등을 면제

23.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 시행령

○ 주택저당증권의 취득가격 결정 (2000/4/1 개정·시행)

- 채권유동화회사가 기발행 주택저당채권을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가격은,
 -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된 경우 : 시장거래가격
 -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 상장·등록되지 않은 경우 : 주택저당증권의 발행기초가 되는 저당채권의 총액을 주택저당증권의 총수로 나눈 가액

24. 예금자보호법

○ 공적자금 회수기능 강화 (2000/1/21 개정·시행)

- 예금보험공사는 자금을 지원한 부실금융기관에게 부실관련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당해 부실금융기관이 응하지 않으면, 동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 예금보험공사에게 관계중앙행정기관에 대한 부실관련자의 재산자료 요청권을 부여

○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방식 확대 (2000/1/21 개정·시행)

-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지원 방식을 확대하여 부실금융기관의 정리를 지원
 - 출자 → 출자 또는 유가증권매입

25.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 부실책임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요청 대상 공공기관의 명시
(2000/6/23 개정·시행)
 -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부실관련자의 재산에 관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추가적으로 명시
 - 정부투자기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어음교환소

-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의 차입근거 마련 (2000/6/23 개정·시행)
 - 예금보험공사가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예금보험료의 상향조정 (2000/8/5 개정·시행)
 - 예금보험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보금융기관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예금보험료를 종전의 2배 수준으로 인상
 - 증권회사의 연간보험료 = 예금 등의 연평균잔액 × 20/10,000

- 예금자보험금의 지급한도 상향조정 (2000/10/31 개정, 2001/1/1 시행)
 - 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인상
 - 2천만원 → 5천만원(2000. 1. 1부터)
 - 이자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결제성 예금은 2003년 말까지 예금전액을 지급

26.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보증한도 축소 (2000/2/14 개정·시행)
 -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전한 경영을 확보하기 위해, 출자법인 등에 대한 보증한도를 축소
 - 동 공사의 납입자본금 등을 합제한 금액의 500% → 300%

27. 상 법

[개정안]

- 발기인의 최소인원수 제한 폐지
 - 7인 → 3인 (95년 개정) → 1인 (2000년 개정안)

- 주식 교환 및 이전제도 도입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회사가 주식교환·이전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 모자회사관계의 인정기준 상향조정
 - 모자회사관계가 성립되는 지주비율요건을 변경
 - 40% → 50%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시 매수가액 산정절차 간소화
 - 회사와 매수청구한 주주간에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
 - 회계전문가의 산정을 거친 후,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
 - 곧바로 법원에 매수가액 결정을 청구

- 주총결의에 의한 주식소각 허용
 - 주가관리 등 재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이익배당한도 내에서 정기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 가능

- 주총결의사항의 확대
 - 회사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를 주총 특별결의사항에 포함
 - 회사경영의 중요사항에 대한 주주의 의결권을 강화

- 주주의 신주인수권 강화
 - 신주의 제3자배정은 정관에 의하도록 하되 신기술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제한

○ 이사회 활성화 도모

— 이사회 결의사항의 구체화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자산의 차입을 추가

— 이사의 회사업무에 대한 정보접근권 강화

- 이사는 대표이사로 하여금 다른 이어나 피용자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에 보고하도록 요구 가능

— 이사의 업무집행상황 보고의무 명시

- 이사는 업무집행상황을 3개월에 1회 이상 이사회에 보고

2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지주회사제도의 효율적 운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율요건 보완

- 지주회사 설립이전에 주권상장된 법인(협회등록법인 포함)의 경우 상장시점에 관계없이 자회사 지분율요건을 완화(50% → 30%)

— 30대집단 소속회사가 사업연도중 주식취득 등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출자총액제한규정 적용 유예기간 부여

— 벤처지주회사에 대하여는 행위제한의무 중 자회사지분율 제한의 적용 제외

-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수의 벤처기업을 자회사로 지배하는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을 지원

○ 조사권의 강화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행사기한(2001. 2. 4 만료) 연장
-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의 적용대상 확대
 - 30대 기업집단의 내부거래조사 → 위장계열사의 조사도 추가
- 자료미제출, 조사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2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출자총액제한의 예외 인정범위 (2000/4/1 개정, 2001/4/1 시행)

- 대규모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한도를 초과하여 타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사유를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설립되는 통합법인에 대한 출자 등으로 구체화

○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금지의 예외인정 (2000/4/1 개정·시행)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을 하는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지급보증을 허용

○ 공시대상 내부거래 (2000/4/1 개정·시행)

- 이사회결의를 거치고 거래의 목적·대상·금액을 공시하여야 하는 대상을, 10대 대규모기업집단 계열회사의 거래금액이 자본금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행위로 규정

30.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2000/1/21 개정, 4/1 시행)
 - 회계처리기준 제정업무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금감위는 민간전문기관이 작성한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수정요구권 보유

- 민간 전문기관의 재정 지원 (2000/1/21 개정, 4/1 시행)
 - 금감원은 분담금으로 회계처리기준 제정기관을 지원 가능
 - 금감원이 징수하는 분담금의 5% 이내

[개정안]

- 협회등록법인의 감사인 업무수행의 독립성 확보
 -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도,
 - 감사인이 선정되는 경우 동일 감사인으로 3개년도 계속감사를 의무화
 - 감사인중 주책임자인 이사는 연속하는 4개 사업년도 동일기업에 대한 감사를 금지

- 감사인 선임의 투명성 제고
 - 감사인은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선임하고 주주총회에 사후보고
 - 계약기간 중 감사인 변경시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 요구

-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 강화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사실 및 조치내용의 공시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 책임자에 대한 과징금제도 도입
 - 금감위가 5억원 이내에서 과징금 부과

3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대상 범위확대 (2000/7/27 개정·시행)
 - 연결재무제표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반영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변경
 - 지분율 기준 → 실질적인 지배력 기준
 - 타회사에 대한 주식소유지분이 적은 경우에도 타회사 임원의 임면 등 타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도 작성대상에 포함
 - * 연결재무제표 : 지배·종속관계에 있는 기업 전체의 재무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작성

○ 상장절차 간소화를 위한 지정감사인제도 적용면제 (2000/7/27 개정 ·

시행)

— 종전에는 상장에정기업은 증선위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

→ 증선위가 미리 지정하는 회계법인으로부터 상장직전연도에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회계감사를 면제

○ 회계처리기준의 제·개정에 관한 업무위탁 (2000/7/27 개정 · 시행)

— 금감위의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업무를 한국회계연구원에 위탁

— 금융감독원은 분담금의 4%를 지원

32. 회사정리법

[개정안]

○ 회사정리계획안 사전제출제도 도입

— 회사부채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정리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정리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개월로 단축하고 그 정리계획안에 동의한 채권자는 정리계획안 결의시 가결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 절차지연으로 인한 경제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워크아웃에 실패한 기업 등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

33. 화의법

- 파산절차 이행의 신속화 (2000/1/12 개정, 4/13 시행)
 - 화의절차가 실패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되는 경우,
 - 처음부터 절차 다시 시작
 - 화의절차·화의불인가·화의취소로 파산선고되면 채권신고 등 이미 진행된 절차는 파산절차에서도 효력 존속

- 주식회사의 화의신청에 대한 기각사유 확대 (2000/1/12 개정, 4/13 시행)
 - 고의적인 부실경영
 -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사 등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이 발생한 경우도 추가

- 화의개시 결정기간의 단축 (2000/1/12 개정, 4/13 시행)
 - 3개월 → 1개월

- 화의조건의 변경사유 확대 (2000/1/12 개정, 4/13 시행)
 - 화의개시결정 후에는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화의조건을 변경
 -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내용이더라도 이행가능성이 높은 화의안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의조건의 변경이 가능

○ 화의절차의 폐지 (2000/1/12 개정, 4/13 시행)

— 화의개시결정 후라도 다음 경우에는 화의절차를 폐지

- 채무자가 화의조건을 이행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경영진의 부실경영이나 자산·부채규모의 과다 등의 사실이 밝혀진 경우

34. 파산법

○ 재단채권의 범위 확대 (2000/1/12 개정, 4/13 시행)

—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의 범위에 피용자의 급료·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추가

- 근로자의 임금 등을 우선적으로 지급

○ 파산관재인인 부인권 행사범위 확대 (2000/1/12 개정, 4/13 시행)

—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의 변제행위를 부인할 수 있는 기간을 확대

-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전 30일 이내의 변제행위
→ " 60일 이내의 변제행위

○ 부인권 행사의 강화 (2000/1/12 개정, 4/13 시행)

— 파산관재인이 부인권행사를 게을리 하는 경우,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령

35. 외국환거래법

- 자본거래허가제의 적용시한 연장 (2000/10/23 개정, 12/31 시행)
 - 2005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
 - 경제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를 추진

3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비상장·비등록 벤처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격 및 시가산정 방법 변경 (2000/10/23 개정·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상의 행사가격 및 산정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의 행사가격 및 산정기준

37.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의 일괄납부 허용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납세의무자의 각 사업장별 납부
 - 납세의무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납부 가능

○ 비상장주권의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단일화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양도가액과 평가액 중 높은 가액

→ 양도가액 (다만, 양도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평가액)

○ 증권거래세의 환급절차 간소화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증권예탁원이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아, 주권의 양도자에게 환급

→ 증권예탁원이 관할세무서에 납부할 세액에서 환급세액을 조정하여 환급

38.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 상장·협회주권의 장외거래시 양도가액 평가방법 개선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최종시세가액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격으로 함.

→ 증권거래소·협회가 공표하는 매매거래 기준가액을 양도가격으로 함.

○ 영세율제도의 폐지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양도가액이 액면가액 이하, 또는 모집·매출가액 이하인 주권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던 영의 탄력세율제도를 2001년 7월 1일 폐지

39. 조세특례제한법

-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 (2000/12/29 개정 · 시행)
 - 근로자가 2001. 12. 31까지 근로자주식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5%의 세액공제 및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 자기주식처분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인정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상장법인·코스닥등록법인이 2002. 12. 31 이전에 주가안정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의 30% 내에서 손금산입을 인정

- 상장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 인정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상장중소기업도 코스닥등록중소기업처럼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하도록 허용
 - 손금산입한도는 당해 연도 소득금액의 30%
 - * 손금산입한도를 기존 50%에서 일부 축소

- 근로자우대저축에 대한 비과세 시한 연장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2000년 12월말 → 2002년 12월말까지 2년간 연장

○ 장기보유 우리사주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2년 이상 장기보유시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비과세

4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Stock Option에 대한 세제혜택부여 범위 축소 (2000/1/10 개정, 4/13 시행)

— 상장법인 등의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범위를 축소

- 주식매수가액 연간 5천만원 → 3천만원

○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 변경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종업원수, 자본금, 매출액 기준중 1개 이상 충족하는 경우로 변경

- 종전에는 종업원수와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여부를 판정

— 종업원수 1천명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서 제외

○ 지주회사관련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인정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법인이 주식을 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이연을 인정
 -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당해 사업연도에 그 상당액을 손금산입하고, 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산입

○ 연금저축의 범위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연간 240만원 한도내에서 1년간 불입한 저축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연금저축의 범위를 규정
 - 가입대상 : 18세 이상
 - 저축불입기간 : 10년 이상
 - 저축금액 : 월 100만원 이내

41. 법인세법 시행령

○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2000/12/29 개정 · 시행)

- 금융기관의 경우, 금감위가 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립한 대손충당금을 손비로 인정

-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할요건 완화 (2000/12/29 개정, 2001/1/1 시행)

- 사업부문간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채무자의 변경이 불가능한 부채 등 현실적으로 분할하기 어려운 자산·부채를 제외하고 분할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

42. 금융기관의 책임경영과 금융행정의 투명성보장에 관한 규정 <국무총리 훈령>

-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배제 (2000/11/13 발령·시행)
 - 금융감독기관은, 법령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소정절차에 의하여 협조·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융기관의 경영에 대한 부당한 간섭 금지
 - 금융감독기관 : 재정경제부, 금감위, 금감원, 예금보험공사 등
- 부당청탁의 신고 및 시정조치 (2000/11/13 발령·시행)
 - 금융기관의 임직원은 부당한 청탁 사실을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에 신고 가능
 - 재경부장관 또는 금감위는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시정조치
 - 신고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방지 조치의무

- 문서 등에 의한 협조·지원 요청 (2000/11/13 발령·시행)
 - 금융감독기관이 금융시장의 안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에 협조 또는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문서나 회의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야 함.

- 이사회 중심의 자율적 운영 보장 (2000/11/13 발령·시행)
 - 재경부장관 및 예금보험공사는 출자한 금융기관이 이사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장
 - 단,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는 제외
 - 보유하고 있는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은 조기매각

- 투명하고 명백한 금융기관감독 (2000/11/13 발령·시행)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검사는 투명하고 명백한 방법과 절차에 의거
 - 시장기능의 활성화 및 금융수요자의 권익보호

- 불합리한 규제의 지속적 정비 (2000/11/13 발령·시행)
 - 금융감독기관으로 하여금 금융기관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토록 함.

II. 금융감독위원회 규정

1.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 신상품의 도입 및 공모주식 우선배정

— New High Yield Fund 및 Hybrid Fund의 도입 및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2000/5/3 개정, 6/5 시행)

- 투신사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한 구조조정의 원활화와 채권시가 평가제도의 조기정착 및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유도
- 우선배정 대상 : 투신, 은행신탁, 증권투자회사가 2000. 5. 중순부터 발매하는 신상품

— New High Yield Fund D형의 추가 도입 및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2000/5/29 개정, 6/5 시행)

- 중소기업의 자금경색을 완화하고, 투자신탁등 기관투자자의 환매자금 마련을 위한 매도물량을 축소
- 증권투자신탁 및 Mutual Fund에 국한하여 허용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비율>

| 구 분 | | 기 존 | 5/3 개정 | 5/29 개정 |
|-------------------------------|--------|------|--------|---------|
| 기업공개 | 기관투자자 | 45% | 50% | 60% |
| | (하이일드) | (10) | (10) | (10) |
| | (CBO) | (10) | (10) | (10) |
| | (신상품) | (신설) | (10) | (20) |
| | (기타기관) | (25) | (20) | (20) |
| | 일반청약자 | 35 | 30 | 20 |
| | 우리사주조합 | 20 | 20 | 20 |
| 협회등록공모 | 기관투자자 | 50 | 55 | 65 |
| | (하이일드) | (10) | (10) | (10) |
| | (CBO) | (20) | (20) | (20) |
| | (신상품) | (신설) | (20) | (20) |
| | (기타기관) | (20) | (15) | (15) |
| | 일반청약자 | 50 | 45 | 35 |
| 상장법인 및 협회등록 법인의 공모증자 | 기관투자자 | 50 | 70 | 80 |
| | (하이일드) | (30) | (10) | (30) |
| | (CBO) | (20) | (10) | (20) |
| | (신상품) | (신설) | (10) | (30) |
| | 일반청약자 | 20 | 30 | 20 |

- 고수익신상품 등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방식 변경 (2000/9/29 개정)
 - 비과세 고수익신상품에 대하여 공모주를 배정하고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에 대한 공모주식 배정방식을 변경
 - 기존의 상품별 공모주 배정방식을 폐지하고 고수익증권투자신탁 등을 통합하여 공모주 배정

<공모주식의 우선배정 비율>

| 구 분 | | 기 존 | 개 정 |
|--------|---------|------|--------|
| 기업공개 | 기관투자자 | 60 % | 60 % |
| | (하이일드) | (10) | } (40) |
| | (CBO) | (10) | |
| | (뉴하이일드) | (20) | |
| | (신상품) | (신설) | } (20) |
| | (기타기관) | (20) | |
| | 일반청약자 | 20 | 20 |
| 우리사주조합 | 20 | 20 | |
| 협회등록공모 | 기관투자자 | 65 | 65 |
| | (하이일드) | (10) | } (50) |
| | (CBO) | (20) | |
| | (뉴하이일드) | (20) | |
| | (신상품) | (신설) | } (15) |
| | (기타기관) | (15) | |
| 일반청약자 | 35 | 35 | |
| 실권주공모 | 기관투자자 | 80 | 60 |
| | (하이일드) | (30) | } (60) |
| | (CBO) | (20) | |
| | (뉴하이일드) | (30) | |
| | (신상품) | (신설) | } (40) |
| 일반청약자 | 20 | | |

2.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제도의 구체화 (2000/9/29 개정)

-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이 면제되는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대해서도 투자판단에 필요한 기업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공시의무를 구체화

- 발행인은 소액공모 개시일의 3일 전까지 다음 서류를 금감위에 제출·공시
 - * 최근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한 회사)
 - * 최근월말 기준 감사보고서 (설립후 1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아니한 회사)

- 간이사업설명서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절차 마련 (2000/9/29 개정)
 - 모집·매출을 위한 청약권유시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발췌·요약한 간이사업설명서를 사용 가능

- 코스닥등록법인의 공시의무 등을 상장법인과 완전 동일화 (2000/9/29 개정)
 - 상장법인에 적용하는 주요경영사항신고제도 및 재무관리기준을 코스닥등록법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등 총 71개 항목에 대하여 사유발생 익일까지 금감위에 신고·공시

3.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 자기주식 취득실패시의 재취득 금지기간 단축 (2000/4/28 개정, 5/2 시행)
 - 자기주식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취득에 실패한 경우, 재취득

금지기간을 단축

- 3개월 → 1개월

* 추가급등락시 시장안정화에 기여

○ 자기주식취득을 위한 주문가격폭의 확대 (2000/4/28 개정, 5/2 시행)

— 자기주식 취득시 장개시전 시초가결정에 참여하는 주문가격을 확대

- 전일종가~전일종가보다 2호가 가격단위 높은 가격

→ 전일종가~전일종가보다 5% 높은 가격

* 추가상승시에도 자기주식취득이 가능하고, 자기주식 매수주문의 신속한 체결이 가능

○ 자기주식 취득한도의 산정방법 개선 (2000/4/28 개정, 5/2 시행)

— 기업회계기준에서 신탁계약(자사주펀드)을 통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에 대한 회계처리방식을 변경함에 따라, 이를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방식에 반영

- 자기주식 취득한도 산정시 신탁계약 금액 전체를 차감

→ 신탁계약금액중 자기주식 취득분만큼 자기자본 산정시 이미 차감되어 반영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취득한도 산정시 전체 계약금액중 차감된 부분을 제외한 금액만 차감

4.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제도 개선 (2000/9/29 개정)
 -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의 합병시, 협회등록법인이 코스닥시장가격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하는 때에는 외부평가의무를 면제
 - 종전에는 협회등록법인이라도 합병비율의 적정성에 관한 외부평가를 받도록 의무화

- 정부승인 등에 의한 합병의 공정성 제고 (2000/9/29 개정)
 - 정부의 승인·법률의 규정 등에 의한 합병시에도, 합병당사자가 계열회사이고, ①상장·협회등록법인으로서 시장가격에 의한 합병비율을 산정하지 않거나, ②비상장·비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의무화
 - 기존에는 정부의 승인 등에 의한 합병시, 합병관련요건의 적용을 배제

5.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 주주총회 참고서류 기재사항의 범위확대 (2000/9/29 개정)
 - 이사·감사선임시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주주총회 참고서류에 기재하여야 할 공시사항에 최대주주와의 관계 및 회사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토록 추가

6.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 전자서명제도의 도입 (2000/2/25 개정, 3/1시행)
 - 제출인의 신원확인 및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전자서명제도를 도입

- 참조방식의 확대 적용 (2000/2/25 개정, 3/1시행)
 - 전자문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나 첨부서류가 기재된 전자문서와 동일한 경우 이를 참조하도록 하는 참조방식의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
 - 유가증권신고서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보고서 등으로 확대

- 제출인이 아닌 문서작성자의 전자서명 (2000/2/25 개정, 3/1시행)
 - 제출문서의 첨부서류 중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서류(감사보고서,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는 작성자가 전자서명을 한 후 제출인에게 제공토록 함.

- 관계기관간 1회동시제출(One Stop Filing)체제 구축 (2000/2/25 개정, 3/1시행)
 - 민원인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고 전자공시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독원장은 제출된 공시서류를 거래소·증권업협회(코스닥)·공인회계사회에 전송 가능

- 동 공시서류가 관계기관에 전송·도달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

○ 전자공시시스템 장애발생시의 대체방안 보완 (2000/2/25 개정, 3/1 시행)

- 신고서 등을 서면·FAX 등의 방법으로 제출 가능

○ 전자공시시스템의 위탁운영근거 마련 (2000/2/25 개정, 3/1시행)

- 전자공시시스템의 운영을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제도의 시행일 (2000/2/25 개정, 3/1시행)

-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수시공시 : 4/1 시행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와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에 대해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 서면문서의 제출면제 : 7/1 시행

※ 전자공시제도

- 상장법인 등이 기업공시서류를 제출·공시함에 있어 인터넷을 통해 금감위에 직접 On-line으로 전송·제출하고, 금감위는 공시자료를 전산매체를 통하여 증권거래소등 관계기관과 일반투자자에게 자동전송함으로써 공시의 신뢰성과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종합적인 기업공시시스템

○ 사업보고서 등의 전자공시 의무화 (2000/2/25 개정, 7/1 시행)

-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감사종료보고서(3종)와 상장·협회등록법인의 수시공시사항(177종) 등 총 180종을 전자문서(전자공시)로만 제출
 - 지금까지는 278종의 공시서류를 서면과 전자문서(전자공시)로 병행 제출
 - 2001. 3. 1부터는 공시서류 전체를 전자문서로만 제출토록 할 예정

7.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관련 규정 통합 (2000/12/22 제정)

-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관련 규정(10개) 및 시행세칙(2개)을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동 「시행세칙」으로 통합·정비
- 폐지규정
 - 등록법인관리규정
 - 유가증권발행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외국법인등의 유가증권발행 등에 관한 규정
 -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정
 - 상장법인 등의 재무관리규정
 - 상장법인 등의 주요경영사항신고 및 사업보고서에 관한 규정
 - 상장법인 등의 합병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상장법인 등의 자기주식취득 및 처분신고에 관한 규정
- 기업지배권변동의 공시 등에 관한 규정
-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유가증권 인수업무 감독사항의 증권업협회 이관 (2000/12/22 제정)

— 이관대상업무

- 간사회사가 발행회사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발행회사의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의 인수 제한
- 기업공개, 협회등록공모 및 협회등록법인의 공모증자를 위한 주식 또는 무보증사채를 인수하는 경우 간사회사의 유가증권 분석의무
- 특별법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인·허가 등을 받아 설립 중에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한 모집설립주식의 인수제한
- 기업공개 또는 협회등록공모 주관사회사의 발행회사 주식 부실 분석에 대한 제재
- 인수대상 무보증사채의 복수신용평가 의무화
- 공모주식의 청약그룹별 배정기준 등

○ 상장법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2000/12/22 제정)

— 무보증사채의 효력발생기간 단축

- 7일 → 5일

○ 상장법인 등에 대한 규제완화 (2000/12/22 제정)

- 주식거래상황 및 주식분포상황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협회등록법인이 주주배정증자 등 직접공모를 하고자 하는 경우 공모가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무 면제
- 합병, 영업양수도 승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시 통지·공고문안의 사전제출제도 폐지

○ 지주회사의 상장에 대비한 공시제도 보완 (2000/12/22 제정)

-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주요한 경영사항(수시공시사항)을 공시
 - 지주회사의 공시대상 자회사의 범위
 - 지주회사가 소유한 개별 자회사의 주식가액이 지주회사 자산총액의 5% 이상인 자회사
- (다만, 자회사의 해산사유발생, 부도발생, 회사정리절차 개시의 경우에는 5% 미만이라도 공시)

○ 전자공시의 조기 완전시행 (2000/12/22 제정)

- 공시의무자의 공시서류 제출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전자공시의 완전시행시기를 앞당김.
 - 2001. 3. 1 → 2001. 1. 1

8.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증권업감독규정」으로 통합)

- 경영개선계획서의 제출기한 강화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증권회사의 경영개선계획서 제출기한을 변경
 - 2월 이내 → 2월 이내에서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
 - 금융구조조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적기시정조치제도의 정비

- 경영개선계획의 승인을 위한 경영진단의 실시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경영개선권고·요구·명령을 받은 증권회사가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 가능
 - 감독원장(권고), 금감위(요구·명령)는 개선계획서의 제출일로부터 1월 이내에 승인여부 결정

9. 전환증권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규정 등의 적용유예 등에 관한 규정

(「증권업감독규정」으로 통합)

- 전환증권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기간 연장 (2000/2/25 개정, 2/26 시행)
 - 적기시정조치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

- 최장 2년 6개월 → 최장 3년 6개월
- 금감위가 인정하는 전환증권회사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서 적용유예기간을 추가로 연장가능
- 금융구조조정을 지원

| 구 분 | 현 행 | 개 정 | 비 고 |
|------|-----|--------------------------------|------------------|
| 검영기간 | 6월 | 6월 | 현행과 동일 |
| 유예기간 | 2년 | 3년 (금감위 승인시 2년 이내 추가 연장) | 1년 연장 (단서 신설) |

10.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증권업감독규정」으로 통합)

- IDB (Inter-Dealer Broker)의 업무방법 (2000/4/28 개정, 5/2 시행)
 - 원활한 채권딜러간 중개업무의 수행을 위해, 자기계정을 통한 매수 및 매도의 방법으로 매매를 중개할 수 있도록 허용
- IDB의 업무규정 제정 및 금감원장의 승인 (2000/4/28 개정, 5/2 시행)
 - IDB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금감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중개신청의 방법
 - 매매체결의 원칙 및 방법
 - 매매체결내용의 통지방법

- 매매계약의 이행방법 등

○ 비밀누설 금지 (2000/4/28 개정, 5/2 시행)

- 자기매매업자의 동의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당해 업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또는 누설 금지

○ 장외거래 중개수수료 자율화 (2000/4/28 개정, 5/2 시행)

- 증권회사의 고객에 대한 장외거래중개수수료율 설정·변경시 금감원장에 대한 사전 신고의무 폐지 → 자율화
- 중개회사의 증권회사에 대한 중개수수료율(2/100,000 범위내) 조항 폐지 → 자율화

○ 채권장외거래 결제일의 다양화 (2000/5/26 개정, 5/29 시행)

-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
 - 15 영업일 이내에서 매매당사자가 협의
 - 채권딜러가 금리전망에 따라 공매도를 하여 금리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게 되며, 공매도와 연계된 RP 및 채권대차거래가 활성화되므로 채권딜러의 자금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도입근거 마련 (2000/5/26 개정, 5/29 시행)

- 채권자기매매업자의 업무방법서가 금감원장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당해 업자를 채권전문딜러로 지정 가능
 -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 월평균 200억원 이상의 채권을 보유하고, 보유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수행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혜택부여) 가능

- 은행등 증권업 겸영기관 : 채권자기매매업 허용
- 증권회사 : 금리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허용
- 증금을 통한 시장조성 자금 및 채권 지원

11. 외국인의 유가증권 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증권업감독규정」으로 통합)

○ 공공적 법인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한도 확대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종목별 외국인 전체취득한도를 확대

- 발행주식 총수의 30% → 40%

* 현재 공공적 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은 한국전력공사 1개사 뿐임.

○ 유통주식예탁증서의 발행절차 간소화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해외예탁기관이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 원주발행회사의 사전동의 필요

→ 이미 발행된 주식예탁증서(유통주식예탁증서 포함)의 원주 전환수량 이내에서 유통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주발행회사의 동의를 생략

12. 증권업 감독규정

○ 증권회사 감독관련규정 통합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증권산업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규정수요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증권회사 감독관련 20개 규정을 통합하는 등 법규체계를 정비

— 폐지규정

-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 감독규정
- 전환증권회사 등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규정 등의 적용유예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보고·승인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외국에서의 증권업영위에 관한 규정
- 외국증권회사의 국내에서의 증권업영위 등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위탁매매업무 등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업무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약관운영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신용공여에 관한 규정
- 유가증권의 장외거래에 관한 규정
- 환매조건부채권매매업무규정
- 증권회사의 어음매매 및 중개업무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증권저축업무규정
- 외화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 증권회사의 증권업무수업무의 영위에 관한 규정
- 증권예탁원명의 예탁주식의 의결권 행사규정

- 외국인의 유가증권매매거래 등에 관한 규정
- 무보증사채신용평가전문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기준
- 증권산업인허가지침

○ 인허가제도의 개선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감위의 증권업 허가시 주요출자자요건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 주요출자자가 금융관련법령·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증권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될 수 없음.
- 금융기관이 증권업자의 주요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은행),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보험업자)

— 증권회사간 합병시 인가요건 완화

- 증권회사의 합병시 인가요건으로 재무건전성기준(영업용순자본비율 150%)을 유지
 - 정부의 권고·요구 등에 의하거나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증권회사간에 합병하는 경우에는 동 요건을 달리 적용

○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적기시정조치제도 정비

- 적기시정조치 발동기준시점(반기말 및 결산기말) 제한의 폐지
- 경영개선명령 발동요건 변경 및 조치내용 추가
 - * 요건 : 자산부채비율 100% 미만 → 금산법상 부실금융기관
 - * 조치내용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의 편입을 추가

- 증권회사 재무행위제한의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 범위 확대
 - 계열관계에 있는 은행과 보험회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
 - 계열 보험회사 및 적기시정조치 이행중인 계열은행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
- 적기시정조치 유예제도의 합리적 조정
 -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되는 대상 증권회사를 투자신탁회사에서 증권회사로 전환된 경우로 제한

○ 고객예탁재산 보호의 강화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공모주 청약증거금에 대한 보호 강화
 - 증권회사의 부도에 대비하여, 공모주 청약증거금 예치시 예치기관(은행·증권)과 상계금지특약을 체결
- 부도발생 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분리보관의무 강화
 - 부도후 발생하는 고객예탁금을 부도 발생전 고객예탁금과 구분·관리
- 부실증권회사의 고객예탁금 전액예치 의무화 (2001/4/1 시행)
 -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하는 모든 증권회사는 모든 고객예탁금을 별도 예치
 - * 현재는 매매결제대금 등 필요한 자금을 별도예치에서 제외

○ 증권업협회의 자율규제기능 제고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증권회사의 신상품개발 촉진 및 증권업협회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약관심사업무 및 증권저축감독업무를 증권업협회에 대폭 위임

- 예탁증권 담보대출의 담보대상 유가증권 범위 확대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고객이 증권회사에 예탁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는 담보대상유가증권의 범위를 확대
 - 상장주식·채권 → 코스닥등록주식을 추가

- 은행의 RP업무 취급제한 완화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은행이 고객에게 지급하는 금리의 제한기간을 14일 이내로 단축
 - 2002년부터는 제한을 완전폐지

- 외화증권매매거래의 매매증거금을 자유화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매매거래금액의 100% → 폐지

13.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 투자신탁 상품분류체계 개편 (2000/5/12 개정, 6/1 시행)
 - 주식편입여부에 따라 주식형 및 공사채형 펀드로 분류하고 있는 현행 상품체계를 유가증권 종류별 투자비율에 따라 3종류로 개편
 - 상품특징의 명확화와 상품체계 통일로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선택과 상품정보의 효율적 이용 가능

| | |
|--------|---|
| 주식투자신탁 | · 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 |
| 채권투자신탁 | · 신탁자산총액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 (MMF포함) |
| 혼합투자신탁 | · 주식 및 채권투자신탁 이외의 투자신탁으로서 주식 및 채권 등 유가증권에 배분하여 투자 |

○ 시가평가제도 실시방안 확정 (2000/5/26 개정 · 시행)

| 구 분 | 유 형 | 기존 평가방법 | 2000.7.1이후 평가방법 |
|-----------------|---|---------|---------------------------|
| 장부가 평가 펀드 | - 98.11.14이전 설정펀드 · 적립식 이외의 투자 신탁 | · 장부가 | · 장부가 (7.1이후 수탁금지) |
| | · 적립식 투자신탁 | · 장부가 | · 장부가 (7.1이후 수탁분 시가평가) |
| | - MMF | · 장부가 | · 장부가 (신규수탁 허용) |
| 시가펀드 | - 98.11.15이후 설정펀드 | · 시 가 | · 시 가 |

○ 비상장채권 평가방법의 확대 (2000/6/9 개정 · 시행)

-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 채권가격의 적용 (2000/6/9 개정 · 시행)

- 2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채권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가 규정
 - 적용하는 평가방법은 일관성을 유지

○ 채권가격평가기관의 지정 (2000/6/9 개정 · 시행)

- 금감원장이 채권평가업무 수행능력 등을 감안하여 지정
- 지정기준
 - 채권평가 및 그와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
 - 자본금이 30억원 이상
 - 채권분석전문요원 3인 이상을 포함하여 상시근무하는 평가분석요원이 10명 이상
 - 채권평가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 합리적인 채권평가모형 보유
 -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금융기관은 출자액이 자본금의 10% 이하

○ MMF의 장부가와 시가와의 차이 발생시 조치 및 보고 의무화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MMF 신탁재산의 장부가와 시가의 차이로 신탁재산에 1% 이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당해 채권 등의 가격조정 또는 매각 등의 조치 후 금감위에 보고

- MMF 편입채권 등의 신용등급 하락시 조치 의무화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MMF 편입채권 등의 신용등급이 투자비적격등급(채권은 BB+이하, CP는 B+이하)으로 하락하는 경우,
 - 당해 채권 등을 하락된 신용등급에 의한 가격으로 조정하거나 신용등급 하락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처분

14.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세칙

- 금감원장의 승인없이 신고만으로 해지 가능한 투자신탁의 규모 상향조정 (2000/10/2 개정·시행)
 - 신고만으로 해지가 가능한 투자신탁원본액
 - 채권투자신탁 및 혼합투자신탁 : 50억좌 → 100억좌
 - 주식투자신탁 : 10억좌 → 50억좌
 - 펀드의 대형화를 유도하기 위함.

15. 증권투자신탁업 감독규정 시행절차

- MMF의 국채·통안증권 투자한도 상향 (2000/4/10 개정·시행)
 - MMF의 수탁고 증가시 (경과물)채권의 부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채 및 통안증권에 대한 투자한도를 상향조정
 - 30% → 50%

16. 증권투자회사 감독규정

- 비상장채권 평가방법의 확대 (2000/6/9 개정·시행)
 - 증권업협회가 공시하는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을 감안하여 평가하거나, 채권가격평가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평가
 - 민간기관이 제공하는 가격정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권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

- 채권가격의 적용 (2000/6/9 개정·시행)
 - 2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가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 채권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은 투신사 및 자산운용회사에 설치되어 있는 유가증권등 평가위원회가 규정
 - 적용하는 평가방법은 일관성을 유지

17. 선물업 감독규정

- 규정명칭의 변경 (2000/12/22 개정, 12/29 시행)
 - 「선물거래업자 감독규정」 → 「선물업 감독규정」

- 영업용순자본비율제도 개선 (2000/12/22 개정, 12/29 시행)
 - 영업용순자본비율산정시 적용되는 총위험액중 기초위험액 산정방식을 완화

- 연간경상지출비용의 25%와 위탁자예탁자산의 4%중 큰 금액
→ " 위탁자예탁자산의 2% "
- 위험액 과다산정으로 영업활동에 애로를 겪었던 선물회사들의
영업력 신장이 기대됨.

- 적기시정조치제도 정비 (2000/12/22 개정, 12/29 시행)
 - 적기시정조치 발동요건상 기준시점(반기·결산기말) 제한 폐지 및
경영개선요구 조치내용 추가

18.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 ABS발행 가능한 일반법인의 범위 확대 (2000/6/23 개정, 6/24 시행)
 -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요건(신용평가
등급 BBB- 이상) 폐지
 - 모든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은 자산유동화(ABS발행) 가능
 - 금감위 등록법인인 비상장·비등록법인의 경우에는 투자적격요건을
갖출 경우 ABS발행을 허용
- 규정명칭의 변경 (2000/12/22 개정, 12/29 시행)
 - 「자산유동화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자산유동화업무 감독규정」

19.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 위반행위 공표요구 대상자 (2000/4/6 개정, 5/1 시행)
 -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감위·증선위로부터 조치를 받게 되는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 공표방법 (2000/4/6 개정, 5/1 시행)
 - 공표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정관에 정한 중앙일간지에 게재
 - 시장공시를 병과

- 공표이행 확보방법 (2000/4/6 개정, 5/1 시행)
 - 공표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1회에 한해 이행촉구
 - 재차 불이행하면 당초의 범위반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함.

20.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 회계조사 방법의 개선 (2000/12/8 개정, 12/18 시행)
 - 감사조서 중심의 서면감리 원칙을 폐지하고, 현장조사 및 관계자 출석요구 등에 의한 입체적인 조사체제로 전환
 - 부외부채, 비용과소계상, 재고자산조작 등의 혐의가 있는 경우 자금추적 등 정밀조사실시

- 외감법상의 감리권과 증권거래법상의 조사권을 동시에 발동하여 출석요구, 자료제출요구, 진술서제출요구, 계좌추적, 회계장부열람 실시
 - * 중대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현장방문조사

○ 감리대상 선정방법의 개선 (2000/12/8 개정, 12/18 시행)

- 표본감리(일반감리) 위주의 감리업무를 분식혐의기업을 위주로 한 회계조사업무로 전환하되, 표본감리도 병행 실시

○ 분식회계 및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강화 (2000/12/8 개정, 12/18 시행)

— 기업 및 관련 임직원

-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
- 허위자료를 제시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적인 외부감사를 방해한 경우 외부감사방해죄로 고발

— 감사인 및 공인회계사

- 중대한 분식회계가 공인회계사의 묵인(방조)등 고의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등 중징계 및 형사 고발
- 과실에 의한 부실감사에 대한 제재기준 대폭 강화
 - * 감사인 지정제외기간 : 2년 이내 → 3년 이내
 - * 감사인 지정제외회사 : 3/100(15사) 이내 → 5/100(25사) 이내
 - * 감사업무참여제한 : 상장법인·증권위 지정회사
→ 협회등록법인을 추가

○ 분식회계정보의 체계적 제공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2000/12/8 개정, 12/18 시행)

- 분식회계에 대한 사회적 통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분식회계내용을 금융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통보하여 여신업무·세정 등에 활용
 -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관련내용을 게시

2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규정

○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 범위 조정 (2000/8/25 개정, 8/26 시행)

— 작성대상에서 제외

- 회사가 타회사의 주식을 30% 초과하여 소유하면서 최대주주이지만, 피투자회사가 타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 계약에 의하여 다음 사업연도말까지 종속회사의 처분이 예정된 경우 등

— 작성대상에 포함

- 복수의 주식회사가 각각 30% 초과 최대주주인 경우, 그 중 한 회사가 피투자회사와 동일 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 등

— 지배·종속관계가 연속적 또는 순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의 지배회사의 범위를 규정

- 연속적인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금융기관 등은 중간지배회사인 경우에도 연결재무제표를 작성

- 회계연구원에 대한 업무위탁관련 사항 (2000/8/25 개정, 8/26 시행)
 - 회계연구원은 위탁업무의 처리결과를 금감위에 지체없이 보고
 - 감독원장은 처리결과를 검토하여 수정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증선위의 심의를 거쳐 금감위에 부의
 - 재정적 지원
 - 직전연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회사가 납부한 순분담금의 4%를 회계연구원에 매 분기별로 지급하여 적립기금 및 운영경비로 사용

-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2000/8/25 개정, 8/26 시행)
 - 증선위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정한 상장예정회사는 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22.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 금융기관 검사관련규정 통합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규정수요자의 이용편의 제고, 검사·제재업무의 투명성 확보, 금융기관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금융기관 검사규정」 및 「금융기관 제재규정」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으로 통합

- 국민의 권리·의무 관련사항의 상위 규정화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현재 시행세칙으로 운영중인 사항 중 감독정책이나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이 있는 사항을 세칙에서 규정으로 이관

- 검사결과 통보 및 조치요구
-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 기관 및 임원 제재의 종류 및 요건
-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변상조치요구
- 과태료 부과기준
- 제재의 병과
- 금융기관의 제재조치 이행
- 주요 정보사항 보고

○ 금융기관의 수검부담 완화 및 규제개혁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경영유의사항의 정리기한 연장

- 3개월 → 6개월

— 보고대상 정보사항의 축소

— 검사징구자료의 과잉·중복징구 방지

— 자체감사계획 등의 보고대상 금융기관의 축소

- 중소형 금융기관(선물회사·여전·신협·부동산신탁회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감사계획 및 자체감사결과 보고대상에서 제외

○ 검사업무의 투명성 확보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부조리 발생 예방을 위한 감사원 복무수칙 개선

- 금지항목의 구체화
- 유가증권 매매거래 관련 제한 강화

- 과도한 차입이나 무분별한 채무보증 제한조항 및 상급자의 부당 행위 지시에 대한 추종 배격 조항 신설
- 감독 및 검사상 조치종류의 명확화
- 일일 검사실시내용에 대한 기록 및 보고체제 구축

-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기반 구축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검사업무와 관련한 검사사전준비협의회, 검사결과협의회, 자산건전성분류협의회, 상시감시업무협의회 등 각종 협의회 운영근거 마련
 - 지원 검사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주체 변경
 - 검사관리시스템의 체계적 관리 도모

- 검사결과 조치기준의 합리적 운영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거액금융사고 발생시의 기관 제재기준 강화

| 제 재 | 기 준 | 변 경 |
|---------------|-------------------------------------|---|
| 문 책 기관경고 | 자기자본의 2% 또는 10억 원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 자기자본의 2%(자기자본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
| 주 의 적 기관경고 | 자기자본의 1% 또는 5억 원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 자기자본의 1%(자기자본의 1%가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 또는 50억원을 초과하는 손실 발생 |

- 임원에 대한 제재감면기준 마련
- 부실여신에 대한 기관제재 대상 확대
 - 은행에 한정 →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

23. 금융기관 제재규정 시행세칙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으로 통합)

- 제재심의위원회 위원구성 조정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금감원 원내위원 8인
 - 외부전문가(변호사, 법학교수) 3인을 추가하여 11인으로 구성

-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준 강화
(2000/11/10 개정, 11/15 시행)
 - 비위 정도가 극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 면직조치
 - 횡령,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인 경우 : 위법·부당행위의 정도에 따라 제재양정 수위를 한 단계씩 강화

24.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 적용대상 금융기관 (2000/1/14 제정, 1/17 시행)
 -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 제휴가능 업무범위 (2000/1/14 제정, 1/17 시행)
 - 금융기관이 금감위로부터 인가받은 업무의 수행방법 또는 절차상 본질적 업무를 제외한 업무

- 업무위탁시 유의사항 제시 (2000/1/14 제정, 1/17 시행)
 -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시 필요한 최소한의 유의사항을 제시
 - 업무위탁에 따른 비용·편익분석
 - 소비자 피해발생 및 금융질서 문란 여부
 - 위탁대상기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업무수탁이 가능한지의 여부 등

- 감독원장에 대한 보고 (2000/1/14 제정, 1/17 시행)
 - 사후보고
 - 원칙적으로 금융기관은 제3자에게 업무위탁시 동 내용을 감독원장에게 사후보고
 - 업무부담의 경감을 위해 일부 경미한 사안은 보고 생략 가능
 - 사전보고
 - 금융기관이 감독원의 검사대상이 아니면서 금융업무를 영위하는 자(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탁받는 경우

- 업무제휴에 대한 감독원장의 변경권고 (2000/1/14 제정, 1/17 시행)
 -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또는 수탁내용이 업무인가 취지 등에 비추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내용의 변경 권고 등 필요한 조치 가능

25. 금융기관 전자금융업무 감독규정

- 전자금융업무 등의 안전성 및 건전성 확보 (2000/12/22 제정, 2001/4/2 시행)
 - 금융기관은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IT)부문에 대한 자체 안전대책기준을 설정·운용하여야 함.
 - 정보기술부문 실태평가제도 운용
 - 금감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 등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IT부문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 및 검사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의 보호 (2000/12/22 제정, 2001/4/2 시행)
 - 이용자의 거래내역 확인
 - 금융기관은 이용자가 거래내역을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거래기록·자료의 보존 및 제공
 - 금융기관은 보관중인 전자거래기록·자료에 대한 이용자의 제공 또는 열람요청에 2영업일 이내에 응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조건의 공시
 - 금융기관은 이용자와 전자금융거래를 개시 또는 거래조건을 변경하기 이전에 전자금융거래조건을 해당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쉬운 표현으로 정확하게 공시
 - 오류정정 절차를 정하여 고지

- IT부문 사고의 보고 (2000/12/22 제정, 2001/4/2 시행)
 - 금융기관은 전산시스템의 장애, 해킹 등 IT부문과 관련하여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

26. 은행감독규정

- 은행의 자회사 업종 추가지정 (2000/2/11 개정 · 시행)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업무 및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관리자업무를 은행의 자회사 업종으로 추가 지정

27. 신탁업 감독규정

- 주식운용비율제한의 완화 (2000/2/11 개정, 2/12 시행)
 - 전월평균 수탁금액의 30% 이내 → 신탁재산의 50% 이내
- 신탁재산 편입가능 사채권의 범위조정 (2000/2/11 개정, 2/12 시행)
 - 유동화증권에 대하여는 1개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을 받더라도 신탁재산에 편입 허용

28.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기준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융지주회사 설립인가 및 자회사편입 승인시 요구되는 경영실태평가결과는 원칙적으로 종합평가등급 2등급(양호) 이상으로 규정

-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자회사간 신용공여시 확보하여야 할 적정담보는 담보자산의 종류에 따라 담보비율을 차등 적용

| 담 보 자 산 | 담 보 비 율 |
|----------------------|---------|
| 예·적금, 국채, 통안채, 정부보증채 | 100% |
| 공채, 공공기관보증채 | 110% |
| 기타 자산 | 130% |

* 요주의 이하 분류자산, 당해 금융지주회사 또는 자회사 등이 발행한 유가증권은 담보제공 불가능

- 자회사간 거래가 금지되는 불량자산
 - 요주의 이하로 분류된 자산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공동광고하는 경우 예금자 및 투자자가 혼동하지 않도록 부보금융기관여부 등을 광고에 명시

- 경영지도기준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융지주회사는 적정수준의 자기자본과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의 경영지도비율 유지

| 경 영 지 도 기 준 | | 기 준 비 율 |
|---------------------------|------------|---------|
| 필요자본에 대한 자기자본비율 (연결기준) | | 100% 이상 |
| 유동성비율 (금융지주회사 개별기준) | 원화유동성비율 | 100% 이상 |
| | 외화유동성비율 | 80% 이상 |
| | 외화만기 불일치비율 | 0% 이상 |
| 10% 이내 | | |

* 필요자본 : 금융기관이 금융관련법령에 규정된 자본적정성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할 자기자본

- 금융지주회사는 차주의 미래상환능력에 기초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FLC)을 설정·운용
- 리스크관리체제의 구축
 - 금융지주회사는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는 리스크관리체제를 구축
- 금융지주회사의 공시사항
 - 일반적인 경영상황, 임직원 및 주주 현황, 재무제표 및 경영지표, 내부거래규제 정책 및 내부거래내역 등

○ 경영실태평가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경영실태를 검사 등을 통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감독·검사업무에 반영
 - 평가단계 : 5단계, 1등급(우수) ~ 5등급(위험)

○ 적기시정조치 (2000/12/22 제정, 12/29 시행)

- 부실한 금융지주회사에 대해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 명령을 할 수 있음.
- 경영개선권고·요구를 받은 금융지주회사는 권고·요구를 받은 후 2개월 이내, 경영개선명령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금감위가 정하는 기한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 제출 받은 후 1개월내 승인 여부 결정

29.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록 등에 관한 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등록 처리시한 (2000/11/24 제정)

- 등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 명시 (2000/11/24 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차입한도 및 사채발행한도의 기준이 되는 자기자본 및 적립금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공시 (2000/11/24 제정)

- 등록내용 등의 공시를 위해 투자회사가 제출하는 서류는 2부
 - 전자기록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1부
- 등록사항의 공시기간은 등록일로부터 등록취소 후 1년이 되는 날까지
 - 투자회사의 결산서류 공시기간은 2년

30. 기업구조조정조합 등록규정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 및 감독업무의 이관에 따른 규정제정

(2000/7/7 개정 · 시행)

— 산업자원부장관 → 금융감독위원회

* 기업구조조정조합 :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대한 투융자, 구조조정대상기업의 인수, 구조조정대상기업 자산의 매입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그 수익을 출자자에게 배분

○ 기업구조조정조합의 등록요건 (2000/7/7 개정 · 시행)

— 납입출자금 10억원 이상

—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출자지분이 총출자금의 5% 이상

31. 채권전문딜러 지정 및 운영지침

○ 채권전문딜러 지정요건 (2000/6/12 제정 · 시행)

— 재무건전성

| | |
|----------|------------------|
| 은행 및 종금사 | 자기자본비율 8% 이상 |
| 증권회사 | 자기자본규제비율 150% 이상 |

— 직전 6월간 200억원 이상의 시장조성채권 보유 및 채권장외거래금액의 0.5% 이상의 채권거래

- 업무능력평가
 - 업무능력평가 세부항목 중 최하위 등급이 3개 이하

- 채권전문딜러의 의무 (2000/6/12 제정·시행)
 - 시장조성채권에 대한 지속적인 시장조성
 - 시장조성중인 채권의 1월 이내 임의변경 금지

- 채권전문딜러에 대한 지원 (2000/6/12 제정·시행)
 - 증권금융을 통한 자금지원
 - 은행 : 채권자기매매업 허가
 - 증권회사 : 채권관련 장외파생상품 취급업무 인가

- 최소호가수량 (2000/6/12 제정·시행)
 - 거액투자자 : 액면 10억원
 - 소액투자자 : 액면 1억원

- 거래내역의 공시 (2000/6/12 제정·시행)
 - 시장조성상황을 실시간으로 협회를 통하여 공시

- 채권전문딜러의 지정취소 (2000/6/12 제정·시행)
 - 시장조성의무 불이행건수가 연5회 이상
 - 직전 6월간 시장조성실적이 최상위자의 10% 미만
 - 2회 이상 연속으로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32. 금융기관의 파생상품거래에 관한 모범규준

- 파생상품거래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강화 (2000/1/10 제정, 1/11 시행)
 - 파생상품거래관련 승인절차, 리스크관리절차, 공정가액 평가방법 등 문서화
 - 거래실행 부문과 리스크관리 부문간의 직무 분리
 - 내부검사기능 활성화

- 파생상품거래 관련 공시 확대 (2000/1/10 제정, 1/11 시행)
 - 파생상품거래의 수익인식 관련 회계처리방법, 주요 리스크 및 그 관리현황을 적시 공시함으로써 시장규율기능 제고

- 파생상품 등을 이용한 불건전거래 금지 (2000/1/10 제정, 1/11 시행)
 - 손익 은폐·조작 등의 목적으로 시장가격과 현저히 다른 조정가격으로 파생상품거래를 하거나, 기체결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을 새로운 파생상품 거래가격에 반영하는 행위 등을 금지

- 파생상품거래와 관련된 중요정보 고지 (2000/1/10 제정, 1/11 시행)
 - 장외파생상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거래상대방의 투자능력 및 이해능력을 감안하여 중요정보를 충분히 고지토록 의무화

33. 증권회사 및 선물회사의 선물·옵션거래시 위험내용 사전설명에 관한 가이드라인

○ 위험내용 사전설명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정 (2000/5/13 제정·시행)

— 선물·옵션거래계좌 개설시 위험내용 사전설명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증권·선물회사가 고객에게 위험내용을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규제

- 위험내용사전설명서에 회사의 연락처를 명기
- 영업장에 위험내용사전설명서를 상시 게시
- 인터넷을 통한 위험고지의 경우, 공인인증기관의 전자서명 방법으로 위험내용 사전설명사실을 확인

34.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

○ 부담규모 (2000/1/14 개정·시행)

—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액은 「순자산부족액×1/2×대주주지분율」

- 부실책임을 묻기가 곤란하거나 부실에 따른 경제적 책임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제적 책임부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감 가능

- 부담방법 (2000/1/14 개정·시행)
 -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정인 금융기관에 대한 출자, 동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권·전환사채의 매입
 - 예금보험기금채권·증권금융채권의 매입

- 부담절차 (2000/1/14 개정·시행)
 - 인허가 신청 이전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
 - 인허가일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경제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인허가 가능

35. 금감위 명령

- 「금융기관의 동일계열 기업발행 회사채 보유제도」 폐지 (2000/5/24 시행)
 - 회사채 보유도제는 주채무계열의 구조조정 촉진과 부채비율 200% 이내 감축에 기여하였으므로 도입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여 폐지
 - 2000. 1. 1부터 시행중인 은행의 신용공여한도제에 사모사채가 포함되어 중복규제의 우려가 있으며,
 - 투신권의 자금유입 촉진과 침체된 채권시장의 활성화에 기여
 - ※ IMF구제금융 이후 5대 계열의 회사채발행 급증으로 5대 계열에 대한 자금편중이 심화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리스크 축소 및 대기업의 재무구조개선 촉진을 위하여 98. 10. 28 「금융기관의 회사채보유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Ⅲ. 증권거래소 규정

1. 업무규정

○ 시간외 바스켓 매매제도 도입 (2000/4/28 개정, 7/3 시행)

— 기관투자자의 다양한 거래수요 충족을 위해 다수 종목을 바스켓으로 구성하여 일괄매매할 수 있도록 허용

- 시간외시장(15:10~15:40)에서 5종목 이상 and 10억원 이상 일괄매매
- 가격은 종가대비 $\pm 5\%$ 이내 and 당일의 최고·최저가 이내
- 매도호가와 매수호가는 각각 같은 회원이 호가
- 시간외 바스켓매매를 하는 경우 15:30까지 거래소에 신청

○ 시간외 대량매매제도 개선 (2000/4/28 개정, 7/3 시행)

— 시간외대량매매의 활성화를 위해 가격제한폭을 확대

| 기 존 | 개 정 |
|---|--|
| · 당일종가의 ± 5 호가 이내 and · 당일 최고·최저가 이내 | · 당일종가의 $\pm 5\%$ 이내 and · 당일 최고·최저가 이내 |

○ 자기주식 취득시 가격제한폭 확대 (2000/4/28 개정, 5/2 시행)

| 기 존 | 개 정 |
|------------------|-----------------|
| · 전일종가대비 +2호가 이내 | · 전일종가대비 +5% 이내 |

○ 전·후장 구분 폐지 (2000/5/12 개정, 5/22 시행)

- 전장과 후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정규시장을 단일장으로 운영
 - 점심시간(12:00~13:00)에도 거래 허용
 - 정보의 적시반영으로 가격의 연속성을 유지함으로써 매매거래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도모하고, 투자자의 거래기회 확대 및 증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
- 시장의 분류를 조정

| | 기 준 | 개 정 |
|------------|---|---|
| 시장의 분 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장 (09:00~12:00) • 후장 (13:00~15:00) • 시간외시장 (15:10~15:4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시장 (09:00~15:00) • 시간외시장 (15:10~15:40) |

- 연초개장일·연말폐장일의 후장휴장제 폐지
- 후장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매매제 폐지

○ 공매도제도 개선

- 회원에 증권이 예탁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호가를 금지하고,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호가를 허용

(2000/5/26 개정, 6/1 시행)

- 위탁자가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신용거래대주 또는 대차거래에 의하여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
- 매수증권을 당해 수량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등

- 소유하지 않은 증권을 매도한 후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위탁자에 대하여 3개월간 위탁증거금을 100% 징수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결제불이행 사실을 즉시 다른 증권회사에 통보하게 함으로써 모든 증권회사가 동일하게 3개월간 위탁증거금 100%를 징수토록 함.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국채전문유통시장에서의 호가제도 개선 (2000/5/26 개정, 7/3 시행)
- 국채지표종목에 대한 조성호가를 양방의 조성호가와 일방의 조성호가로 구분
 - 양방의 조성호가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가 제출
 - 일방의 조성호가는 모든 국채딜러가 제출
 - * 기존에는 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국채딜러는 조성호가를 할 수 없었음.
-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 연장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거래소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고 매수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을 1일 연장 가능
 - 결제대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증권 납부
→ 1일 추가 연장 가능
- 매매거래 수탁시 신의성실의무 부과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회원이 주문수탁시 투자자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주가·거래량의 급변 등 이상매매 징후 발생시 투자위험을 고지토록 함.

-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의 구체화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증권거래소가 회원이나 그 임직원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시세의 변동·고정을 초래하는 행위, 특정종목에 대한 과도한 매매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시키는 매매행위 등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의 매매수량단위 상향 조정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액면 10억원 → 액면 50억원

2. 업무규정 시행세칙

- 무액면주식 분할시 기준가격 조정근거 마련 (2000/1/12 개정, 1/17시행)
 - 기준가격 및 대용가격등 산정시 주식분할비율을 감안하여 산정
 - 기준가격 조정시 주식병합비율 적용기준 명시
 - 주주별로 병합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소액주주에 적용되는 비율 적용

- 시간외대량매매신청서 서식 변경 (2000/1/12 개정, 1/17시행)
 - 상장법인이 시간외대량매매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매매 상대방이 정부·예금보험공사인 때에는 위탁을 받은 회원이 신청한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으므로,

- 거래소가 매매의 적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간외대량매매신청서에 매도위탁자명을 기재

○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 결정방법 개선 (2000/5/12 개정, 5/22 시행)

- 전장종료시에 신규상장종목의 최초가격을 결정
 - 전·후장 구분 폐지에 따라 정규시장의 장개시시점에 최초가격을 결정
- 최초가격 결정시 시세와 현저히 괴리된 호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발행가격의 90%와 200% 이내에서 매도·매수호가를 접수

○ 종목별 매매거래중단후 재개시기 단축 (2000/5/12 개정, 5/22 시행)

- 품문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중단한 후, 중단사유에 대한 조회결과 공시후 60분이 경과한 시점에 매매거래를 재개

○ 회원의 호가시 위탁자로부터 주문받는 방법을 구분표시

(2000/5/12 개정, 6/5시행)

- Home Trading 주문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문서·전화, 유선통신단말기(ARS), 무선통신단말기(인터넷폰등), 컴퓨터(HTS)에 의한 주문접수 방법을 구분표시

○ 거래소시스템상 호가수량한도의 규정 등 (2000/6/30 개정, 7/1 시행)

- 호가당 호가수량이 1억주 이상 또는 상장주식수(채권의 경우에는 상장잔액)를 초과하는 호가의 입력 불가

- 1억주 이상의 매매거래를 위탁받은 때에는 이를 1억주 미만으로 분할하여 호가

○ 외국주권 상장제도 도입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2000/6/30 개정, 7/1 시행)

- 외국주권에 대해, 주가상승률이 동업종산업별주가지수 상승률의 4배 이상으로 한 국내주권의 감리종목 지정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신규상장시 호가할 수 있는 최고·최저호가가격 산정시 원칙적으로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외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이 10% 이상 낮은 경우에는 외국거래소에서 형성된 가격을 감안하여 산정

○ 상장채권의 대용가격제도 개선 (2000/9/29 개정)

- 상장채권의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도 및 대용가격의 신뢰도를 제고

○ 채권대용가격 산출주기 단축 (2000/9/29 개정, 11/4 시행)

- 정기산출주기의 단축
 - 월단위 → 주단위 (매주 토요일 산출)

○ 채권대용가격 기준시세 산출방법 변경 및 사정비율 조정

(2000/9/29 개정, 11/4 시행)

- 기준시세 산출방법 변경
 - 대표종류별로 25매매거래일간의 매매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수익률을 환산한 가격

→ 종목별로 5매매거래일간의 종가 또는 시가평가가격을 단순 산술평균한 가격

— 사정비율 조정

- 대표종류 여부 및 보증유무에 따른 차등

→ 회사채(85%) 및 주식관련사채권(80%) 이외에는 일률적 적용(95%)

— 대용가격산출단위 조정

- 100원 단위 → 10원 단위

○ 협회등록유가증권의 거래소시장에서의 대용증권 인정 (2000/9/29 개정, 10/2 시행)

— 증권업협회가 대용증권으로 지정하여 대용가격을 산출하는 협회등록유가증권을 거래소시장에서의 대용증권으로 인정

○ 국채딜러간 매매거래의 은행예금지급준비금 적립마감일 전일의 매매거래종류 변경 (2000/9/29 개정, 11/4 시행)

— 익일결제거래 → 당일결제거래

○ 프로그램매매 보고사항 간소화 (2000/9/29 개정, 10/2 시행)

— 주간프로그램매매현황 중 지수차익거래와 관련된 보고사항은 면제, 비차익거래와 관련된 사항은 위탁·자기매매의 구분 및 투자전략에 관한 내용만 보고

○ 회사분할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2000/10/19 개정 · 시행)

- 상장신청일 현재 존속회사가 자본잠식상태인 경우에는, 호가할 수 있는 가격을 전일종가 이하로 함.
- 신설법인의 평가가격은 상장신청일 현재의 신설회사에 이전된 순자산분할비율을 적용하여 산출

○ 우선주 상장시 기준가격 결정을 위한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2000/10/19 개정 · 시행)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여 발행된 경우에는 모집 또는 매출시의 발행가액을 평가가격으로 함.
- 모집 또는 매출에 의하지 않고 발행된 경우에는 기존의 시장평균주가피리울 대신 보통주의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격을 산정

○ 회사분할시 재상장종목의 평가가격 산정방법 개선 (2000/12/21 개정 ·

시행)

- 자본잠식인 회사가 분할하여 재상장하는 경우, 신설회사의 평가가격을 재상장신청일 현재의 주당순자산가치로 함.
 - 당해 종목의 최저호가가격은 평가가격의 50%로 함

○ 채권의 매매거래종류 일원화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국채달러간매매거래는 익일결제거래, 기타 채권은 당일결제거래로 지정되어 있던 것을, 채권매매시 수익률변동 등의 위험감소를 위해 채권의 매매거래종류를 당일결제거래로 일원화

- 공매도주문 수탁시 증권의 소유여부 확인방법 구체화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위탁자의 신용도에 따라 확인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하여 회원이 자율적으로 세부기준을 만들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함.

- 결제대용증 발행시 지체보상금 상향조정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1일당 지체보상금을 인상
 - 6/10,000 → 10/10,000 (1일 연장시 20/10,000)
 - 1일당 지체보상금이 5,000원 미만인 때에는 5,000원으로 함.

- 투자자보호 및 공정거래질서 강화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특정종목의 주가·거래량 급변시 회원이 전자통신방법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고지
 - 거래소는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고대량매매종목 및 특정지점의 집중적 매매거래 종목을 공표

- 감리종목지정제도 개선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관리종목에 대한 감리종목지정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종목과 동일하게 적용

- 회원감리업무의 효율화 (2000/12/22 개정, 2001/1/2 시행)
 - 현지출장의 실시범위 및 실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

- 회원감리결과 처리의 공정성 및 객관성 제고를 위하여 감리협의회를 설치·운영

3. 선물·옵션 업무규정

- 전·후장 구분의 폐지 (2000/5/12 개정, 5/22 시행)
 - 점심시간(12:00~13:00)에도 거래 허용
 - 후장시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매매제도 폐지
- 추가증거금 관련제도의 개선 (2000/5/12 개정, 5/22 시행)
 - 추가증거금 등 미납시의 반대매매시기 개선
 - 위탁자가 추가증거금 또는 결제금액을 익일 12:00까지 미납시에, 동시호가시간대(12:00~13:00, 15:05~15:15)에만 반대매매
 - 전·후장 구분 폐지에 따라 접속매매시간대(12:00~15:05)에도 반대매매를 허용
 - 접속매매에 의한 반대매매는 시장가호가로 한정
 - 회원과 고객간의 분쟁발생 소지를 축소
 - 추가증거금의 징수의제
 - 고객이 추가증거금 징수시한 전에 자율적으로 반대매매를 하여 개시증거금 수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추가증거금을 징수한 것으로 의제

4. 선물·옵션 업무규정 시행세칙

- 선물·옵션 기본예탁금의 최저금액 인하 (2000/3/13 개정·시행)
 - 3,000만원 → 1,000만원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인하여건이 조성되었으며, 투자자 스스로 시장변동위험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대용증권의 범위에 채권속성의 수익증권 추가 (2000/9/8 개정·시행)
 - 투자자가 보유하는 유가증권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MBS 등 채권속성의 수익증권을 대용증권의 범위에 추가
 - 수익증권의 대용가격은 상장채권과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

- 상장채권의 대용가격제도 개선 (2000/9/29 개정, 11/4 시행)
 - 상장채권의 대용증권으로서의 활용도 및 대용가격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현·선제도의 균형을 도모
 - 정기산출주기의 단축
 - 월단위 → 주단위 (매주 토요일 산출)
 - 기준시세 산출방법 변경
 - 대표종류별로 25매매거래일간의 매매수익률을 단순산술평균한 수익률을 환산한 가격
 - 종목별 5매매거래일간의 종가(또는 시가평가가격)을 단순산술평균한 가격

— 사정비율 조정

- 대표종류 여부 및 보증유무에 따른 차등

→ 회사채(85%) 및 주식관련사채권(80%) 이외에는 일률적 적용(95%)

— 대용가격산출단위 조정

- 100원 단위 → 10원 단위

○ 협회등록주권의 대용가격 산정기능의 협회 이관 (2000/9/29 개정, 10/2 시행)

— 증권거래법시행령 개정에 의해 협회등록유가증권에 대한 대용가격 산정기관이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업협회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

- 협회등록유가증권의 대용가격은 협회가 산정

5. 유가증권 상장규정

○ 증권거래법 개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2000/2/25 개정, 2/28 시행)

— 증권거래법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회 관련사항의 신설에 따른 규정정비

- 주권상장법인의 사외이사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의무를 명시
- 위반시의 상장폐지기준, 상장폐지유예기간 산정 등을 규정
- 감사위원회 설치를 신고사항으로 규정
- 사외감사제도의 폐지

— 분기보고서 미제출을 상장폐지사유로 규정

○ 상장법인의 구조조정원활화 도모 (2000/2/25 개정, 2/28 시행)

— 재상장신청기한의 현실화 등

- 분할 및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재상장신청시기 제한규정을 삭제
 - * 설립등기후 2주 이내 신청 → 기업의 구체적·개별적 사정을 감안
- 분할 및 분할합병 등으로 인한 재상장의 경우,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계속보유확약서 및 증권예탁원의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보관증명서 제출을 면제

— 재상장심사요건 적용기준의 합리화

- 설립등기일 이후 재상장신청일까지 재무내용변화를 반영하여 부채비율 및 자산가치를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상장심사 및 상장관리제도 보완 (2000/2/25 개정, 2/28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

- 상장심사요건중 신주인수권증권의 유통성기준을 변경
 - * 발행총액 → 발행총수 (1만증권 이상, 액면가 5천원 기준)
- 신주인수권증권의 잔존권리행사기간 요건을 추가
 - * 잔존권리행사기간이 상장신청일 현재 1년 이상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기준 추가
 - * 발행회사의 신청으로 신주인수권 대상주권이 상장폐지되는 경우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폐지근거 마련

— 수익증권

- 상장수익증권의 범위를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의한 수익증권으로 확대
- 신탁기간만료로 인한 수익증권의 상장폐지예고 근거마련

— 증권투자회사

- 증권투자회사의 신고사항 확대
 - * 증권투자회사의 존립기간연장 결의, 주식매수청구, 금전분배
- 주권상장증권투자회사의 영업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영업정지사유에 대해 상장폐지 유예기간을 1월간 부여
- 매매거래정지사유 및 정지기간 명시
 - * 상장폐지유예시, 유예기간 종료시까지 매매거래정지

○ 시장소속부제도 폐지 (2000/4/14 개정, 5/2 시행)

— 주권에 대한 시장 1·2부 구분폐지

- 거래소는 증권에 대한 정보만을 공시하고 증권에 대한 가치판단은 투자자에게 맡기는 것이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되므로, 시장소속부 제도를 폐지

— 외국주식예탁증서 및 증권투자회사의 주권에 대한 소속부 지정폐지

○ 시가배당률 신고 의무화 (2000/4/14 개정, 5/2 시행)

- 시가배당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상장법인의 배당결의시 사업연도말의 시가를 기준으로 배당률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중간배당시는 정관에 따라 정한 날의 시가를 기준

- 신규상장요건의 다양화 (2000/6/23 개정, 7/1 시행)
 - 자기자본, 자본금, 수익성, 자산가치, 수익가치, 매출액 등의 요건에 있어 선택적 요건을 도입하여 기업규모와 특성에 따라 기업이 상장요건을 선택 가능
 - 자기자본이익율, 영업현금흐름, 매출액증가율요건을 도입

- 신규상장요건의 현실화 (2000/6/23 개정, 7/1 시행)
 - 설립후 경과연수, 최대주주 등의 지분변동제한, 유무상증자제한 등을 개선
 - 현행 공모요건(30%)를 유지하되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의 대형법인에 대해서는 유통성기준을 도입하여, 의무공모규모를 자기자본규모에 따라 차등화
 - 직상장 가능법인의 범위를 모든 협회등록법인으로 확대

- 재상장제도 개선 (2000/6/23 개정, 7/1 시행)
 - 인적분할법인에 허용되는 재상장을 물적분할법인에 대해서도 허용

- 외국기업의 원주상장 (2000/6/23 개정, 7/1 시행)
 - DR외에 외국기업의 원주상장과 부분상장을 허용

- 상장폐지제도 개선 (2000/6/23 개정, 7/1 시행)
 - 퇴출기준을 관리종목지정기준과 상장폐지기준으로 이원화하고 상장폐지유예제도를 폐지

— 관리종목지정기준을 강화

-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부적정(의견거절), 주식분산요건미달 등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추지 못할 경우 즉시 관리종목으로 지정

○ 채권속성을 갖는 수익증권의 채권 간주 (2000/9/8 개정·시행)

— 금전분배방법 등이 채권속성을 갖는 수익증권은 채권으로 간주

- MBS 등 채권의 성격이 강한 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채권과 동일하게 관리

— 기상장 수익증권의 처리

- 채권속성의 기상장수익증권은 채권상장일에 상장폐지

○ 일반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2000/10/27 개정·시행)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 재무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과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분을 합산하여 적용
- 분산요건 등은 지주회사 자체분만 적용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 규모요건 |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등 | (좌 동) |
| 주식분산 | - 기본산 30%이상, 의무분산 10% 이상등 | (좌 동) |
| 자산(수익)가치 | - 액면가 2배 이상 | (좌 동) |
| 설립년수 | - 3년 이상 | - 주요자회사 고려 가능 |
| 매출액 | - 최근 200억원 이상, 3년 평균 150억원 이상 | - 자회사분×지분을 포함 |
| 부채비율 | - 동업종평균 1.5배 미만 | - 자회사전체의 가중 평균부채비율 적용 |
| 이익요건 | - 영업·경상·당기순익이 있고, · ROE가 최근 5% 이상, 3년 10% 이상 · 이익액이 최근 25억원, 3년 50억원 이상 등 | - 연결재무제표 기준 |
| 자본상태 | - 자본잠식이 없을 것 | - 1년미만은 설립시 5기준 |
| 감사의견 | - 적정(직전2년은 한정 포함) | - 연결재무제표도 고려 |
| 소송·부도 | - 없을 것 | - 자회사도 고려 |
| 비계량적요건 | - 경영독립요건 등 | - 경영독립요건 배제 |
| 지배구조 | (신 설) | -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

○ 상장법인인 주요자회사가 순수자회사인 신설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2000/10/27 개정·시행)

— 일반법인의 상장요건을 적용하여 심사하되,

- 재무요건 등은 주요자회사가 완전자회사로서 이미 상장되었던 점을 감안하여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
 - 분산요건 등 일부요건만을 적용
- 이미 상장되었던 주요자회사들은 지주회사의 설립과 더불어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상장폐지

○ 상장법인의 분할방식으로 설립된 지주회사의 상장시 특례

(2000/10/27 개정 · 시행)

- 상장법인의 분할 · 재상장 요건을 적용하되, 매출액 등은 자회사에 대한 지주회사분을 합산하여 심사

| 구 분 | 내 용 | 지주회사 특례 |
|-------------|------------------------------|-----------------------|
| 자산 가치 | - 액면가액 이상 | (좌 동) |
| 주식 분산 | - 기분산 30% 이상, 의무분산 10% 이상 등 | (좌 동) |
| 규모 요건 | - 자본금 50억원 이상, 자기자본 100억원 이상 | (좌 동) |
| 지배 구조 | -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 | (좌 동) |
| 주된 영업 계속 연수 | - 3년 이상 | - 매출액 최고 자회사의 주된 영업기준 |
| 매 출 액 | - 최근 200억원 이상 | - 자회사분×지분율 포함 |
| 소송 · 부도 | - 없을 것 | - 자회사도 고려 |
| 부채 비율 | - 동업종평균 1.5배 이내 | - 적용 배제 |
| 질적 요건 | - 경영독립요건 적용 | - 경영독립요건 불적용 |

○ 상장법인의 분할 사업회사의 재상장요건 적용시 특례

(2000/10/27 개정 · 시행)

- 상장법인으로부터 분할된 사업회사로서 지주회사가 있는 경우, 동 사업회사의 재상장요건 중 부채비율 적용시 특례인정

○ 지주회사의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및 지정해제의 특례

(2000/10/27 개정 · 시행)

- 관리종목지정(상장폐지) 요건의 특례 인정
- 관리종목 지정해제요건 중 자본잠식요건의 특례 인정

○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한 서류제출 의무화 (2000/12/8 개정, 12/11 시행)

- 증권거래소에 주식관련채권 등을 상장하였으나 주권을 상장하지 아니한 주권비상장법인에 대하여 CB, BW 등 권리행사시 관리서류의 제출을 의무화

○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관리서류 제출 간소화 (2000/12/8 개정, 12/11

시행)

- 주식관련채권 등을 상장하고 있는 주권상장법인은 CB, BW 등 권리행사시 신주발행통지서만 제출하고, 전환청구권행사보고서 등 기타 권리행사 관리서류 제출의무를 면제

- 워크아웃 기업의 기업분할에 따른 재상장시 특례요건 신설
(2000/12/8 개정, 12/11 시행)
 - 기업개선약정을 체결한 법인의 재상장요건 중 자산가치요건(액면가액 초과)의 적용배제 근거를 마련

6. 유가증권 상장규정 시행세칙

- 기상장수익증권의 채권상장시 상장수수료 징수(2000/9/8 개정·시행)
 - 기납부한 수익증권 상장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징수
- 연부과금 납부시점 및 부과기준일 조정 (2000/9/29 개정, 9/30 시행)
 - 상장후 발행결과통지시점에서 연부과금 납부
 - 발행일 기준으로 연부과금 부과

7. 상장법인 공시규정

- 공시구분의 폐지 (2000/3/24 개정, 4/1 시행)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 됨에 따라 동 구분 폐지

- 자진공시제도 도입 (2000/3/24 개정, 4/1 시행)
 - 상장법인이 공시의무사항 이외의 중요경영정보를 1일 이내에 자진해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 자진공시사항의 변경·번복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간주

-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2000/3/24 개정, 7/1 시행)
 - 정·부 공시책임자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 공시책임자는 임원만이 될 수 있으나, 공시담당자는 직원도 가능

- 영문공시 근거 마련 (2000/3/24 개정, 7/1 시행)
 -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한글공시 후 1일 이내에 영문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시대상범위 확대 (2000/3/24 개정, 4/1 시행)
 - 이사회내 위원회의 결의사항과 집중투표제의 도입·폐지결정을 공시사항에 추가

-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정지 근거 마련 (2000/3/24 개정, 6/1 시행)
 - 신주인수권증권의 본주식이 매매거래 정지되는 경우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거래소에 의한 공시근거 마련 (2000/3/24 개정, 4/1 시행)
 - 상장법인이 거래소에 신고하거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거래소가 관계기관에 확인한 사항을 거래소가 직접
공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매매거래정지시간 조정 (2000/5/12개정, 5/22 시행)
 - 상장법인이 주가·거래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영사항을 공시한
경우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정지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을 변경
 - 전·후장 구분폐지에 따른 조치

| 기 존 | 개 정 |
|--|--|
| ·공시시점이 전장개시전 또는 전장매 매거래시간중 : 전장종료시까지 ·공시시점이 후장개시전 또는 후장매 매거래시간중 : 후장종료시까지 | ·공시시점부터 1시간 * 다만 공시시점부터 장종료시까지 1시간 30분 미만인 경우에는 장 종료시까지 |

8.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의 상장법인 의결권행사에 관 한 공시규정

- 공시구분의 폐지 (2000/3/24 개정, 4/1 시행)
 - 전자공시제도 시행으로 직접·간접공시의 구분실익이 없게 됨에 따
라 동 구분 폐지

- 공시책임자제도 개선 (2000/3/24 개정, 4/1 시행)
 - 정·부 공시책임자 → 공시책임자와 공시담당자

-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2000/3/24 개정, 4/1 시행)
 - 증권투자신탁회사 등이 공시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기 공시내용과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한 경우 불성실공시로 간주

9. 상장법인 등의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에 관한 규정

- 전자문서 제출대상 (2000/3/24 제정, 4/1 시행)
 - 증권거래법령 및 거래소의 각종 규정에 따라 거래소에 제출하는 신고서 등
- 전자문서의 작성 및 제출방법 (2000/3/24 제정, 4/1 시행)
 - 제출인의 본인 및 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거래소에 사전등록
 - 첨부서류 중 공인회계사등 제출인 이외의 자가 작성하는 감사보고서 등은 작성자가 전자서명 후 제출인에게 제공
 - 신고서 등을 전자문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거래소가 정한 제출부수를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전자문서의 위·변조 여부 및 제출인 신원의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제도 도입
- 금감위로부터의 신고서 접수 (2000/3/24 제정, 4/1 시행)
 - 전자문서 방법으로 금감위에 제출된 신고서 등을 금감위로부터 전송받는 경우 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에 동 전자문서가 기록된 때 접수된 것으로 처리

○ 사업보고서 등의 시행일 (2000/3/24 제정, 4/1 시행)

—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 대하여는 2000. 7. 1. 시행

IV. 증권업협회 규정

1.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 등록요건의 개선

— 벤처금융이 10% 이상 출자하여 벤처기업으로 지정된 경우

(2000/1/28 개정, 4/1 시행)

- 벤처금융의 투자기간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1년 이상인 경우에만 벤처기업으로의 등록을 허용
- 출자한 벤처금융에 대해 등록 후 3월간 동 벤처기업 주식의 10%이상 보유를 의무화

— 소액주주수 및 주식분산비율 요건의 강화 (2000/1/28 개정, 4/1 시행)

- 등록예비심사후 등록신청일까지 모집한 주식수 :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 30% 이상

- 등록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소액주주수 :

300인 이상으로서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 500인 이상으로서 " 30% 이상

— 최대주주 등의 소유지분이 등록예비심사청구일전 6월간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등록 허용 (2000/1/28 개정, 4/1 시행)

- 코스닥 등록전 유상증자한도를 100%로 제한하던 것을 완화하여, 한도를 초과하는 유상증자 기업도 코스닥 등록을 허용

(2000/4/14 개정, 4/17 시행)

- 다만, 한도초과분에 대해서는 등록 후 1년간 매각제한

- 부채비율요건 변경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절대부채비율이 낮은 기업의 등록을 위하여, 부채비율이 동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인 경우뿐만 아니라, 100% 이하인 경우에도 부채비율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

○ 등록제도의 개선 (2000/6/23 개정, 7/1 시행)

- 등록예비심사 청구일전 6월 이내에 공모실적이 있는 법인의 경우 동 공모실적을 주식분산실적에서 제외

- 공모로써 인정되기 곤란한 간주모집에 대해 공모요건의 적용을 배제

- 주식분산요건 산정시 간주모집분은 공모분에서 제외

- 간주모집 : 과거 공모실적이 있는 경우 50인 미만에게 주식을 추가로 발행하더라도 모집으로 간주

- 건설업체의 등록심사요건 변경

- 상시고용 종업원수 100인 이상

→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액 300억원 이상

- 2년 이상 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이 코스닥 시장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전 유무상증자 제한 등 일부 등록요건 적용배제

- 해외증권시장 주권상장기업의 코스닥 등록 허용

- 잔여주권 전부를 등록하는 경우

○ 등록심사기능의 강화 (2000/1/28 개정, 2/1 시행)

— 코스닥위원회의 구성 변경

- 기관투자자대표 · 회계전문가 · 벤처기술전문가 및 상임위원을 추가하는 대신, 증권업계대표를 배제
-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겸하고, 위원회의 사무국을 지휘

○ 코스닥시장 등록기업 관리제도 개선 (2000/1/28 개정, 2/1 시행)

— 관리종목제도 신설

— 등록취소요건의 강화 (2000/4/1 시행)

-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후 일정기간 미해소시 반드시 등록취소

— 불성실공시 법인에 대한 관리기준 강화

- 연간 3회 이상 불성실공시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연간 2회 이상

— 비공개법인의 우회적 등록 방지 (2000/4/1 시행)

- 주권상장법인 ·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협회등록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규모 등이 당해 협회등록법인보다 크다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병을 허용

○ 불공정거래의 방지 강화 (2000/1/28 개정, 4/1 시행)

— 수시공시사항을 증권거래소 수준으로 확대

- 매매일시정지제도(Circuit Breakers) 도입
 - 종합주가지수가 전일 최종치보다 10% 이상 하락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되는 경우 (2000/1/28 개정, 12/1 시행)
 - 모든 종목의 매매거래 중단, 매매거래중단후 20분 경과시 매매거래 재개
 - 코스닥지수선물 개발 등 코스닥시장의 전산개발수요 과다로 Circuit Breakers 개발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시행일 연기 (2000/9/29 개정)
 - 2000년 12월 1일 → 2001년 8월 1일

- 코스닥시장 운영체제 개선 (2000/1/28 개정, 2/1 시행)
 - 증권업협회와 (주)코스닥증권시장간의 업무조정
 - 코스닥증권의 등록관련 업무를 협회로 이관
 - 증권업협회의 공시업무·시장관리업무를 코스닥증권으로 이관

- 등록심사기준에 질적 요건 도입 (2000/4/14 개정, 4/17 시행)
 - 등록심사시 실질적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적 요건을 구체화
 - 유동비율, 당좌비율, 차입금의존도 또는 금융비용부담률 등이 동업계 평균비율보다 불량한 기업으로서 차입금의 구성비율, 자금운용계획 등을 감안할 때 재무적 안정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2000/4/14 개정, 4/17 시행)
 - 중개회사(코스닥증권)의 중개수수료 인하
 - 3/10,000 → 0.8/10,000

— 협회등록(예정)법인에 대한 등록수수료 및 등록유지수수료 징수근거 신설

- 등록수수료 : 자본금의 0.06% 이내
- 등록유지수수료 : " 0.011% 이내

○ 전자공시제도 도입 (2000/4/14 개정, 4/17 시행)

— 전자문서에 의한 공시방법을 도입

- 공시방법을 전자문서에 의한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인터넷시대에 부응

○ 불성실공시의 예외 인정 (2000/4/14 개정, 4/17 시행)

— 법령개정이나 경제사정의 급변 등 불가피하게 기공시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의 공시를 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에서 제외

○ 자기주식 취득시 주문가능한 가격범위를 확대

(2000/4/28 개정, 5/2 시행)

— 협회등록법인이 자기주식 취득을 통하여 주가안정에 기여토록 하기 위함.

| 기 준 | 개 정 |
|--|-------------------------------------|
| · 취득시 : 전일종가대비 +2호가 이내 · 처분시 : 전일종가대비 -2호가 이내 | · 취득시 : 전일종가대비 +5% 이내 · 처분시 : 좌동 |

- 협회등록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안정 기여

○ 공매도제도 개선 (2000/5/26 개정, 6/1 시행)

- 증권회사에 증권이 예탁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도호가를 금지하고, 결제이행이 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매도호가를 허용
 - 위탁자가 증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하다고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
 - 대차거래에 의해 차입한 증권으로 결제를 하고자 매도하는 경우로서 결제일까지 결제가 가능한 경우
 - 매수증권을 당해 수량 범위내에서 결제일 전에 매도하는 경우 등
- 공매도시 호가제한 신설
 - 차입한 증권의 공매도시, 직전가격보다 낮은 호가를 금지
- 증권회사에 대한 공매도 확인의무 부여
 - 매매거래 수탁시 공매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호가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도주문의 수탁을 거부

○ 등록종목딜러제도 폐지 (2000/6/23 개정, 7/1 시행)

- 유명무실한 등록종목딜러제도를 폐지하고,
 - 종금사의 등록주선업무 취급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인수업 허가를 받은 자는 누구나 코스닥등록 주선업무 영위를 허용
 - 증권사의 신중한 등록기업 선정 및 사후관리 유도를 위해 코스닥등록주선인의 상품보유 의무는 존치

- 최대주주 등의 등록후 의무예탁제도 강화 (2000/6/23 개정, 7/1 시행)
 - 시세차익 획득목적의 코스닥 등록 방지를 위해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예탁의무기간 연장
 - 등록일로부터 6개월 → 1년
 -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주식예탁의무기간 중 취득한 무상증자분에 대해서도 예탁 의무화

- 코스닥위원회 관련제도 개선 (2000/6/23 개정, 7/1 시행)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신분보장
 - 코스닥위원회 위원에 대해 심신장애, 직무상 의무위반 등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한 임기전 해임 불가
 - 코스닥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요건 규정
 - 친인척관계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당해 위원을 심의·의결에서 제외하고, 당해 위원에 대해 기피신청 허용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기업의 최대주주 범위 확대 (2000/7/7 개정·시행)
 - 벤처금융이 최대주주인 경우, 벤처금융 뿐만 아니라 경영에 참여하는 제2대 주주에 대해서도 보유주식 매각제한 등 최대주주에 대한 규제를 적용
 - 시행일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하는 법인부터 적용

- 최대주주의 보유지분 매각제한 강화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지분은 등록후 1년간 매각 제한

→ 1년경과 후에도 매1월마다 최초보유주식의 5%까지만 매각허용
(등록일로부터 2년경과 후에는 잔여지분의 일괄매각 허용)

- 최대주주의 경영책임을 강화

○ 벤처금융의 보유지분 매각제한 강화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
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최대주주의 경영책임을 강화

| | 기 존 | 개 정 |
|-----------|-------------------------|--|
| 매각제한 대상주식 | 벤처금융이 10% 이상 투자한 기업의 주식 | 벤처특별법상 모든 벤처기업의 주식 |
| 매각제한 기 한 | 투자기간에 관계없이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 · 투자기간 1년 이상 : 등록일로부터 3개월간 · 투자기간 1년 미만 :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

○ 자기자본규모에 따른 주식분산요건 차등화

— 협회등록요건 중 주식분산요건을 거래소와 동일하게 개정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구분 | 기 존 | 개 정 |
|-------|--|---|
| 분산 비율 | ·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 30% 이상이거나, * 10% 이상으로서 5백만주 이상 | · 등록예비심사 후 등록신청일까지의 모집주식수가 발행주식수의 * 30% 이상이거나, * 10% 이상으로서, 자기자본이 5백억~1천억원은 1백만주 이상 1천억~2,500억원은 2백만주 이상 2,500억원 이상은 5백만주 이상 |

— 등록취소요건 중 주식분산요건 일부 수정 (2000/9/29 개정, 10/2
부터 적용)

| | 기 준 | 개 정 |
|------------|--|--|
| 소액주주 지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2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행주식수의 20%에 미달하는 경우 * 다만, 소액주주 300인 이상이 발행주식수의 10% 이상으로서 100만주 이상 소유하는 경우를 제외 |

○ 벤처금융 및 등록주선사 임직원이 투자한 기업의 등록제한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
으로서 그후에 동 임직원이 주식을 취득한 법인부터 적용)

— 벤처금융 또는 등록주선사의 임직원이 등록관련업무를 객관적이고 공
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 기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제한

- 벤처금융이 출자한 벤처기업으로 동 벤처금융 임직원이 당해 등
록예정벤처기업 주식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등록주선인의 협회등록업무관련 임직원이 등록예정주선기업에
투자한 사실이 있는 경우

○ 이해관계 있는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불인정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코스닥등록 신청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등 이해관계 있는 감사인
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는 코스닥등록 심사시 불인정

- 감사인이 공정한 입장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기 위함.

- 신규등록법인에 대한 무상증자 제한기간 확대 (2000/9/29 개정, 10/2부터 적용)
 - 협회등록후 1년간은 배당가능이익에서 재평가적립금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잉여금의 자본전입 허용
 - 전입후 자본금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200% 이상 유지하도록 제한
 - 단순히 발행주식수만을 늘림으로써 물량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방지

- 지방소재 벤처기업 등록시 특례인정 (2000/9/29 개정, 9/1 이후 등록에 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벤처금융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1년경과 후 등록을 허용하는 규정을 지방소재 벤처기업에 대해 적용 배제

- 공개청문회제도 도입 (2000/9/29 개정, 10/2부터 적용)
 - 등록심사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과반수가 요청하거나, 등록예정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청취
 - 등록심사시 논란있는 사안에 대한 결정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

- 외국 유가증권의 등록요건 개선 (2000/9/29 개정, 10/2부터 적용)
 -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는 외국유가증권의 범위에 외국주권 포함
 - 외국유가증권의 등록분산요건 상향조정
 - 100인 이상 5만 증서 이상 소유
 - 100인 이상 30만 주(증서)이상 소유

○ 공시의무이행능력 결여 기업의 등록제한 (2000/9/29 개정, 10/2 이후
등록예비심사청구서를 제출한 법인부터 적용)

— 등록예정기업이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자료를 주주에게 적법하게 공시하지 않았거나, 재정상태·경영실적 등을 적시공시할 관리조직이 없는 경우

○ 결제제도의 개선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예탁원의 결제책임 강화

• 코스닥시장의 결제기구인 증권예탁원의 결제책임을 명확히 규정

— 결제불이행시 재원충당 순서

• 결제안정기금 → 예탁원 자체재원 → 증권사별 안분비례

— 결제안정기금의 설치

• 결제안정기금을 협회에 적립하여 결제불이행시 사용

| 구 분 | 기금 적립 및 관리 |
|------|------------------------------|
| 적립비율 | 거래대금의 1/10만분 이내에서 협회가 정하는 비율 |
| 기금관리 | 협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되 회원별로 구분 계리 |

○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 연장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예탁원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고 매수회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결제대용증의 사용기간을 1일 연장 가능

• 결제대용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매도증권 납부

→ 1일 추가 연장 가능

- 등록주선인의 등록전 취득주식의 매각 제한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등록주선인이 등록전에 취득한 등록주선기업의 주식 등에 대해 등록일로부터 6개월간 매각을 제한

- 불성실공시에 대한 제재 강화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사업보고서, 반기·분기보고서의 제출의무 불이행기업에 대한 퇴출요건 강화
 - 2회 연속 미제출시 등록취소 → 연속여부에 상관없이 2회 미제출시 등록취소
 - 기공시내용의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의무 위반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미확정공시에 대한 중간진척사항 공시 의무화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미확정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확정공시시까지 매 1개월마다 당해 의사결정에 관한 중간 진척사항을 제공시하도록 의무화

- 상호신용금고 대주주인 코스닥법인에 대한 공시강화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협회등록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가 금고의 과점주주로 되거나 그 지위가 변경된 경우, 이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금고의 BIS비율이 8%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금고의 재무제표가 확정된 경우에는 공시의무화

- 이들이 과점주주로 있는 금고의 BIS비율이 6%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해당 협회등록법인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

○ 장마감 동시호가제도 도입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장마감전 소량주문으로 시세조종을 함으로써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시가결정시에만 적용토록 한 동시호가방식을 종가결정시에도 적용
 - 장종료시 가격결정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에 의함.

○ 시가기준에 의한 배당공시 의무화 (2000/12/21 개정, 2001/1/2 시행)

- 협회등록법인의 배당결정시 사업연도말(또는 배당기준일) 현재 배당부중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배당수익률을 협회에 신고토록 의무화

2. 협회중개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 신규등록 후 최초 매매개시 기준가격의 결정방식 변경

(2000/7/20 개정, 7/24 시행)

-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식의 도입
- 동시호가의 체결원칙은 일반종목의 동시호가 체결원칙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최초매매개시일의 호가는 평가가격의 90%~200% 범위내로 함.
 - 종전의 신규등록종목의 시초가 결정방식은 공모가에 의해 결정되어 신규등록종목의 적정가격 발견에 장기간 소요

- 이에 따라 시장참여자가 자율적 판단으로 시초가를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적정가격의 발견기능을 제고

3. 증권회사의 선물·옵션거래 업무규칙

- 선물·옵션기본예탁금의 최저금액 인하 (2000/3/13 개정·시행)
 - 3,000만원 → 1,000만원

4. 장외주식의 호가중개에 관한 규칙

- 호가중개시장(OTC BB)의 개념 (2000/2/14 제정)
 - 거래소상장 또는 코스닥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제도권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기업들이 발행한 주식이나 상장·등록이 폐지된 주식에 대해 유동성을 부여하는 주식시장
- 거래대상종목의 지정 및 취소 (2000/2/14 제정)
 - 지정요건
 - 비상장·비등록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서, 매매거래질서유지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통일거래요건을 충족
 - <OTC BB 지정요건>
 -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 의견일 것

- 증권예탁원에 예탁가능하고 양도제한이 없을 것
- 명의개서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모집·매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발행된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발행후 1년이 경과하였을 것

— 지정절차

- 지정신청회사가 지정신청을 하고, 증권업협회가 호가중개대상종목으로 지정
- 지정신청회사의 자격 : 증권회사 또는 발행회사

— 지정취소

- 협회는 지정취소사유가 발생하면 호가중개종목지정을 취소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코스닥증권회사 등에 통보하여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하여 공시되도록 함.

○ 호가중개시스템의 운영 (2000/2/14 제정)

— 운영주체

- 코스닥증권회사

— 호가중개시스템의 기능

- 호가집중 : 증권회사는 고객의 호가를 호가중개시스템으로 전달
- 매매체결 : 호가의 가격과 수량이 서로 일치하면 자동체결
- 공시 : 증권회사의 호가와 거래내역, 발행회사 공시사항은 증권회사 전산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일반에게 공시
- 수도결제 :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대체결제

○ 매매거래 (2000/2/14 제정)

— 매매거래시간

- 09:00 ~ 15:00 (단일장, 토요일 휴장)

— 매매방법

- 매수·매도 가격이 정확히 일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매가 체결되는 상대매매방식
- 시간우선의 원칙 적용
- 동시호가 및 가격제한폭 없음

— 주문의 종류

- 지정가주문만 가능

— 위탁증거금률

- 결제될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100% 납부

— 호가단위

- 호가수량단위는 1주, 가격단위는 주권의 가격대별로 5단계로 코스닥시장과 동일

— 수도결제

- 보통거래(T+2)
- 증권예탁원을 통하여 증권회사간 계좌이체방식으로 차감결제

○ 공시제도 (2000/2/14 제정)

— 발행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 발행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관한 수시공시제도는 OTC BB시장이 정규시장 전단계이고, 투자자책임이 강조되는 상대매매시장

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범위에서 운영

— 공시주체

- 지정신청회사(증권회사 또는 발행회사)

— 공시수단

- 코스닥증권회사가 공시사항을 호가중개시스템에 입력함으로써 증권회사 전산망과 코스닥증권회사 인터넷시스템 등을 통해 공시되도록 함.

— 정기공시사항

- 발행회사 현황, 요약결산서류, 감사보고서, 주주명부

— 조회공시

- 조회공시를 요구받은 지정신청회사는 1일 이내에 공시

— 불성실공시내용의 공표

- 호가중개시스템에 당해 사실을 10영업일간 공표

5. 광고에 관한 규칙

○ 광고규제대상매체의 범위확대 (2000/3/13 개정, 4/1 시행)

— 범위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확대

- 인터넷, PC통신, 팩스 및 CD제작물 등을 규제대상 범위에 포함
- 사전심의대상 광고범위의 확대

* 방송 및 신문 등 → 전 규제대상 매체

(통상적인 영업안내 등은 현행과 같이 제외)

○ 부당광고의 내용 정비 (2000/3/13 개정, 4/1 시행)

— 원칙적·포괄적 금지조항을 구체적·개별적으로 나열

— 중요정보에 대한 고지의무사항을 열거

— 투자자세 계도문구의 표시

• 의무사항 → 권유사항

○ 광고에 관한 자율규제기능 보완 (2000/3/13 개정, 4/1 시행)

— 협회의 광고계획안 접수, 심의방법 및 처리기간 등에 대한 절차 명시

— 회원의 재심사청구행위에 대한 근거조항 명시

— 규칙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수준으로 강화

— 광고계획안에 대한 협회의 심의필 표시의무 명시